

통일문제 이해

1998

통일교육원

■ 이 책은 통일교육원에서 통일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기 위해 발간한 표준교재입니다.
각급 교육기관 등에서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문제 이해

1998

차례

I. 통일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7

1. 분단과 남북대화 / 9
2. 통일환경의 변화 /10
3. 우리의 통일정책 /11
4. 북한의 대남전략 /13
5. 우리의 자세 /14

II. 통일은 왜 이루어야 하는가

17

제1절 분단의 배경과 통일여건의 변화

1. 분단의 배경과 성격 /19
2. 통일여건의 변화 /20

제2절 통일의 의미

1. 미래를 지향하는 통일 /23
2. 더불어 하는 통일 /26

제3절 통일의 당위성 /27

III. 통일환경은 어떠한가

31

제1절 국제질서의 재편

1. 국제정세 /33
2. 동북아정세 /36

통일문제 이해

1998

제2절 주변국가의 한반도정책

1. 미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정책 /39
2. 일본의 동북아 및 한반도정책 /45
3. 중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정책 /50
4. 러시아의 동북아 및 한반도정책 /57

제3절 주변환경과 통일 /61

IV.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65

제1절 우리의 통일노력과 통일정책의 발전과정

1. 유엔을 통한 통일노력 /68
2. 8·15선언과 자주적 통일노력 /74
3.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 /76
4.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78
5.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80

제2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추진배경과 의의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추진배경 /85
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내용 /87
3.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합리성 /92

제3절 북한의 통일방안

1. 북한의 대남전략 기조 /96
2. 북한 통일방안의 변천과정 /100
3. 북한의 통일방안과 그 의미 /110

V. 남북관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117

제1절 남북대화의 어제와 오늘

1. 남북대화의 의의와 경과 /119
2.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과 의의 /138
3.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의미 /140
4.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실천기구 /142

제2절 남북 사이의 교류와 협력

1.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 /144
2. 남북교류협력 제도 /145
3. 남북교류협력 현황 /165

제3절 남북간의 주요 현안문제

1. 대북 경수로지원사업 /176
2. 4자회담 /180
3. 대북식량지원 /183

VI. 통일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187

제1절 통일 조국의 미래상

1. 통일 한국의 기본이념 /190
2. 통일 한국의 분야별 체제 /192
3. 통일 한국의 국가형태 /194



제2절 분단국 통일의 교훈

1. 베트남의 사례 /195
2. 예멘의 사례 /198
3. 독일의 사례 /200
4. 분단국 통일의 교훈 /203

제3절 통일 대비 과제

1. 대내적 통일기반의 확충 /206
2. 통일에 유리한 환경의 조성 /211
3. 통일을 위한 국민교육의 강화 /216

I.

통일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1. 분단과 남북대화

우리 민족은 제2차 세계대전 종결과 더불어 광복의 기쁨과 분단이라는 민족의 비극을 동시에 경험했다. 강대국 틈에 낀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국제정치의 희생물이 된 것이다.¹⁾ 포츠담선언과 일제의 무조건 항복은 며칠 간격으로 일어났다. 불과 며칠이라는 시간이 우리 민족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한반도의 분단이 국제정치의 역학관계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도 국제정치적 요인을 배제하고 이루어지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통일은 본질적으로 남북대화를 통하여 민족전체가 나서서 해결하여야 할 민족 내부문제이다. 우리 정부는 이 점을 인식하고 지난 반세기 동안 남북적십자회담, 남북조절위원회의, 남북고위급회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꾸준히 대화를 추진하였고 남북정상회담도 시도한 바 있다. 이렇게 민족화합의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도 남북대화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염연한 현실이다.

남북적십자회담은 1985년 고향방문단, 예술공연단의 서울·평양 상호 교환 방문 및 공연을 단 한차례 성사시킨 것이 그나마 성과였다. 그리고 7·4 남북공동성명,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합의서) 등은 하나하나가 천신만고 끝에 타결된 남북대화의 소중한 결실임에도 불구하고 실천이 제대로 되지 않아 통일을 향한 민족적 여망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1) 무조건 항복을 촉구하는 연합국의 포츠담선언('45. 7. 27)을 일제가 즉각 수락하였더라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45. 8. 6), 소련의 참전('45. 8. 8)도 없었을 것이며, 아울러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하기 위한 이른바 잠정군사분계선으로서의 38선 획정으로 인한 민족의 분단과 동족상잔에 따른 민족적 갈등과 고통도 없었을 것이다.

2. 통일환경의 변화

1994년 10월 21일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서 타결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북한은 2,000MWe 경수로 원전건설과 연간 50만톤의 중유를 공급받는 대신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미·북간에 대사급 외교관계 설정을 전제로 상호 연락사무소 설립에 합의하였다. 제네바 기본합의서 타결을 계기로 미국이 한반도문제에 직접 협상당사국으로 참여함으로써 한반도문제에 대한 남·북한과 미국간의 3각협상 구도가 성립되었다. 중국은 3각협상 구도하에서도 일정부분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북한은 3각협상 구도를 대미협상 창구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김일성이 사망할 무렵 제3차 7개년 계획('87~93년)이 완전히 실패하여 사회주의 지상낙원이라고 선전해 왔던 북한은 외부로부터 식량원조를 요청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또한 소련과 동구 공산권의 붕괴와 중국의 개혁·개방노선에 따른 경제정책의 전환으로 국제적 사회주의 경제권이 붕괴된 상황에서 체제생존을 위하여 미국에 손을 내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한국을 배제하고 정전협정 대신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민족통일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소련 붕괴 이후 국제적 핵무기 비확산체제의 유지를 대외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하고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서 타결을 계기로 북한의 핵무기개발을 동결시키는 데 일단 성공하였다. 동시에 미국은 세계군사전략상 또 하나의 중심지역인 중동지역에 북한이 미사일을 수출하는 것을 중단시켜야 하며 또 북한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아울러 동북아의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정책 판단하에 대북협상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남북한과 미국간의 3각협상 구도하에서 한반도의 협상정국이 순

탄하게 전개되려면 미·북대화와 남북대화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하나의 축으로 연결되어 같은 보조로 굴러가야만 한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대화를 진전시킬 것을 명시한 제네바 기본합의서를 외면하고 대미관계의 개선에만 외교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국과 공조체제를 더욱 굳건히 다져 북한을 하루속히 남북대화의 장(場)으로 끌어내야 한다.

3. 우리의 통일정책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을 방지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없다. 북한은 체제위기시 대남무력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북한은 체제위기와 민족의 참극 사이에서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다.

오늘날 북한은 이른바 자폭부대를 편성하는 등 전쟁을 담보로 우리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대남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의 전쟁 위협이 상존하는 한 남북한 관계의 진전은 현실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대안으로 4자회담을 제기한 바 있다. 4자회담은 한반도 군사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남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대로 공고한 평화상태를 마련하고 이를 정전협정 관련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보장하려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남북한 평화공존관계를 정착시키려면 남북한간에 다방면적인 교류·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수로 원전건설은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 이지만 이 과정에서 남북한 인력이 공동목표를 갖고 같이 힘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인다면 평화적 교류·협력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통일비용을 미리 분담한다는 차원에서도 원

전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뜻을 모아야한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은 같은 민족이라는 민족정서를 바탕으로 통일을 위한 민족공동체 형성에 당연히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다.

오늘날 남북간에는 간접적이나마 경제교류가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 경수로 원전건설을 계기로 우리 기업의 대북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민족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긍정적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남북 경제교류 · 협력과 더불어 사회 · 문화적 교류도 점차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평화적 교류 · 협력관계가 활발히 이루어져 민족공동체가 점진적으로 형성되어 가면 통일의 날은 더욱 가까워질 것이다. 화해 · 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를 거쳐 통일국가를 건설하려는 우리의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은 이같은 우리의 정책추진 구도를 반영하고 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통일조국의 당위적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치열한 체제경쟁을 전개한 20세기 인류문명사와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의 분단민족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명백히 입증하였다.

남북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하나가 되어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보장할 수 있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북한 체제가 스스로 변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체제 붕괴를 추구하지 않으나,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대책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북한은 현재 소련과 동구공산권의 붕괴와 중국의 이른바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에 따른 시장경제의 채택으로 국제적 사회주의 경제권이 와해되면서 생존전략 차원에서 제한적이나마 대외개방경제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통일정세의 긍정적 변화로 판단한다. 나진 · 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의 설치에 이어 앞으로 원산,

남포 등 많은 지역이 개방되어야 한다. 북한당국은 이른바 자유의 바람 유입을 체제위협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북한경제가 회생 하려면 개혁·개방을 시급히 이루어야 한다.

또한 북한정치체제의 변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김정일은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라는 논문에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수를 강변하고 있으나 제한적이나마 대외개방 경제정책을 시도하는 한 외부로부터 정보유입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치체제의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4. 북한의 대남전략

남북대화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기본원인은 북한당국이 남북한 간 평화공존관계를 정착시켜 통일로 접근하려는 우리의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통일정책을 전면 거부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계를 거쳐 전한반도의 이른바 주체사상화, 공산화통일을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남북대화를 대남전략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아직도 이른바 미제의 식민상태와 문민파쑈 상태에서 “남조선 인민을 해방시키는 것”이 통일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대남전략관을 엄연히 견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이른바 ‘하나의 조선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남과 북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그대로 두고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의 연방제로 통일하자는 ‘고려민주 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완성 후의 이른바 연공정권(聯共政權)을 연방구성국으로 하려는 것이므로 결국 대남전략상의 선전구호에 불과하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의 조선정책’을

견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 명의로 남북기본합의서에 서명한 것은 상호 불가침에 관한 남북차원의 협상이 종결되었다고 내세워 대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의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전술적 전환에 불과한 조치였다. 물론 김일성이 사망 직전 남북정상회담을 수용한 것도 평화통일을 위한 현실적 대안인 남북 평화공존관계의 정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1995년을 연방제통일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공개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대남 혁명전략의 일환이었다. 더욱이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후 조문문제를 이유로 그나마 일체의 남북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과 때를 같이하여 북한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자 생존전략 차원에서 미국과 제네바 기본합의서를 타결하고 4자회담도 수용했으나 이른바 ‘통미봉남’ 전략을 쉽게 포기할 것으로 예측되지 않는다.

5. 우리의 자세

통일은 꼭 해야 하는가? 통일을 해야 할 필요는 있는가? 만약 통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우리가 경제적 난관을 겪더라도 꼭 통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 통일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굳이 통일을 하지 않아도 남북한 사이에 전쟁만 일어나지 않으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과연 그런가? 통일을 하지 않아도 남북한 관계가 적어도 지금과 같은 상태의 평온함을 유지할 것인가? 또한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은 언제라도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북한의 영토에 대해 기득권을 지니고 있다고 인정해 줄 것인가? 통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과 일본·러시아·중국 등 세계의 강대국이 북한 영토의 일부라도 차지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은 없는가? 만약 어떤 나라에서 금강산 주변을 자기네 영토로 편입하겠다

고 나선다면 우리로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가?

남북한의 통일은 더 이상 한반도 내부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반도의 통일은 국제 관계의 이해득실이 침예하게 나타나는 사안이 되었다. 따라서 통일을 논의할 때 남북한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러시아·중국 등 주변 강대국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을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통일은 저절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다. 독일 통일이 갑자기 이루어졌다고 하나 분단된 상황 하에서 꾸준히 동서독간 교류·협력 관계를 지속해 오지 않았다면 아무리 소련을 비롯한 동구공산권이 붕괴되는 절호의 기회가 있어도 독일 통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우리는 민족적 슬기와 힘을 모아 통일을 향한 대내외적 여건을 하나하나 조성해 나가야 한다. 특히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 원칙”을 고수하면서 이와 같은 우리의 입장이 국제 정치 무대의 공감을 얻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을 남북 평화공존의 장으로 끌어내어 남북한간의 다방면적인 교류·협력관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분단으로 파괴된 민족공동체를 점진적으로 복원시켜 공동번영의 길을 다져 나가면서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여 자유민주통일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반적인 경제파탄은 물론 식량문제마저 해결 못 하고 주민의 초보적 인권도 보장하지 않는 북한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자유민주통일만이 온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보장한다는 확고부동한 통일관으로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어 민족통일을 주도해 나아가야 한다. 눈앞에 다가온 21세기에는 반드시 민족의 염원을 이루어 영광된 통일조국을 자손만대에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국신 외, 『분단극복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 한울, 1994.
2. 21세기위원회, 『2000년에 열리는 통일시대』, 동아일보사, 1993.
3. 김학준, 『한국전쟁』, 박영사, 1989.
4. 안병준, 『탈냉전기의 국제정치와 한반도 통일』, 법문사, 1993.
5. 민족통일연구원,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이론체계와 실천방향』, 1994.
6.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1996.
7. 통일원,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책』, 1990.

Ⅱ. 통일은 왜 이루어야 하는가

제1절	19
분단의 배경과 통일여건의 변화	
제2절	23
통일의 의미	
제3절	27
통일의 당위성	

이 장의 요점

- 1990년대 들어 탈냉전의 세계사적 조류와 함께 크게 변화된 대내외 상황은 통일이 이제 우리에게 ‘꿈에도 그리는 소원’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다가온 ‘현실적 과제’로 대비해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 통일은 남과 북의 온 민족이 공존공영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아가기 위한 ‘새 역사의 창조 과업’이다.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남과 북 어느 한쪽이 승리하고 다른 한쪽이 패배하는 ‘일방적 통일’이 아니라 민족 구성원 모두 잘살 수 있는 ‘함께 하는 통일’이다.
 - 통일은 민족공멸(民族共滅)의 전쟁 재발을 방지하고, 민족역량의 낭비를 막아 민족의 공동번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뿐만 아니라 항구적인 세계 평화질서의 구축에 기여하는 절실한 과제이다. 또한 통일은 21세기의 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가 세계 중심 국가가 되기 위한 것이다.
-

제1절 분단의 배경과 통일여건의 변화

1. 분단의 배경과 성격

통일의 필요성을 이해하려면 우리나라가 왜 분단되었으며, 분단의 성격은 무엇이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분단은 국제적 문제이면서 동시에 민족내부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반도의 분단은 전승국인 미국과 소련이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할점령하면서 비롯되었다. 미국이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자 소련은 일본의 조기(早期) 항복을 예상하여 8월 8일 급히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고 그 이튿날부터 빠른 속도로 만주(滿洲) 진역을 거쳐 한반도 북반부로 진군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미국은 소련군의 급속한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일본의 조기항복이라는 급박한 사태 속에서 일본군의 항복접수와 무장해제를 위한 연합국간의 지역분담 지침을 확정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실무작업을 맡은 본스틸 3세(Charles H. Bonsteel III)와 러스크(Dean Rusk) 대령은 한반도를 동서로 획단하는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미·소 양국군이 한반도를 분할점령하는 것이 이미 남하하고 있는

소련을 저지하기 위하여 미국이 확보할 수 있는 차선의 선택이라는 건의를 올렸다. 이를 채택한 미국정부는 영·중·소 3국의 동의를 받아 「일반명령 1호」로 맥아더(Douglas MacArthur) 사령부에 하달하였다.¹⁾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분단은 근본적으로 국제정치의 희생물로서 소련의 팽창전략과 이에 대응한 미국의 정책이 낳은 이른바 ‘국제형 분단’으로 규정할 수 있다.²⁾

그러나 오늘에 와서 분단의 책임을 남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미·영·불·소 등 4개국의 점령하에 놓였던 오스트리아는 좌우익 정치세력들이 제휴하여 대외 중립노선을 표방함으로써 외세의 의도를 저지하고 분단을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2. 통일여건의 변화

최근에 들어 우리의 통일문제를 둘러싼 주변여건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1980년대 말에 가속화된 사회주의권의 개혁 개방노선의 추구는 결국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라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 종결 이후 지속되어 온 동서 이념대결을 기조로 하는냉전질서를 와해시켰다. 오늘날 모든 국가들이 탈냉전의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 기존의 이념적 군사적 대립보다는 화해·협력을 바탕으로 한 평화증진과 자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경제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세계질서의 이러한 변화 속에 이루어진 동독의 몰락과 독일

1) 김학준, 『한국전쟁』, 박영사, 1989, p. 10. 한반도 분단의 배경에 대해서는 김학준, 이용희, 조순승, 정용석 등의 한국학자들과 Shannon McCune, Arthur L. Grey Jr., Max Beloff, Leland Goodrich, Bruce Cummings 등의 구미 학자들에 의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2) 분단국가의 유형화를 처음 시도한 학자는 일본 麻應大學의 神谷不二로서 그는 분단의 유형을 (i) 국제형 분단 및 내쟁형(内爭型) 분단, (ii) 안정형 분단 및 불안정형 분단으로 나누었다. 앞의 책, p. 4에서 재인용

의 통일('90. 10)은 우리에게 많은 충격을 안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동서독과 남북한은 전후 강대국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단을 강요당했고 동서진영의 냉전적 대결구조가 심화되면서 쌍방간의 정치적 군사적 대립이 고조되었다는 점에서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다.³⁾ 그러나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책임을 져야 할 당사국이자 패전국으로서 분단이 연합국에 의해 의도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한반도의 분단은 다만 전후처리(戰後處理)를 위한 잠정적 조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반도의 통일이 독일보다 먼저 이루어지리라는 기대와 전망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북한은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 있다.

한편 국제질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외관계와 남북관계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적대관계를 유지해 온 구 소련 ('90. 9)이나 중국('92. 8) 등과 외교관계를 수립함으로써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지역의 냉전적 잔재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다. 남북한은 1991년 9월 유엔에 동시 가입했으며, 1992년 2월에는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발효시킴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 화해 · 협력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걸쳐 남북대화를 꾸준히 시도하였고, 김일성 사망 직전에는 남북정상회담도 개최키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1994년 10월 21일 미 · 북 제네바 기본합의의 결과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1000MWe급 경수로 원전 2기를 건설하고 그때까지 연간 50만톤의 중유공급을 약속함으로써 미북간의 관계정상화 추진과 남북대화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3) 한반도의 분단과 독일의 분단이 갖는 차이점에 대해서는 민병천, 『신통일론』, 고려원, 1992, pp. 15~19 참조

물론 북한은 종전과 같이 남북대화 진전에는 성의를 보이지 않고 미국과의 직접관계 개선에 집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남북한 평화공존체제를 정착시키며,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는 북한을 4자 회담의 테이블에 이끌어 내었으며, 식량지원과 함께 원전건설을 위한 부지공사를 착공하여 남북관계를 진척시키기에 이르렀다.

어쨌든 민족의 분단을 강요했던 국제정치적 요인으로서 강대국 간의 정치·군사적 대립과 이를 촉진했던 냉전적 대결구조는 종말을 고하였다. 물론 탈냉전이 반드시 국제적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변화는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에 접근할 수 있는 호기(好機)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남북분단을 강요했던 국제사회의 정치·이념·군사적 요인들이 점차 소멸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민족의 모든 역량을 평화통일 실현에 모으지 않으면 안된다. 통일은 이제 꿈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현실문제의 차원을 넘어 반드시 실현하여야 할 '민족적 지상과제'가 되었으며 독일통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언제라도 우리 앞에 불쑥 다가올 수 있는 현실적인 '대비 과제'로 등장한 것이다.

제2절 통일의 의미

1. 미래를 지향하는 통일

통일은 다르게 표현하면 곧 분단의 극복이다. 그러나 통일이 단순히 ‘분단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 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분단 반세기를 맞는 오늘의 시점에서 그러한 복고적 통일은 이미 그 의의를 상실하였다. 우리가 되돌아 가야 할 ‘분단 이전의 상태’는 이미 먼 과거의 일이 되었으며, 실현이 가능하지도 않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달라졌으며, 세대가 바뀌고 가치관이 새로워졌다. 통일은 결코 이런 소극적 차원에 머무를 수 없는 과제이다. ‘단순한 재통일(reunification)’이 아니라 ‘새로운 통일(new unification)’이어야 한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통일은 민족의 앞날과 관련된 문제이다. 따라서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새로운 역사의 창조작업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다.

통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지리 등 우리 민족의 삶과 진운(進運)을 둘러싼 여러 측면을 미래의 새로운 상황과 접목시켜 하나의 민족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첫째, 지리적 측면에서 말하자면, 통일은 곧 ‘국토의 통일’이

다.⁴⁾ 우리 민족은 수천년 동안 한반도라는 지리적 공간 속에서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면서 살아왔다. 통일은 민족성원 모두 한반도 내의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왕래하고 거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리적 의미에서 국토는 불변적이지만 생활권으로서 국토의 의미는 나날이 변화하고 있다. 우리의 조국 강토는 남과 북의 온 겨레가 새롭게 가꾸어 가야 할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정치적 측면에서 볼 때, 통일은 ‘국권의 단일화’를 뜻한다. 우리 민족은 지난 1,300여년간 단일한 정치체제 속에서 살아왔다. 국가와 민족이 하나로 일치하여 온 장구한 역사에 비교하여 볼 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50여년 분단역사는 결코 긴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한반도에는 하나의 정치체제만 있는 것이 당연하다. 남북 간에 단일한 정치체제를 만드는 것은 통일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통일은 ‘민족경제권의 통합’을 뜻한다. 남과 북은 현재 자유시장경제체제와 사회주의경제체제로 나뉘어져 있고 경제생활권 또한 남북으로 단절되어 있다. 분단 이전에 우리 민족은 단일 경제권을 형성해 살아 왔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통합이 이루어지는 오늘의 현실에서 민족의 공동복리를 증진해 나가기 위한 경제권의 통합은 실로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넷째,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통일은 ‘국민의 통합’을 뜻한다. 현재 남북한은 서로 다른 정치문화 아래 서로 다른 국민군(群)으로 존재하고 있다. 8·15광복 이전까지는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 민족이 근대적 의미의 ‘국민국가’를 형성하지 못하였으므로 우리에게 하나의 ‘민족’은 있었지만 근대적 의미에서 하나의 ‘국민’은 없었

4) 민병천, 앞의 책, pp. 11~15 참조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일된 조국에서 남북한 주민을 근대국가의 기본적 구성 요소인 하나의 '국민'으로 통합해 나아가는 것 또한 새로운 과제이다.

다섯째, 문화적 측면에서 볼 때, 통일은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 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같은 언어 · 같은 문화 · 같은 전통을 지니고 살아왔다. 그러나 오늘날 남북간의 통일성이 부분적으로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정체성(正體性)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남과 북은 함께 과거의 문화로 되돌아 갈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각자 현재의 문화를 고집할 수도 없다. 남과 북이 함께 민족전통 위에 서서 민족의 앞날을 밝히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아가야 한다.

여섯째, 민족사적 측면에서 볼 때, 통일은 하나로 된 '국사(國史)의 정립'이다. 우리 민족은 '민족은 하나라는 의식'을 면면히 이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남과 북의 역사는 분화를 거듭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분화를 극복하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하나의 나라를 일구어 나아가는 '하나의 국사'를 펼쳐야 한다.

이처럼 통일은 다면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다면적 의미의 통일을 지리적 분단 · 정치적 분단 · 민족적 분단으로 이어진 과정과 관련지어 단순화시킨다면 곧 국토도 하나(국통일), 제도도 하나(정치적 통일), 민족도 하나(민족통일), 생활도 하나(경제 · 사회 · 문화적 통일)로 되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통일은 둘로 나누어진 국토와 제도, 민족이 모두 '참다운 하나'로 거듭날 때 그 목적과 내용이 완성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참다운 하나'로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서 통일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창조적 대역사(大役事)인 것이다.

2. 더불어 하는 통일

지난 반세기 동안 각기 다른 이념과 체제 아래에서 살아온 남과 북은 서로 다른 목적과 다른 형태의 통일을 지향하는 통일방안을 제시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 다른 통일을 주장하는 두 개의 주체가 통일을 실현하는 길은 결국 어느 한 쪽이 이기고 다른 쪽이 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지난 날의 인식이었다. 다시 말하여 통일이란 남북 두 체제간의 ‘제로 썸 게임(zero-sum game)’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통일은 ‘더불어 하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 남과 북이 통일의 과정을 ‘더불어 할’ 뿐만 아니라 그 결실도 ‘더불어 누려야’ 한다. 다시 말해 남북에 갈라져 있는 민족성원 누구도 희생되지 않는 통일, 남북의 온 겨레가 자유·평화·번영을 함께 누리는 통일, 이것이 민족통일의 궁극적 목표인 것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더불어 하는 통일’에 이르는 길은 험난하다. ‘더불어 하는 통일’의 길은 분단관리과정, 통일실현과정, 통일 이후 내적통합과정을 민족 전체의 목표와 대내외 상황에 맞춰 처리해 가는 테 있다. 통일은 결코 이기고 지는 싸움이나 경쟁이 될 수 없다. 남과 북이 공존공영하면서 민족복리의 궁극적 목표를 향하여 조금씩 함께 만들어 가야 하는, 어렵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따라서 통일은 포용과 조화, 인내와 끈기를 요구하는 창조의 작업으로서 남과 북의 온 겨레가 더불어 이루어갈 과정이며 함께 추구할 목표인 것이다.

제3절 통일의 당위성

국토와 민족이 남북으로 분단된 아래 통일을 위해 많은 제안과 논의가 있었고 그 실천을 위해 적지 않은 정책적 노력도 경주되었다. 우리 민족의 남북분단사는 다른 면에서 보면 통일노력사이기도 하다. 통일은 민족의 한결같은 숙원인 동시에 지상과제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첫째,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이다. 우리 민족은 단군 아래 한반도를 터전으로 오랫동안 하나의 민족국가를 형성하여 하나의 언어·하나의 역사·하나의 문화를 이루어 살아왔다. 남북이 하나의 체제, 하나의 정부를 이루어 하나의 민족국가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요 역사적 순리이다. 현재와 같은 분단상태는 민족적 비극이며 비정상적이다.

둘째, 통일은 민족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현재 한반도에는 남북을 합쳐 약 170만명의 정규군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만일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민족의 생존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통

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 민족은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되어 참다운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셋째, 남북한 민족성원이 모두 ‘질높은 삶’을 누리려면 통일을 해야 한다. ‘질높은 삶’이란 인간존중의 사상을 바탕으로 자유와 민주주의 이념이 구현되는 사회에서 경제적인 풍요와 복지를 모두가 누리는 삶이다. 그런데 이러한 ‘질높은 삶’은 이산가족의 아픔이 상존하고 정치·군사적 대립으로 남북한 구성원 모두가 삶에 제약을 받고, 국방예산 등 과도한 ‘분단비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회문화 부문의 발전에 지장을 주는 분단상태에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

넷째,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키우려면 통일을 해야 한다. 우리가 만일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지 못한다면 민족전체의 발전과 웅비는 논할 수 없을 것이다. 분단으로 인하여 민족이 이질화되고 민족역량을 분산·소모한다면 주변국과 경쟁에서 이길 수 없고, 열강들의 이해관계에서 우리의 이익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섯째, 통일은 동북아는 물론이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는 길이다. 한반도는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역사적으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각축장이 되어 왔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미·소냉전의 틈바구니에서 분단이 되었고, 그 후 동북아의 화약고로 인식되어 왔다. 오늘날 세계는 탈냉전 화해협력의 시대를 지향하지만, 한반도는 아직도 갈등과 불안정의 소지를 제공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남과 북이 통일되어야 전후 50년 동안 지속되어 온 냉전체제가 완전히 해소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이고 나아가서 세계평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다가오는 21세기 아시아·태평양권 시대의 주역으로 빨돋움하여 세계화 시대에서 통일된 나라로서 세계중심국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갈라져 있는 남과 북은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야 한다.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요,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시대적 과업이다.

참고문헌

1. 구영록 외, 『남북한의 평화구조』, 법문사, 1990.
2. 김국신 외, 『분단극복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 한울, 1994.
3. 민병천, 『신통일론』, 고려원, 1992.
4. 민족통일연구원,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이론체계와 실천방향』, 1994.
5. 박영호 · 오재완, 『국제사회에서 남북한간 협력방안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1992.
6. 안병준, 『탈냉전기의 국제정치와 한반도 통일』, 법문사, 1993.
7. 양호민, 『남과 북, 어떻게 하나가 되나』, 나남, 1992.
8. 윤형진 외, 『신세계 질서와 민족통일』, 살림터, 1991.
9. 이상우, 『함께 사는 통일』, 나남, 1993.
10. 21세기위원회, 『2000년에 열리는 통일시대』, 동아일보사, 1993.
11. 정용석, 『분단국 통일과 남북통일』, 다나, 1992.
12.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1996.
13. 통일원,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책』, 1990.
14. 한승주, 『남북분단의 극복과 평화』, 법문사, 1990.

III. 통일환경은 어떠한가

제1절	33
국제질서의 재편	
제2절	39
주변국가의 한반도정책	
제3절	61
주변환경과 통일	

이 장의 요점

- 세계는 자유화·민주화·복지화·개방화를 지향하고 공산주의의 퇴조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만큼, 통일환경은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정세는 역내국가들간의 상호의존성 증대와 냉전잔재의 상존, 북한정권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북·미 핵회담 타결후에도 화해와 긴장의 양면성을 드러내고 있다.
- 미국을 비롯한 주변4국은 ‘핵이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있다. 북·미 핵 회담 타결로 4국의 교차승인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가운데, 새로운 한반도 평화보장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통일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 주변국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자주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통일외교를 적극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1절 국제질서의 재편

1. 국제정세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는 동·서 진영간 냉전적 대립구조의 와해를 초래하였으며 전세계적 차원에서 국제질서 재편을 촉진하였다. 탈냉전의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주요 특징은 이념·체제·제도간의 갈등과 대립이 현저하게 감소된 반면, 평화와 경제발전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¹⁾ 그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서냉전체제의 와해이다. 1989년 12월 부시 미국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간의 「몰타회담」은 미·소간의 군사적 냉전사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협력시대'를 개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특히 소련과 동구공산권의 붕괴는 미국과 소련을 양축으로 오랫동안 대결해 오던 냉전의 구도를 종식시켰다. 또한 탈냉전

1) 냉전 이후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신국제질서의 일반적 특징에 대해서는 Samuel P. Huntington, "America's Changing Strategic Interests," *Survival*, Vol. 33, No.1(January/February 1991), pp. 3~17; Zbigniew Brzezinski, "The Consequences of the End of the Cold Wa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delphi Papers*, 256(WINTER 1991/92), pp. 3~17 ; Joseph S. Nye, Jr., "What Is the New World Order?" *Foreign Affairs*, Vol. 71, No. 2(Spring 1992), pp. 83~96 참조

이라는 질서변화는 동시에 양진영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세계대전의 위험과 핵대결 상황을 완화시켰으며 세계정세의 방향을 화해와 협력, 군축과 평화지향으로 바꾸어 놓았다.

둘째, 국제질서의 다원화와 국제적 상호의존성의 증대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냉전 이후의 국제질서는 아직 정착되지 않았으나 군사적 측면은 미국이 주도하고, 정치·경제면은 다른 나라와 공동으로 협력하는 ‘단다극체제(單多極體制 : uni-multipolarity system)’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 의견이다. 그러나 냉전 시대의 안보는 이념 및 군사적 안보 중심이었지만 냉전종식 이후에는 경제를 포함한 비군사적 안보의 비중이 커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지역강대국의 부상 및 세계질서의 다극화와 함께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셋째, 이데올로기 중심의 군사 안보적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자국이익이 중시되는 경제냉전시대가 도래하였다. 이러한 경제전쟁 양상은 지역적 경제블록화 추세(EU, NAFTA, APEC 등)로 가고 있다. 블록간의 경제장벽이 한층 높아지는 가운데, 국제사회에는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에서 나타났듯이 냉혹한 국가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이는 향후 세계경제체제가 자국이익 우선의 ‘다원적 경제체제’로 돌입할 것임을 예고하는 현상이다.

한편 세계경제의 지역주의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경향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세계무역을 관리해 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제가 발전적으로 해체되고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것에서 그 점을 알 수 있다.

넷째, 과거 억압적이고 횡暴적이었던 국제질서가 자율성이 커지고 다원화·개방화되면서 세계는 통합과 화해로 가고 있으나 지역 차원에서는 오히려 분쟁이 증대되는 추세이다. 소련의 해체와 냉전 체제의 붕괴로 세계대전의 위험은 감소되었으나 국지적 분쟁은 증

가된 것이다. 핵전쟁 위험은 감소되었으나 민족주의의 분출, 군비경쟁과 대량파괴무기의 확산, 지역적·인종적 차별과 종교문제 등으로 지역갈등이 심화됨으로써 국지분쟁(보스니아, 소말리아, 르완다 내전 및 체첸사태 등)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을 곤경에 처하게 하고 있다. 또한 미·소 양국으로 나뉘었던 힘의 균형이 깨어진 틈을 타서 지역강대국들이 지역패권주의를 다시 추구할 경우 지역분쟁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지역안보의 불확실성 속에서 지역국가간의 군사협력·군사협동훈련은 오히려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세계의 역학구조는 미국, 유럽, 아·태의 3축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그 위에서 불안한 각축시대가 전개될 것이다.

한편 유엔은 탈냉전 이후 새로운 국제질서 창출과정에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복지를 위한 노력으로 그 정통성과 효율성을 새롭게 인정받고 있다. 유엔의 위상강화는 무엇보다 안보리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함으로써 가능해졌다. 유엔은 걸프전·보스니아·르완다·자이르사태 등에서 보듯이 국제분쟁 해결노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유엔의 역할증대는 분쟁 해결에 그치지 않고 군축·개발·환경·인권·마약·범죄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보편적 규범 형성, 즉 새로운 체제의 창출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다. 1992년 6월 리우「환경개발 정상회의」, 1993년 6월 비엔나「세계인권회의」, 1995년 3월에 개최된 코펜하겐「사회개발 정상회의」 등이 대표적인 경우라 하겠다.²⁾

요컨대 '신세계질서'는 아직도 그 명확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미·소 두 초강대국에 의해 조정·통제되던 냉전시대에 비해 탈냉전 상황은 오히려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날 국제사회의 큰 흐름은 사회주의·공산주의의

2) 외무부, 『외교백서 : 1994년판』, 1995, p. 197

퇴조와 함께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와 ‘시장경제체제’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 민족의 통일여건에 유리한 흐름이 되고 있다.

2. 동북아정세

한반도 주변의 동북아지역도 냉전적 대립과 갈등이 침예하던 지역이었으나 탈냉전의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에 힘입어 화해·협력의 긍정적 추세가 전개되면서도 한편으로 위기와 갈등이 동시에 표출되고 있다. 이렇게 ‘화해·협력과 불안정’이라는 양면성이 나타나는 것은 역내 강대국간의 세력관계가 침예하게 얹혀 있고 기존의 냉전 구조와 새로운 탈냉전적 변화가 병존하는 이중성에 기인한다.

사회주의체제의 본질적 변화, 소연방체제, 세계적 차원의 화해·협력 추세 및 독일통일 등 세계 정세의 급격한 변화는 동북아에서도 탈냉전을 유도하고 있다. 남북한도 UN에 동시가입('91. 9)하였고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발효('92. 2. 19)시키는 등 일정한 진전을 보인 바 있다.

한편 우리는 지속적인 국력신장과 북방정책 추진에 따라 구소련('90. 9), 중국('92. 8)과 국교정상화를 이루는 외교적 성과를 바탕으로 민족통일의 외부적 장애요인이었던 냉전구조를 제거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반도 주변정세는 미국과 일본의 안보동맹 강화, 중국과 러시아의 접근, 중국과 미국·일본의 대립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결의 주요 원인은 냉전시대와 같이 이데올로기나 팽창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지역에서의 주도권 장악과 무역문제 등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양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주변 강대국들의 관계는 훨씬 변화무쌍해져 당장 새로운 역학관계가 정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1997년 9월 신방위협력지침을 확정하였다. 금번 확정된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은 1996년 4월 미·일 정상이 도쿄(東京)에서 합의한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에 기초해 1978년 채택한 방위지침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된 방위지침의 요체는 예상치 않은 급변사태시 미국의 작전수행에 일본이 평화헌법 테두리 안에서 후방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기존 지침에서는 일본이 공격받았을 경우에 한정했었으나 이번에는 지역분쟁에 대해서도 일본이 항구·공항시설을 제공하며 기타 군사작전을 위한 병참지원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해 놓았다.

아울러 기뢰제거·해상검색과 민간인 대피작업에 일본자위대가 투입될 수 있다고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이래 처음으로 대외적 군사작전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셈이 되었으나 이는 중국을 자극하여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반면 아시아에서 미국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 관계는 천안문사건('89. 6) 이후 이등휘(李登輝) 대만총통의 방미('95. 6) 및 중국의 대만 해협 미사일 발사실험('96. 3)을 비롯, 무역 등 몇가지 쌍무문제로 마찰을 빚으며 긴장상태에 빠져들었다. 1997년 11월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양국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이견의 폭을 좁히지 못했지만 두 나라가 앞으로 '대결' 보다 '협력'을 지향키로 합의했다.

양국정상은 이같은 기조에 따라 대량 살상무기 확산억지, 경제관계 확대, 주변정세 안정에 대한 협력, 마약·범죄·환경 등 탈냉전 시대의 새로운 위협요인에 대해서도 공감했고 이란과 파키스탄에 대한 핵설비·핵기술 수출 중지와 미국산 핵발전설비 수출에 합의 하였다. 또한 정상회담 외에 고위각료급 접촉도 정례화하고 군사접촉을 늘리며 워싱턴-베이징 핫라인(직통전화)을 개설키로 합의하는 등 당분간 전략적 접근은 한층 더 긴밀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대만문제, 무역분쟁, 인권문제 등을 둘러싼 구조적 상호불신으로 인한 갈등으로 긴장과 화해가 지속되는 불안정을 노출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일본은 중국과 최근 조어도(釣魚島)의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드러냈다. 또한 일본 자민당의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남경 대학살 관련 기술 및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확정 등이 중국을 자극하는 등 일·중간의 갈등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동북아정세의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중·러의 접근도 동북아정세에 새로운 변수로 꼽힌다. 중국과 러시아는 오랫동안 불편했던 관계를 청산하고 1996년 4월 엘친·강(江) 베이징 정상회담을 통해 어느 일국의 패권추구와 독점정책을 반대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임을 선언한 이후 군사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1997년 4월 강(江)·엘친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는 '미국 주도 탈피 다극화' 공동성명에 서명한 데 이어 6월 러시아의 체르노미르딘 총리의 중국 방문에서는 포괄적 경제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등 중·러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결론적으로 동북아에서는 탈냉전적 양자관계 재조정이 진행중이고 다자간 협력문제도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지역에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국제질서는 전세계적 차원에서 형성되는 국제질서와 상이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동북아지역에서는 미·일·중·러 등 주변4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얹혀 있으며, 중국과 북한이 여전히 사회주의를 견지하여 기존의 냉전적 대립요인이 상존해 있고, 한반도분단 등 냉전시대의 유산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기존의 냉전적 구조와 새로운 탈냉전적 변화가 병존하는 이중구조가 동북아지역에 나타나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제2절 주변국가의 한반도정책

1. 미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정책

(1) 동북아정책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북아지역이 세계의 안정과 미국의 지속적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대소봉쇄(對蘇封鎖)와 미국 주도 세계질서에 일본 편입을 위하여 동북아지역에서 자국에 유리한 세력균형의 유지를 기본목표로 하여 왔다. 그러나 탈냉전 등 전세계적 차원의 안보환경 변화와 재정·무역적자 등 국내경제적 요인에 따라³⁾ 미국은 기존의 봉쇄정책을 지역적 안보전략으로 대체하였다. 이에 따라 아·태 지역에서 미국의 지속적 개입을 위한 정책도 다소 변화를 겪게 되었다.

미국은 탈냉전시대에 있어서 (i) 과거 대소봉쇄 일변도 정책에서 대러시아 경계정책으로 전환, (ii) 미국 주도의 동북아 안보체제를 통한 일본 견제, (iii) 중국 정치체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iv) 미국의 힘의 우위에 기초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안정적 관리

3) 미국의 1995년도 무역적자는 1,110억 4,000만 달러, 재정적자는 1,073억 달러로 재정적자 누증액은 4조 6,700억 달러에 이르렀다.

등을 기본적인 정책목표로 설정하고,⁴⁾ '역내 균형자' 역할을 통하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새로운 정책은 기존 군사동맹체제 유지, 군사력의 전진배치, 전략핵 중심의 핵우산 정책 유지 등 기존정책의 골격을 유지한 것이나, 비용절감 차원에서 그 규모와 운영방식을 대내외적 여건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조정한 것이다.

첫째, 미국은 아·태지역이 미주 및 유럽과 함께 국제정치·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국과 아·태지역의 이해관계가 긴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기존 전진배치전략을 당분간 지속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중·북·러·캄보디아·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정치적 불안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일본의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대 추세와 북한의 핵무기개발 노력도 이 지역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인식하는 등 향후 10년을 전환기로 평가하고 있다.⁵⁾ 이와 함께 미국은 구소련만이 미국의 유일한 안보위협은 아니며 미국의 국가이익을 저해하는 다양한 요인이 상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⁶⁾ 결론적으로 미국은 비록 초강대국간의 대결 가능성이 감소되었더라도 기존의 전진배치전략이 추구해 온 지역 균형자, 궁극적인 안전보장자로서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는 상황이다.⁷⁾

미국 국방부는 1995년 2월 일명 「동아시아 전략보고」(EASR)로 알려진 '미국의 동아시아·태평양 전략(United States

4) 민족통일연구원,『소련의 동북아정책 변화와 동북아질서 개편 : 1990년대 동북아질서 예측(I)』, 1991, pp. 114~121 참조

5) U.S.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 Looking Toward the 21st Century*(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0), p. 12

6) Carl W. Ford, Jr., "The U. S. Future in Asi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2, No. 2(Winter 1990), p. 209

7) U. S. Department of Defense, 앞의 책, p.1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을 발표하였다. EASR에서 클린턴 행정부는 냉전종식 후 과거 부시 행정부가 2000년까지 동아시아 주둔 미군병력의 3단계 감축을 확정한 「동아시아 전략 구상」 EASI I('90. 4)과 EASI II('92. 10)를 폐기시키고, 주한미군을 포함한 약 십만여명의 동아시아 주둔 병력을 적어도 2000년까지 그대로 유지시킬 것이라는 신아·태 전략을 표방하였다. 신아·태전략의 핵심은 클린턴 대통령이 최고의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미국의 경제력 회복이라는 정책목표에 비추어 미국의 '사활적 이해관계(vital interests)'가 직결되어 있는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이 지역에 대한 경제·외교·군사 등 전면적인 '개입정책(engagement)'을 계속해서 펼 것이라는 점으로 요약된다.

미 국방부가 신아·태전략을 표방하게 된 이유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혹은 물론 가공할 만한 재래식 병력의 보유 및 북한체제의 불확실성 등에서 연유되는 한반도문제, 21세기 경제·군사 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장래문제 등 점증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불확실성 및 불안정성 때문에 미국이 이 지역에서 군사·안보적 역할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클린턴행정부는 신아·태전략 표방을 통하여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신고립주의' 경향의 국내 여론을 무마시킴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한·일 등 동맹국 및 ASEAN 제국 등 우방국과 북한 등 적성국가와 중·러 등 비적성국가 등에 대하여 미국이 계속해서 동아시아 군사·안보적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는 강력한 정책의지를 밝힘으로써, 이 지역에서 미국이 점차적으로 철수할 것이라는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미국은 재정·무역적자로 인한 국내 국방예산 감축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일본 등 역내 동맹국들에게 비용분담 및 역

할분담 확대를 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비용분담 측면에서 한·일에 대하여 동북아에 전진배치된 군사력 유지비용의 더 많은 부분을 분담할 것을 촉구하면서 역할분담 측면에서는 동맹체제 내에서 동맹국의 역할 증대 및 방위능력 증강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미국은 동북아에서 기존 동맹체제와 전진배치전략, 일정 수준의 전략핵 및 공군용 전술핵에 근간을 둔 핵억지전략을 유지함으로써 절대적인 군사력 우위를 견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역내 균형자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2) 한반도정책

미국의 한반도정책은 한국전쟁 이후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 분쟁발발을 억제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한·미 쌍무동맹체제와 전진배치 전략을 근간으로 추진되어 왔다. 미국은 1990년대 들어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재정적자 누증에서 비롯한 국방비 삭감 압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반도 안보정책과 관련하여 기존정책의 근간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조정을 모색하고 있다.

첫째, 미국은 한·미 동맹관계가 미국의 동북아정책에서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바, 한국에 대한 안보개입을 축소하기보다 최적비용으로 이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⁸⁾

8) 제2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미 양국은 종전 20% 수준이었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증가율을 전년 대비 10%로 하향조정, 1996년부터 1998년까지 3년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분담금은 1995년 3억 달러를 기준으로, 1996년 3억 3천만 달러, 1997년 3억 6천 3백만 달러, 1998년 3억 9천 9백만 달러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동안 한·미 양국은 주한 미군 총주둔비용 중 미군과 군속의 급여를 제외한 '원화발생경비 (WBC)'의 3분의 1을 한국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나, 미국은 이를 연차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일본의 분담수준인 73% 수준까지 증액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상당기간 동결하는 대신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북한의 전쟁도발억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비교우위’의 관점에서 해·공군력, 인공위성 및 기타 정보수집 활동에 치중하고, 지상전투기능은 한국군이 맡게 되는 구도가 그것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방위에 있어서 한국군이 점차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될 것이고 미군은 지원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의 일환으로 1994년 12월 한국군에 평시작전통제권이 이양되었다.

셋째, 미국은 한반도에서 ‘비핵화정책’과 ‘핵우산정책’을 병행·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남북한이 핵무기는 물론 핵 재처리시설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비핵화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⁹⁾ 핵보유국으로부터 핵위협에 대한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미국의 한반도정책은 아시아에서 기득권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현상유지정책이다.¹⁰⁾ 그러나 그 현상유지란 어디까지나 미국이 ‘균형자’로서 기능하는 미국 주도 하의 현상유지를 의미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미국은 한반도와 관련된 다자간 안보·경제 협의체 형성에서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이러한 기구는 반드시 미국 주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전 이후 북한을 적대세력으로 인식해 왔으며 북한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은 지난 40여 년간의 테러행위, 대남도발행위 등으로 심화되었다. 또한 최근의 핵무기 개발 및 미사일(기술)수출

9) 부시 미대통령은 1991년 9월 27일 표괄적인 전술핵 폐기선언을 하였는 바, 1950년대 후반부터 배치되어온 것으로 알려진 한반도의 전술핵에 대한 의혹도 이로써 해소되었다.

10) 미국은 정치, 경제 및 전략적인 이유에서 ‘모든 한국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민주정부에 의한 분단한 국의 통일이 미국의 국익과도 일치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미국은 안전하고 번영하는 한반도가 아·태지역의 새로운 질서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본 인식을 갖고 있다.

등은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은 과거 한반도에 상존하는 긴장상태가 구소련 및 중국의 한반도정책과 관련하여 유사시 북한의 우방국인 이들의 개입을 촉발할 것이며 이에 따른 미국의 불가피한 개입을 가장 중요한 우려사항으로 간주해 왔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미국의 대북정책 당면목표는 북한의 군사적 모험을 억지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이 추진하는 정책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보유 억제 및 북한의 군사능력 약화를 목표로 다양한 군사·정치·외교적 압력을 행사한다. 둘째,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억지하는 정책을 취한다. 셋째, 동북아 주요 국가의 대북정책을 조정하고 이들과 공동보조를 도출해내기 위하여 다자주의적 이니셔티브를 취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할 경우 이것이 일본 등 역내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동북아의 주요 안보현안으로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이 핵동결을 유지하는 한 북한과 제네바 기본합의를 깨지 않는 선에서 의회와 타협을 모색하면서 서서히 합의사항을 이행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북·미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두 개의 축이 조화·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네바 합의와 관련된 클린턴 행정부의 기본노선이다. 미국무부도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는다면 북·미관계도 결국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클린턴 행정부보다 남북관계 개선문제에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미관계가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서도 북한체제의 붕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이 붕괴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체

제를 개혁해 나간다면 북·미관계 및 남북관계는 경수로 건설 진척 상황에 맞추어 순조롭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996년 9월에 일어난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인해 한·미·일 3국이 경수로 지원사업을 잠정 유보함으로써 약간의 진통이 있기는 했으나 1997년 8월 19일 합경남도 금호지구 경수로사업 부지에서 부지착공식을 갖고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경수로 1기 공사가 막바지에 들어가는 한편, 경수로 2기 공사도 착공될 것이다. 제네바 합의에서 북한은 경수로 주요 핵심부품 인도 전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를 완전히 이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이 단계에서 IAEA의 특별사찰을 수용하고 핵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지 현재로서는 미지수이다. 만약 북한이 IAEA의 특별사찰을 받아들이고 미사일·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 및 수출의 포기를 선언하게 되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는 급속히 진전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북한정권이 붕괴될 경우 대체세력은 군부일 수 밖에 없으며, 이렇게 되면 남북한 지역은 무력충돌의 위험을 안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일단 김정일 정권의 안정을 추구하면서, 북한에 핵무기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정책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보인다.

2. 일본의 동북아 및 한반도정책

(1) 동북아정책

동북아지역에서 일본은 미·일 동맹체제하에서 안보 강화, 자원 및 시장의 안정적 확보를 국가이익으로 하여, (i) 아·태지역으로

안보역할증대, (ii) 잠재적 위협에 대한 방어 및 견제, (iii) 아·태 지역 경제 주도 등과 같은 정책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우선 안보적 측면에서 일본은 미·일 동맹체제 하에서 안전보장을 모색하면서도 경제력을 바탕으로 안보역할을 증대함으로써 정치·군사대국의 지위 확보를 도모하고 있으며,¹¹⁾ 이를 통해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는 입장을 취한다. 특히 이와 관련,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외상은 1994년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였으며, 일본은 ‘거부권 있는 상임이사국 지위’ 확보를 위하여 유엔회원국에 대한 외교활동을 더욱 적극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도 동년 6월 30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에 일본과 독일을 편입시키고, 안보리의 산하기구들을 확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안보리 개편안을 유엔에 공식 제안함으로써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일본은 구소련의 동북아지역 군사력을 최대의 위협으로 간주하였고, 구소련 붕괴 이후에도 러시아의 극동군사력을 여전히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왔다. 그러나 1997년 11월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총리와 보리스 엘친 러시아 대통령이 크拉斯노야르스크에서 만나 이틀간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양국정상은 도쿄선언 정신에 입각해 2차대전 당시의 적대관계를 공식 종료하는 평화조약을 2000년까지 체결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기로 합의함으로써 양국관계를 한차원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일본은 중국과 1972년 외교정상화 및 1978년 평화우호조약 체결을 통해 양국간의 적대관계를 공식적으로 청산하고 지역안정을 위한 양국간의 협력관계를 도모하

11) 냉전이후시대에 들어와 동북아 및 아·태지역 차원에서는 물론 범세계적 차원에서 그 역할을 강화하려는 일본의 노력은 국내적 제약(평화헌법 등)과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인 일본에 대한 국제적 제약(아시아 인접국가들의 일본에 대한 의구심 상존 및 유엔현장상의 적극조항) 등으로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원조 및 유엔 PKO에 기여 등 비군사적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웠으나, 지역강국으로서 중국과 경쟁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동·남지나해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일 동맹체제 유지, 방위력 증강 및 군사력 현대화, 군사적 역할의 광역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¹²⁾

첫째, 일본은 동북아지역에서 다원화 현상에 따른 갈등 및 위협 가능성 억지, 일본의 군비증강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우려 불식 등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미·일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냉전체제 붕괴 이후 미·일 동맹관계는 미국 군사비의 포괄적 삭감, 방위분담 확대에 따라 일본이 동북아 역내안보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쌍무적 관계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일본은 방위력 증강 및 군사력 현대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전후 4차례에 걸친 방위계획을 추진하였으며, 1987년 나카소네 내각은 방위비를 'GNP의 1% 정도'로 한다고 발표함으로써 'GNP의 1% 이내'라는 방위비 상한선을 철폐하였다.

셋째, 일본은 동북아지역에서 경제력에 상응하는 영향력 확보를 위해 군사적 역할의 광역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정책은 지역방위전략과 해상안보정책, 유엔평화유지군 파병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본은 국제무대에서 자국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유엔평화유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일본은 걸프전을 계기로 1991

12) 일본은 냉전종결, 소련해체 등 전략환경의 근본적 변화를 반영하여 지난 50년간 지켜온 방위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정한 「신방위대강(新防衛大綱)」('95. 12)을 발표하였다. 이 안은 미·일 안보체제와 전반적인 방위력 구축에 입각한 현 「방위대강」의 기본들을 유지하면서 지역분쟁, 테러, 재해, PKO 활동 등 냉전 이후의 다양한 위협요인에 대처할 수 있는 탄력적 방위력의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일본의 안보정책은 냉전 시 군사침략에 대한 억지와 영토방위에 중점을 두던 소극적 안보정책으로부터 인정된 국제질서를 확보·유지하는 적극적인 안보정책으로 전환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 분석 : 일본 신방위정책의 방향과 전망」, 1995. 11. 5 참조

년 4월 해상자위대 소속 소해정(掃海艇)을 중동에 파견한 바 있으며 1992년 6월 「유엔평화유지활동 협력법안」을 성립시킨 후 캄보디아, 모잠비크, 르완다, 소말리아, 골란고원 등에서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기존의 경제적 우위를 유지하고,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에 대비하면서 자원과 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전방위(全方位) 경제외교, 미·일 무역마찰 해소, 수출 및 첨단산업 주도의 비교우위 확대, 경제협력의 전략적 이용, 일본 주도의 지역 경제권 구축 등 포괄적인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일본의 동북아정책은 안보차원에서 미·일 동맹체제가 유지되고,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군사적 역할 증대를 모색하는 한편 군사력 증강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996월 11월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 2기 정권출범으로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 증대 모색 노력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 증대 요구, 일본내 신보수주의의 대두, 동북아지역에서의 군비경쟁 가속화 가능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한층 더 고무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세계적인 군비감축 추세와의 상충, 실질적인 위협으로 인식되어 온 구소련의 몰락,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주변국의 군국주의 부활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점진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2) 한반도정책

한편 일본은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군사적 역할 증대를 통하여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목표는 (i) 한반도의 위기상황 발생 방지, (ii) 일본에 적대적인 정권 수립 저지, (iii) 한반도에 대한 정치·경제적 영향력 확보

를 통한 최대한의 정치·경제적 이익 도모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¹³⁾ 이러한 목표에 따라 일본은 한반도에서 '두 개의 한국' 정책을 추진해 왔고,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평화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안보차원에서 한반도의 평화·안정이 동북아의 안정에 중요하며, 북한이 남한에 대해 위협요인으로 존재하는 한 일본에 대해서도 잠재적인 위협요인이 된다고 인식하여 한·일 우호협력관계를 한반도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¹⁴⁾ 경제적 측면에서 일본은 한·일간 무역불균형 및 첨단기술 이전과 관련된 양국간의 갈등요인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한편 일본은 1990년대에 이르러 냉전구조의 와해와 한·소 수교, 남북대화 진전 등에 따라 북한과 수교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1991년 시작된 일·북 수교교섭, 1996년 봄 북경 비공식 접촉 등에서 수교와 더불어 일본인 배우자의 귀국을 요청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북한의 식량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일본의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가 먼저 '일본인 납치 진상조사', '마약 및 위조달러 제조 해명', '일본인 배우자 귀환'을 내걸고 이들 3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식량원조는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일본인 납치와 마약은 북한이 당연히 거부할 사항으로서 결국 3대 조건 요구는 2가지 조건에는 어느정도 성의만 보여주면 배우자 귀환을 명분으로 본격 수교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제안이나 마찬가지였다. 예상대로 1997년 9월 1진 10여 명 귀국이 합의되어 1997년 11월 8일 15명이 일본에 도착했다. 이제 일본과 북한은 인권이란 '명분'과 적십자란 '간판' 아래 비공식 수교협상을 벌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일 수교협상과정은 북한 핵문제, 배상문제, 이은혜문제 등

13) Jungsuk Youn, "Japanese Attitude to the Question of Korean Unification," *East Asian Review*, Vol. IV, No. 1(Spring 1992), p. 33

14) 日本外務省編, 「外交青書」, 平成3年版, 第35號, p. 208

의 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북·미 수교와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의 입장을 살피지 않을 수 없고 한국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3. 중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정책

(1) 동북아정책

중국은 현재 유일한 초강대국 미국의 일방적 주도로 동북아 질서가 재편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구도 속에서 한반도 문제를 조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중국은 (i) 개혁·개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주변정세의 평화·안정 구축, (ii) 역내 국가들과 경제협력 증진, (iii) 세계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방위외교 추진의 거점확보 등을 기본적인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첫째,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평화적인 주변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국내정세 및 대외환경의 안정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주변국과 ‘선린우호관계’ 강화를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이념과 체제상의 상이성보다 공통이익 존재 여부에 대외관계의 초점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전방위적 평화공존외교’¹⁵⁾의 일환으로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통한 관계개선을 권장하면서, 북한이라는 군사적 긴장유발 가능세력을 현상유지세력으로 끌어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러시아와 정상회담(‘96. 4)을 통해 중·러 변경 문제를 포함한 안보협력 약속 및 중·러 정상회담(‘97. 4. 모스크

15) 李鵬, ‘政府工作報告’, 「文匯報」, 1994. 3. 24

바)에서 '미국주도 탈피 다극화' 공동성명과 아울러 러시아 총리의 중국방문('97. 6)으로 2000년까지 교역량 200억 달러 확대 등 경제협력에 합의하여 러시아와 관계정상화를 도모하고, 일본과 정치·경제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한편, 과거 갈등관계에 있던 주변국인 인도 및 베트남과 국교정상화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천안문사태 이후 유럽국가들과 미국의 제재정책에 실망하여 아시아 중심외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외교적 활동은 주변국과의 선린관계 강화를 통해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대외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둘째,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본·한국 등 역내 주요 국가들과 경제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개혁·개방정책 초기 중국은 동북아지역 국가들보다 서방 선진국들과의 경제교류·협력을 중시하여 왔으나, 아·태지역의 경제성장, 서방 선진국들과의 경제협력 부진, 6·4 천안문사태 이후 서방의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 지역별 경제블록화 현상 등의 요인에 따라 역내국가들과의 다각적인 경제협력을 모색하면서 '동북아경제협력권' 형성에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¹⁶⁾

셋째, 중국은 동북아 신국제질서 형성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역내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 차원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려 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정책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i) 중국은 미·러의 상대적 영향력 약화 및 군사적 위협 감소 등 동북아의 정세변화가 자국의 영향력 증대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러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소극적

16) 중국은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경제협력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역내 국가들의 역사·문화적인 연관성, 경제적인 상호보완성을 강조하고 있다. 史敏, “九十年代的 世界經濟格局和亞太地區的經濟合作,”「世界經濟」(中國社會科學院 世界經濟與政治研究所), 1990年 10月號, pp. 1~4; 中野謙二, “北東アジア地域の協調と中國の對應,”〔中國研究月報〕, 1990年 9月號, pp. 1~7

대응이라는 기존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정치·경제·군사 정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물론 중국이 미·러의 영향력을 완전히 구축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자국의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아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이 동북아지역의 긴장완화 추세, 미국의 국내경제적 요인 등으로 역내 주둔군 철수를 포함한 동북아 및 아·태지역의 전략적 조정과 군사력 축소가 불가피하지만, 해·공군의 기동력 강화를 통해 기존의 군사적 영향력을 최대한 유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 주도 하의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추구하려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¹⁷⁾ 따라서 중국은 새로운 동북아 질서 형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미국의 주도권을 견제하려는 것이다.

(ii) 대일관계에 있어서 중국은 일본과 경제교류·협력이 자국의 경제발전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과 동북아의 지역열강으로 중·일 양국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일본의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대가 중국의 동북아정책 목표에 손상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억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역내 국가들과 공동보조 모색 등 일본의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대 움직임을 견제하고 있다.

(2) 한반도정책

중국의 한반도정책은 중국이 동북아정책에서 설정하고 있는 자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동북아 신국제질서의 형성이라는 목표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중국의 한반도정책은 동북아정책 목표 실현을 위한 일차적인 대상의 성격을 지닌다. 여기에는 (i) 한반도의 안정·현상유지, (ii) 한국과 경제

17) 陳啓懋, “關於在亞太地區建立政治新秩序的探索,”『國際問題研究』, 1992年 1期, pp. 1~2 참조

교류 · 협력 강화, (iii) 한반도문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 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우선 한반도의 안정유지는 중국이 개혁 · 개방정책을 추진한 이후 한반도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중국은 1980년대 이후 한반도문제에 대한 기본인식의 전환, 남한과의 비정치적인 관계증진 및 남북관계의 조정, 한 · 중 수교 등 일련의 한반도정책 추진과정에서도 한반도의 안정유지를 전제조건으로 삼았다.

중국이 추구하는 한반도의 안정유지는 곧 남북간의 긴장완화 및 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 대남북한 관계의 균형적 조정을 통해 한반도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중국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중국은 한반도문제가 남북한 당사자간의 평화적인 대화 ·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할 것이다.¹⁸⁾ 중국은 당사자간의 대화 · 협상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가장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력 행사를 억제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¹⁹⁾ 따라서 남북한의 상이한 입장에 대해 어느 일방을 지지하기보다 쌍방의 성실한 협상자세를 촉구하고 한반도문제에 대한 외부의 간섭배제,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요인 해소 측면에서 미 · 일 등 한반도문제 관련국가들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18) 한반도통일에 대한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한민족의 염원을 존중하며 한민족 스스로의 평화통일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中·韓修交聲明 第5項, 「人民日報」, 1992. 8. 25 참조

19) 북한의 ‘북 · 미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 중국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江澤民 주석은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이전까지는 현 정전체제가 유효하며, 평화체제 전환은 남북한과 미 · 중 등 관련 당사국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와 관련된 북한의 주장이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과도하게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대화·협상에 의한 당사자 해결원칙을 강조함으로써 남북한 쌍방이 각자의 입지강화와 관련하여 제기하는 요구로부터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중국은 한국이 제기하는 북한의 개혁·개방, 핵개발 포기에 대한 대북한 압력행사 요청은 물론 이들 문제와 관련된 북한의 일방적인 지지 요구를 회피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한반도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그 밖에 북한의 정치·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한국의 흡수통일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역시 중국이 평화적인 대화·협상을 통한 한반도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면적인 요인이다.

둘째, 중국은 한국과의 정치관계 정상화, 경제교류·협력 증대에도 불구하고 대남북한관계의 균형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중국은 그동안 조심스럽게 추진해 온 대남북한 관계의 현실적·균형적 조정이 한·중수교를 통해 일단락되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이를 한반도의 현상유지, 대한반도 영향력의 증대를 위한 기본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북·미 관계개선 움직임을 적극 지지하는 태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한·중 수교 이후 남북한관계의 균형 상실을 우려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일종의 부담감을 갖고 있었으나, 북·미 3단계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의 토대 마련, 북·미 관계개선의 진척 등으로 남북한관계의 균형이 복원되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한국과의 경제교류·협력 확대는 중국이 한국과 정치관계를 정상화하기 이전부터 한반도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해 왔던 문제로서 한·중간 정치관계 발전의 촉진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경제교류·협력강화와 관련된 중국의 대한(對韓) 정책은 초기에는 자본 및 기술의 도입과 교역의 확대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강택민(江澤民) 주석의 방한('95. 11)을 계기로 한·중은 중형항공기 공

동 개발 차수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협력 및 러시아 가스전 개발에 공동 진출 등을 약속함으로써 이미 산업협력 단계로 진입된 경제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중 양국은 오사카 아·태경제협력체 회의에서 시장개방에 대한 유예조치가 허용되도록 협력하였다.

양국간의 경제·통상관계는 지리적 인접성과 양국 경제구조의 상호 보완성 등을 바탕으로 급속히 증가했다. 양국간 교역액도 1992년 89억 달러, 1993년 90억 달러, 1994년 117억 달러, 1995년 165억 달러, 1997년 말 현재 220억 달러를 기록하여 중국은 미국·일본에 이어 우리의 세번째 교역상대국으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 기업의 대중국 투자진출도 꾸준히 증가되어 1996년 9월 말 현재 대중국 투자금액이 149억 6천만 달러, 투자건수로는 6,910건을 기록하여 중국은 우리의 제1의 투자대상국이 되었으며, 우리는 중국에 대한 제6위 투자국이 되었다.²⁰⁾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 남북한 관계 개선 등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과거 미·소가 향유하여 온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흡수하는 동시에 일본의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 움직임을 견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안정유지 필요성에 대한 강조에 머물지 않고 자신들이 의도하는 동북아 신국제질서 형성의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 및 남북관계를 이끌어 간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과거 중국이 북·일, 북·미 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전제로 한·중 수교를 고려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중 수교를 전격적으로 실현한 것 역시 중국의 이러한 방침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은 북한과 기존 관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남한과 정치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한·소 수교 이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대폭 상실한 러시아와 지속적인 관

20) 「조선일보」, 1996. 12. 10.

제개선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 문제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관계발전을 이루지 못한 미국·일본에 비해 한반도 문제, 남북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한정책의 기조를 살펴보면 중국은 북한이라고 하는 군사적 측면에서의 긴장유발 가능세력을 현상유지세력으로 끌어안으려는 구도 속에서 대북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현존하는 사회주의 국가 중 중국은 북한의 체제유지 및 체제변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끈다. 특히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한의 변화 가능성성이 높아지고 있고, 중국과 북한에서 혁명세대 지도자의 사망에 따른 정책변화가 예견되는 현 시점은 세대교체와 더불어 정책전환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²¹⁾

최근 북·중관계는 상호간의 필요에 따라 실용주의 노선에 입각한 현실적응적 정책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경제적·실리적 이유에서 주변국과의 우호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한국과 관계를 정상화했으나, 지정학적으로 자국의 안보와 직결된 인접국 북한의 변고가 중국의 변방, 특히 티벳, 신강과 내몽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북한과 표면적인 갈등관계를 결코 원하지 않는 입장이다. 또한 미국 주도의 동북아 질서 재편을 우려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중국의 대서방 관계에 중요한 카드가 될 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동맹권 붕괴로 인하여 체제수호를 위한 이념적 통제의 강화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경제난 타개를 위한

21) 중국과 북한은 민주주의 국가와는 달리 공산당의 일당지배체제하에 아직까지도 법이나 기관보다 개인 지도자의 성향에 의해 지배되는 '인치사회(人治社會)'이다. 이런 점에서, 양 국가에서 최고 지도자의 사망은 대내외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세대교체와 더불어 정책전환을 가져올 수도 있다. Michael D. Swaine, *China : Domestic Change and Foreign Policy*, RAND National Defense Research Institute, 1995, p. 3

실용적 필요에 따라 중국의 원조를 기대하면서 중국에 영향을 미칠 힘을 지닌 제3국(미국, 일본 등)을 이용하여 협상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대미관계에서도 제3국(중국 등)을 카드로 해서 협상교섭력을 높이려는 의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중국도 북한의 대미·일 경사 가능성을 저지하고 북한체제의 안정유지를 위해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북·중 관계가 과거와 같은 혈맹관계로 복원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4. 러시아의 동북아 및 한반도정책

(1) 동북아정책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국가이익은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접경지역으로서 동북아지역에 대한 지정학적(地政學的) 이해와 아·태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에 근거한 지경학적(地經學的)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²²⁾ 러시아는 안보적 차원에서 구소련 이래로 동북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왔다. 이는 러시아가 동북아지역의 세력균형관계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는 한, 아·태지역 전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의 동북아 안보정책은 역내 전략환경을 러시아에 불리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군사적 균형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조성하여 역내 문제에 심도 있게 관여한다는 목표 위에 추진되고 있다.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러시아의 동북아 정책 목표는 (i) 역내 신국제질서 재편과정에 적극 동참, (ii) 일본의 재무장 및 군사대국화 견제, (iii) 중국의 반러

22) 특히 러시아는 아·태지역이 세계 공업생산의 60%를 생산하고, 세계의 무역에서 점하는 비율도 약 40%에 이르며 (*Mezhdunarodnaia zhizn*, No.4, 1993g. s. 28), 경제성장 속도도 아·태지역 전체평균이 4.2% (중국 10.14%, 미국 3.2%, 일본은 최근까지 2.2%, 한국 6.4%, ASEAN 6.2%)에 달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화 방지, (iv) 한반도문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 (v) 역내 군축의 실현, (vi) 다자간 안보협의기구 창설 등으로 요약된다.

한편 러시아는 동북아지역에서 시베리아 개발과 관련하여 중요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동북아 지역국가, 특히 미국·일본·한국의 경제력이 시베리아 개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러시아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으며, 중국·북한 등과 경제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페레스트로이카 시대 이래로 러시아의 외교정책은 최우선 과제인 경제활성화를 위한 외적 여건조성이라는 국내경제적 목적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입안되고 추진되어 왔다. 따라서 러시아의 동북아정책도 경제적 고려를 우선시하면서 추진되어 왔으며, 동북아 지역국가와 경제협력, 역내국가들의 시베리아개발 참여 유도, 역내 경제협력기구에 참가, 동북아경제권에의 참여 등과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2) 한반도정책

러시아의 한반도정책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ii) 남한과 경제 교류를 통한 실익 추구, (iii) 북한에 대한 영향력 견지 모색, (iv) 일본의 대러시아 접근 유도, (v) 아·태 진출의 교두보 확보 등이다.

첫째, 러시아는 국내 정치안정과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평화로운 주변환경 조성을 위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남북간의 직접대화를 통한 평화정착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인식하고, 남북대화를 적극 권장하는 동시에 남한과 외교관계를 개설하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한반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러시아는 남한이 최근 들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함으로써 동북아는 물론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남한의 경제력을 이용한 러시아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교류를 모색·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정세불안정과 투자기반 부실 등으로 1995년 한·러 양국간 수출입규모는 33억 달러로 1990년 8억 9천만 달러의 3배반 정도 밖에 늘지 않았다. 한·중간의 교역규모에 비하면 20%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대러시아 투자도 실행기준으로 1995년 말 현재 65건 6,500만 달러에 머물렀다. 그것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블라디보스토크 등 연해주에 70%가 집중되고 있다. 다만 러시아의 경제적 잠재력에 비추어 볼 때, 한·러 경제관계가 비약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다고 하겠다.

셋째, 러시아는 북한의 개방·개혁을 종용하고 대북한 관계를 현실적으로 재조정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의 현존체제가 러시아의 아·태 정책추진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하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 하에 오히려 북한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한다.²³⁾ 1995년 9월 7일 러시아의 통보에 따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 경우 러시아가 북한 지원을 위해 자동개입하게 되어 있는 「조·러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이 1996년 9월 폐기되어 기존의 군사동맹관계를 청산하게 되었지만, 북·러 관계는 새로운 관계정립을 통하여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넷째, 현재 러시아 경제상황에 비추어 서방과 경제협력이 필요 불가결하다는 점에서 일본의 경제력에 대한 러시아의 기대는 매우

23) 특히 러시아는 북·미 제네바합의 이후 미·일의 대북한 접근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기존 우호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중국과 함께 미·일이 한반도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경우, 러시아만 고립된다는 위기를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크다. 따라서 러시아는 한국과 관계발전이 일본에 대한 자극요인으로 작용하여 일본의 러시아 진출이 적극화되는 계기가 될 것을 바라고 있다.

다섯째, 러시아는 한국과 관계발전을 통하여 아·태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대일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서 일본이 북방영토 문제를 표면적 이유로 정경 불가분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러시아의 대일 관계개선 정책 및 나아가서 아·태진출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남한과 관계개선을 통하여 「태평양경제협력회의」(PECC), 「아·태경제협력체」(APEC),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에 가입을 실현하고,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기구를 창설함으로써 아·태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향후 러시아의 동북아정책 및 한반도정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러시아의 동북아 및 아·태 정책은 이 지역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소련 구성 공화국과의 관계정립 및 대미·대서방 외교의 중요성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낮은 순위를 차지할 것이다.

둘째, 러시아는 아시아지역을 주요한 무기시장으로 간주하고 역내국가들과 군사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는 동시에 외교적 영향력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셋째, 러시아는 경제지원 획득차원에서 한국과 관계발전을 앞으로도 계속 모색할 것이다. 특히 일본의 적극적인 대러 경제지원과 투자를 유도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러시아는 한·소 수교 이후 악화되어 온 대북관계를 회복하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북한과 정치·군사·경제교류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제3절 주변환경과 통일

한반도의 주변 환경은 기본적으로 평화정착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주변4국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이 각국의 국익에 유리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개방·개혁 등 실용주의 정책을 채택·추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재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남북한대화가 진전되어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에 입각한 평화공존 관계로 발전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렇듯 한반도 주변4국은 남북대화 및 남북한 평화정착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남북한의 궁극적인 통일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지닌 것으로 분석된다. 그 이유는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통일된 한국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통일한국이 장래 각국에 적대적인 세력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또한 적대적인 세력으로 발전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통일한국이 국력을 신장하여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남북한을 현재 수준에서 통합하더라도 통일한국은 상당한 국력을 보유하여 세

계 190여개국 중 통일된 한국의 면적은 78위, 인구는 12위, 국민총생산은 11위를 점하게 되며, 군사력도 미·일·중·러에 비견할 수 있을 만큼 잠재적 군사대국이 된다.

둘째, 한반도 현상변화가 역내 불안정 요인으로 되어 각국의 국익에 위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한반도가 통일되어 역내 강대국으로 등장할 경우, 역내 역학관계의 변동을 우려한 각국이 정치·군사대국화 노선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각국은 자국의 영향력 증대를 도모하면서 타국의 영향력 증대 구실로 작용할 수 있는 한반도 통일이라는 현상변경 요인의 발생을 억제하려 하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4국의 이러한 소극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통일환경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남북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평화공존이 제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변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변4국은 당장 통일을 희망하지 않으나,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 증진은 적극 지원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려면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민족 내부적 통일기반을 정비하는 동시에 국제적 통일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긍정적인 주변4국의 입장 을 활용하여, 남북대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민족공존의 틀을 마련하는 한편, 내실있는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제도화함으로써 민족 공영을 도모한다.

둘째, 실질적인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통일상태’²⁴⁾를 구현함으로써 주변4국으로 하여금 남북한 통일의 당위

24) ‘사실상의 통일상태’는 남북간 경제·사회·문화공동체를 완성하여 평화와 교류·협력이 제도화되고 민족공존·공영이 보장될 수 있는 상태이며, 정치적 형태는 단일 국가 통일을 이루하지는 못하였으나, 남북한이 남북연합을 구성하여 정치적 일체성을 강화하여 나가는 상태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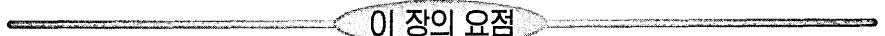
성과 불가피성을 인정하도록 하고, 남북한 당국과 주민의 적극적인 통일의지를 바탕으로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궁극적인 민족통일로 발전시킨다. 한편 ‘사실상의 통일상태’가 구현되거나 또는 남북한 통일이 동서독의 통일처럼 급속도로 가시화될 경우, 주변4국이 통일한국에 대한 영향력 확보 차원에서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통일 한국과 우호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남북한의 통일을 지원할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학준, 『한국문제와 국제정치』, 박영사, 1992.
2.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한반도 통일과 그 환경』, 형설, 1993.
3. 민족통일연구원, 『미국클린턴행정부의 동북아정책과 동북아시아 변화』, 1993.
4. —————, 『미·북관계와 한·미관계 변화 전망』, 1995.
5. —————, 『북·일, 미·북관계 변화전망과 대책』, 1991.
6. —————, 『탈냉전기 중·북한관계 변화 구조』, 1995.
7. —————, 『한·일관계 변화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 1995.
8. 안병준, 『탈냉전기의 국제정치와 한반도 통일』, 법문사, 1993.
9. 외교안보연구원, 『주요 국제문제 분석』, 1995.
10. 이기택, 『한반도 통일과 국제정치』, 삼영, 1991.
11. 이신지, 『동북아 국제정세의 전망』, 국제문제연구소, 1994.
12. 통일원, 『주변국가와 한반도』, 1995.
13. 평화연구원, 『동북아와 남북한』, 1994.
14. 한승조, 『21세기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형설, 1993.
15. 최영진, 『동아시아 국제관계사』, 지식산업사, 1996.
16. 이은철, 『북한핵과 경수로지원』,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IV.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제11절	67
우리의 통일노력과 통일정책의 발전과정	
제12절	85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추진배경과 의의	
제13절	96
북한의 통일방안	



이 장의 요점

- 우리 통일정책의 기본방향은 (i) 민족사적 정통성이 유지 · 발전되는 통일, (ii) 세계사의 흐름에 맞는 자유와 번영을 위한 통일, (iii) 남북 자유총선기에 의한 민주적 통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82),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89),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92) 등을 제시, 추진하여 왔다.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을 화해 · 협력단계와 남북연합단계라는 중간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점진적 단계적 방식에 의해 달성하려는 것이다. 통일의 원칙은 자주 · 평화 · 민주의 3원칙이다.
 - 북한은 우리와 달리 통일을 '통합'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해방'과 '혁명'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를 제기하면서 '제도통일'은 후대에게 맡기자고 주장한다.
-

제1절 우리의 통일노력과 통일정책의 발전과정

통일정책은 주어진 대내외 통일환경을 합목적적으로 변화·유도하여 하나의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다. 통일방안은 통일에 대한 정부의 입장, 통일의 원칙, 통일에 대한 접근방식 등을 포괄하여 행동지침과 행동계획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따라서 통일정책과 방안도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시대적 상황, 국민의 여망, 정부의 정책적 의지 등에 따라 변화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의 통일정책과 방안은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예전과 단절된 형태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보다 현실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보완·발전되어 왔다.

우리가 통일정책 발전과정에서 일관되게 견지해 온 기조는 ① 민주적 절차에 의한 남북 총선거 방식에 의한 통일, ② 민족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 및 민족의 번영이 보장되는 통일 추진 등이다.

1. 유엔을 통한 통일노력

(1) 북한지역 자유총선거론

유엔총회는 1947년 11월 14일자 결의에서 유엔 감시하의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여 평화통일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¹⁾ 남한은 이 권고안을 받아들여 1948년 5월 10일 유엔한국임시위원회의 감시 하에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동년 7월 17일 헌법을 공포하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内外에 선포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유엔의 권고안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최초 통일방안은 북한지역 자유총선거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대한민국은 유엔의 결의와 감시하에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수립된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이기 때문에,²⁾ 북한지역에서 총선거를 실시함으로써, 국회의석 중 북한측 뜻으로 배정한 잔여의석 100석을 채운다는 것이 당시 우리 정부의 입장이었다. 제헌국회는 1948년 6월 12일 “북한에서도 우리와 같이 유엔 결의에 의거하여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속히 총선거를 실시하여 선출된 대표를 우리 국회로 보내주기 바란다”는 요지의 북한동포에게 보내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그 후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을内外에 선포함과 동시에 통일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 (i) 대한민국 정부는 그 헌법 규정에 따라 전체 한반도에 대한 유일 합법정부이다.
- (ii) 선거가 보류된 북한에서 조속히 민주적 선거를 실시하여 북한동포를 위하여 국회에 공석으로 남겨 둔 100석의 의석을 채워야 한다.
- (iii) 북한 수복과 관련, 북한 동포들의 자발적 의사가 계속적으로 봉쇄되는

1) Research Center for Peaceful Unification, *Korean Unification Sources Material with Introduction*, Seoul, 1976, pp. 101~102

2) 앞의 책. pp. 109~110

경우 대한민국은 무력에 의해서라도 북한에 대한 주권을 회복할 권리가 있다.³⁾

북한지역에 대한 주권회복을 위한 무력행사 불사론(不辭論)이나 6·25 전쟁 이후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통일론은 정치적 구호로 상징적 의미가 짙었으며, 실천적 차원보다 북한의 ‘남북협상론’이나 ‘주한미군 철수론’에 대한 대응책이었고 우리의 안전보장을 위한 조치였다.

당시 정부는 북한과 어떠한 협상도 거부하였다.⁴⁾ 남북협상론과 관련하여 1949년 2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통일문제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통일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대한민국 정부의 존립목적하에서만 허용될 수 있는 것이며, 북한 괴뢰정권과의 협상은 공산정권에 대한 묵시적인 승인을 뜻하는 것이니, 이같은 모욕적인 협상은 결코 있을 수 없다.”⁵⁾

(2) 남북 자유총선거론

북한지역의 자유총선거론은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을 계기로 남북의 자유총선거론으로 전환되었다. 이 회담에서 당시 변영태 외무부장관은 6월 14일 14개항의 통일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요지는 “통일 독립한국의 수립을 목적으로 유엔의 결의와 감시하에 대한민국 헌법절차에 따라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이었다.⁶⁾

제네바 정치회담 이후에도 정부의 통일에 대한 기본입장은 유엔

3) 통일원, 『통일백서』, 1995, pp. 63~64 ; 외무부, 『외무행정의 십년』, 1959, p. 93

4) 유엔 한국임시위원회와 북한의 협상도 소련을 통한 협상은 용인하되, 북한과 직접협상은 절대 반대했다.

5) 외무부, 앞의 책, p. 94

6) 통일원, 『통일백서』, 1990, pp. 24~25

결의에 의한 통일의 실현이라는 데 변함이 없었다. 1954년 11월 11일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의 결의에 의해 수립되고 유엔에 의하여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되었다는 전제하에 “유엔감시하에 북한지역에서 전공산군이 철퇴한 후 선거를 실시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을 확충하는 것”만이 국시(國是)임을 천명했다.

1960년 4·19혁명으로 자유당 정부가 무너지고, 7·29선거에서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었다. 4·19혁명으로 보수·혁신할 것 없이 많은 정당들이 등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되었고 다양한 통일방안들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민주당 정부의 통일방안은 기본적으로 유엔 감시하의 남북 자유총선거였다. 그러나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제시된 통일방안과 다른 점은 ‘유엔의 결의에 의거하여’가 ‘유엔의 결의를 존중하여’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1960년 8월 24일 당시 정일형 외무부장관은 ‘7개항의 외교정책성명’에서 “북진통일 같은 무모하고 무계획적인 슬로건을 버리고 유엔의 결의를 존중하여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자유선거에 의한 통일정책을 수행한다”고 천명했다. 정일형 외무부장관은 9월 10일 국토통일방안에 관한 국회질의 답변에서 ‘유엔의 결의에 의거하여’를 ‘유엔의 결의를 존중하여’로 바꾼 이유는 아시아·아프리카 신생국의 대거 유엔 가입으로 유엔의 판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한국의 통일에 관하여 유엔의 어떠한 결의가 있다고 하여도 대한민국의 헌법절차가 무시될 수는 없다고 강조하였다.

민주당 정부의 통일에 대한 입장과 달리 혁신계를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남북교류론과 중립화 통일론이 공공연하게 주장되기에 이르고⁷⁾ 이에 동조하는 일부 학생들의 움직임이 있게 되자 동년 11월 2

7) 제2공화국 시기의 각종 통일논의에 대해서는 이정식, 『해방삼십년사 : 제3공화국』, 성문각, 1976, pp. 383 ~423 ; 한승주, 『제2공화국과 한국의 민주주의』, 종로서적, 1983, pp. 174~175, pp. 190~196 참조

일 장면 국무총리는 ‘한국 중립화에 대하여’라는 성명을 발표하여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이미 선언한 바 있고 그 이후 매년 유엔총회의 ‘통한(統韓)에 관한 결의’에 의하여 재확인된 원칙대로 유엔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함으로써 평화적 방법에 의한 자유 민주통일을 성취하고자 한다”고 유엔감시하의 남북 자유총선거를 재확인하고, 오스트리아식 중립화 통일론의 위험성을 경고하였다.⁸⁾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5대 국회도 같은 날 ‘한국통일 및 유엔가입에 관한 결의’를 통해서 통일에 대한 기본입장을 명백히 하였다.

“통일독립민주한국을 수립한다는 유엔의 기본원칙에 따라 한국 국민의 자유화의 기본원칙에 따라 한국 국민의 자유와 국가의 안전이 항구적으로 또 확고히 보장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절차에 의하여 유엔 감시하의 인구비례에 따라 자유선거를 실시한다.”

이와 같이 정부와 국회의 통일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사회 일각의 경계론에도 불구하고 1960년에 들어오면서 혁신계를 비롯한 일부 학생들의 중립화통일론, 남북협상론, 남북교류론 등은 더욱 고조되었다. ‘민주자주통일중앙협의회’, ‘중립화조국통일운동총연맹’, ‘민족통일연맹’,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 등의 혁신적 통일운동기가 발족된 것도 이 때였다.

(3) 국토통일을 위한 실력배양론

국내정국이 극도로 혼란하고 무분별한 통일논의가 난무하던 1961년에 5·16이 일어났다. 군사혁명위원회는 6개항의 혁명공약을 발표했다. 제1항에서 “반공을 국시(國是)의 제1의(義)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8) 국토통일원, 『민족통일로의 전진- 국토통일원 20년』, 1989 참조

고 천명하였다. 제5항에서는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배양에 전력을 기울인다”고 밝힘으로써 결국 ‘반공체제의 재정비 강화’와 ‘국토통일을 위한 실력배양’이 통일의 기본방향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입각한 혁명정부의 통일방안은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제시되고 그 후 정부의 통일방안으로 견지되어 왔던 유엔 감시하의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총선거였다. 그러면 서도 북한 동포의 해방과 실지(失地) 회복에 의한 통일을 강조하였다. 김홍일 외무부 장관은 1961년 6월 24일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는 무력에 의한 통일을 원하지 않으며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추구하여 유엔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한다”고 언명하였다.

혁명정부 초기의 이러한 통일정책은 민주당 정부의 통일정책과 크게 다른 것이 없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먼저 실력을 배양한 다음에 통일을 추구하겠다는 주장이었다.

(4) 선건설 후통일론

1963년 12월 17일 민정이양으로 제3공화국이 출범하였다. 1964년 1월 10일 대통령 연두교서에 나타난 민주공화당 정부의 통일정책은 (i) 유엔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통일, (ii) 실지 회복에 의한 통일, (iii) 통일을 위한 제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와 태세의 정비 등이었다.⁹⁾

각계에서 통일논의가 재연(再燃)되고 있던 1964년 11월 29일 국회는 국토통일방안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유엔감시하의 남북자유총선거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재확인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유엔감시하에 남북한 토착인구 비례에 따

9) 대통령비서실,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집 2 : 제5대편』, 1973, pp. 31~32

라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국토를 통일한다. (ii) 선거감시단은 자유 선거를 실시하는 유엔회원국 중에서 선임되어야 한다. (iii) 통일된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통일방안은 일체 배제한다.

1965년 한·일 회담에 대한 학생들의 반대시위와 이에 편승한 무절제한 통일 논의가 일어나자, 정부는 통일에 대한 입장을 재천명하고 ‘선건설(先建設) 후통일(後統一)’의 정책방향을 분명히 하였다. 1966년 1월 18일 국회에 보낸 대통령 연두교서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의 지상명제는 바로 조국통일”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향하는 조국 근대화야말로 남북통일을 위한 대전제요 중간목표이다. 통일의 꿈이 근대화에 있고 근대화의 길이 경제자립에 있는 것이라면 자립은 통일의 첫 단계가 된다”고 강조하였다.¹⁰⁾

6월 8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는 “남북한 통일문제는 ’70년대 후반기에 가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함으로써 혁신계 정치인들의 통일논의를 반박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를 제한하였다. 1967년 1월 국회에 보낸 대통령 연두교서(年頭敎書)에서도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야 할 것은 경제건설과 민주역량의 배양이라고 하면서 ‘선건설 후통일’의 기본입장을 다시 강조하였다.

“공업입국의 조국근대화가 이루어질 1970년대에는 국토통일의 전망이 밝아 올 것이다. 오늘 이 단계에 있어서 통일의 길은 경제건설이며 민주역량의 배양이다. 우리의 경제, 우리의 자유, 우리의 민주주의가 북한으로 넘쳐 흐를 때 그것은 곧 통일의 길이다. 최근 통일문제를 둘러싸고 유엔내에 나타나기 시작한 유동적인 사태와 또 앞으로 예상되는 어떠한 추이에 대해서도 신축성 있는 대책으로 임할 것이며, 통일문제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의 중지를 모으는 데 힘쓸 것이다.”¹¹⁾

10) 앞의 책, p. 592

11) 앞의 책, p. 926

이러한 입장에서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안 수립을 위해 1969년 3월 1일 정부부처의 하나로서 국토통일원이 설치되었다.¹²⁾

최규하 외무부 장관이 1969년 10월 11일 발표한 통한각서(統韓覺書)에 나타난 제3공화국의 통일방안은 다음과 같다.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통일이어야 한다. 토착인구 비례에 따라 대표가 선출되는 전한반도를 통한 자유선거이어야 한다. 자유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의 감시가 있어야 하고 평화와 안전을 위한 조건이 성숙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새로운 침략을 막기 위하여 유엔군이 주둔해야 한다.”

2. 8·15 선언과 자주적 통일노력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국제정세의 조류는 1969년 낙수 독트린 발표, 미·중 접촉, 일·중 접촉, 미·일·중·소간의 새로운 세력균형 형성 등으로 인하여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의 기운이 급진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1960년대의 ‘선건설 후통일’에 입각한 내적실력배양을 바탕으로¹³⁾ 제3공화국 후반기의 통일정책은 매우 신축적이면서 현실성과 적극성을 띠게 되었다. 그 전에 금기시되었던 통일논의도 국토통일원의 설치를 계기로 하여 학문적·정책적 차원에서 활발히 전개되게 되었다.

우리 정부가 자주적 입장에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고 통일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 것은 1970년대부터이며, 그 직접적 출발점은 1970년 8월 15일 광복절 제25주년 대통령

12) 국토통일원의 설치 경위에 관해서는 국토통일원, 『민족통일로의 전진- 국토통일원 20년』, 1989, pp. 471 ~472 참조. 국토통일원은 통일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통일원으로 개칭('90. 12. 27)되었다.

13) 2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공적 완수로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한국의 경제력이 북한을 능가하기 시작했다. 1인당 GNP로 볼 때, 1965년 기준 한국 105 달러, 북한 162 달러이던 것이 1970년 한국 252 달러, 북한 230 달러로 되었다.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1995. 11, p. 183

경축사에서 발표된 ‘평화통일구상선언’이다. 1970년 8·15선언은 북한이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이나 폭력혁명에 의한 대한민국의 전복기도¹⁴⁾를 완전히 포기” 할 것을 전제로 남북한간의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회인가를 입증하는 개발과 건설과 창조의 경쟁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나의 구상에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북괴에 대하여 더 이상 무고한 북한 동포들의 민생을 희생시키면서 전쟁준비에 광분하는 죄악을 범하지 말고 보다 선의의 경쟁, 즉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와 공산독재의 그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회인가를 입증하는 개발과 건설과 창조의 경쟁에 나설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¹⁵⁾

이 선언이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종래의 통일정책에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입장에서 북한공산정권의 존재마저 인정하려 하지 않았으나, 이 선언을 계기로 북한지역에도 공산정권이라는 사실상의 정권이 있다는 현실을 인정했다. 둘째, 그러한 바탕 위에서 남북간의 대화와 협상,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민족의 통일문제를 유엔에 의해 해결하겠다던 종래의 입장에서 벗어나 남북당사자들이 직접 만나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었다.

8·15 선언의 기본정신에 따라 대한적십자는 1971년 8월 12일 1천만 남북이 산가족찾기운동을 제의하였고, 북한적십자사가 8월 14일 이에 동의함으로써 분단 26년 만에 인도적 차원에서 남북대

14) 1965년 대남강경노선을 취하게 된 북한의 대남무력 도발은 1968~69년 절정에 이른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기습사건('68. 1. 21), 미해군 함정 푸에블로호 피납사건('68. 4. 15) 등이다.

15) 대통령비서실, 『박정희 대통령 연설문집 3』, 1973, pp. 810~811

화가 열리기 시작했다. 특히 김용식 외무부 장관은 8월 31일 기자 회견에서 인도적 문제의 해결, 비정치적 문제의 해결, 정치적 문제의 해결이라는 남북문제 해결의 3단계론을 제시했는데, 3단계론은 1970년대 이후 정부의 통일접근의 주요 시각이 되어 왔다. 인도적 차원의 남북적십자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 남북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 당국간 공식문서라 할 수 있는 '7·4 남북공동성명'이 1972년 7월 4일 발표되었다. 공동성명은 7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의 원칙에 대한 남북간의 합의였다.

- (i)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 하여야 한다.
- (ii)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 (iii)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¹⁶⁾

7·4 남북공동성명 발표로 남북관계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인도적 차원의 적십자회담과 함께 정치적 차원의 남북조절위원회회담이 진행됨으로써 남북간에는 두 개의 대화통로가 열리게 되었다.

3.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

1972년 10월 유신으로 제3공화국이 끝나고 이어서 제4공화국이 출범하였다. 제4공화국은 통치권의 강화라는 측면 이외에는 모

16) 문제는 북한이 3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데 있다. 북한은 자주원칙은 주한미군의 철수와 미국의 간섭 배제로, 평화원칙은 한국의 군사력 현대화와 군사연습의 중지로, 민족대단결 원칙은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공산당의 합법화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72년 9월 17일 마이니찌 신문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김일성의 대답').

든 면에서 제3공화국과 같다. 통일정책도 제3공화국 통일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1년 뒤인 1973년 6월 23일 정부는 (i)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모든 노력의 경주, (ii) 한반도의 평화유지, 남북한간의 내정불간섭 및 불침략, (iii) 성실과 인내로 남북대화 계속, (iv) 북한의 국제기구에 참여 불반대, (v)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불반대, (vi) 모든 국가에의 문호개방, (vii) 평화선린에 기초한 대외정책의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6·23 선언)을 발표하였다. 또한 1974년 1월 18일에는 무력 불침범 약속, 내정불간섭,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현행 휴전협정의 효력 존속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불가침협정 체결’을 제의하였다.

이러한 제안들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북한에도 정치 체제가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러한 현실인정의 바탕 위에서 통일이 되는 날까지 남과 북의 두 체제가 평화공존을 해 가자는 것이었다. 정부는 1970년 8·15선언 이후 취해 온 남북간의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종합·체계화하여 1974년 8월 15일 대통령 광복절기념사를 통해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 (i)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은 상호 불가침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ii) 남북간의 상호 문호를 개방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대화를 성실히 진행시켜야 하며,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 (iii) 이 바탕 위에서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하에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남북 한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을 이룩한다.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이 내포하고 있는 주요정책의 표현은 첫째, 평화통일을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정착,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가 필수적 과정이라는 점, 둘째, 남북한 총선거를 위해서 남북간의 신뢰조성과 동질화가 촉진되어야 한다는 점, 셋째, 총선거 감시기구가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유엔 감시하’에서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은 종전의 ‘선건설 후통일’에서 ‘선평화 후통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 이후 우리 정부 통일정책의 기본이 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정부의 통일방안은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보완·발전되어 왔다. 보완 내용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은 ‘남북한 총선거’ 이전에 통일에 이르는 중간단계를 설정한 것이었다.

4.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

1981년에 출범한 제5공화국 정부는 6월 5일 ‘남북한당국 최고 책임자간의 직접회담’을 제의했고 1982년 1월 22일 대통령 국정연설을 통해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¹⁷⁾ 이 방안은 “통일은 민족자결의 원칙에 의거하여 겨레 전체의 의사가 골고루 반영되는 민주적 절차와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통일헌법의 제정으로부터 남북 총선거를 통한 통일민주공화국 완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방안은 통일방식과 통일에 이르는 과도적 조치라는 두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선 통일방식은 다음과 같다.

“쌍방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남북한 대표들로 민족통일협의회의를 구성하여 이 협의기구에서 민족, 민주, 자유, 복지의 이상을 추구하는 통일민주공화

17) 대통령비서실, 『전두환 대통령 연설문집 2』, 1988, pp. 46~48

국의 완성을 위한 통일헌법 초안을 마련하며, 이 헌법 초안을 남북한 전역에 걸쳐 민주방식에 의한 자유로운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확정·공포하고, 확정된 통일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총선거를 통하여 통일국회와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통일을 완성한다.”

그리고 통일국가의 국호, 정치이념, 대내외정책의 기본방향, 정부 형태, 총선거의 방법과 절차 등의 문제는 ‘민족통일협의회의’에서 통일헌법을 기초하는 과정에서 상호 협의·해결한다는 것이다.

통일에 이르는 과도적 조치로는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안)’을 제시하였다.

- (i) 통일국가를 수립할 때까지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관계를 유지
- (ii)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무력 및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을 완전히 지양, 모든 문제를 상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
- (iii) 상호관계에 있어서 현존하는 상이한 정치질서와 사회제도의 상호인정,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일체 불간섭
- (iv) 긴장완화와 전쟁방지를 위해 현존 휴전체제의 유지, 군비 경쟁의 지양과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 조치를 협의
- (v)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고통과 불편 해소, 민족적 신뢰와 화합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사회적 개방을 추진, 이산가족의 인도적 재회문제를 포함하여 남북한의 자유로운 왕래와 다각적인 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역, 교통, 우편, 통신, 체육, 학술, 교육, 문화, 보도, 보건, 기술, 환경보존 등 제분야에서 협력하며, 이를 통해 민족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구체적 노력을 경주
- (vi) 통일시까지 사상, 이념, 제도의 차이에 구애됨이 없이 세계 여러 나라들과 각기 체결한 모든 쌍무적 및 다자간 국제조약과 협정을 존중하며, 민족의 이익에 관한 문제를 서로 협의
- (vii) 각료급 전권대표를 임명하여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부를 설치

통일에 이르는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남북간에 신뢰를 조성하고 민족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예전의 민족자해적(民族自害的)이며 비정상적인 상호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민족자애적(民族自愛的)인 정상관계로 전환시키고자 하였다.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특징은 첫째, 평화통일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민족·민주·자유·복지라는 통일의 미래상(未來像)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통일을 과정으로 보고 분단의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통일의 완성에 이르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완전한 통일국가를 이루려면 그 과정에서 민족화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넷째, 남북한 총선거의 규범으로서 남북한 대표가 협의하여 제정하게 될 통일헌법 및 이 헌법에 따라 통일민주 국가를 완성시키는 과정과 절차를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민족화합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로서 1982년 2월 1일 손재식 국토통일원 장관은 성명을 통해 '20개 시범실천사업' 을, 2월 25일에는 '남북고위대표회담' 을 제의하였다.¹⁸⁾

5.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987년 개정 헌법은 처음으로 헌법에서 분단 현실을 인정하고 통일은 평화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였다. 헌법 전문에서는 조국의 평화통일 사명을 천명하고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명시했다. 제 66조 3항은 대통령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18) 통일원, 『통일백서』, 1992, pp. 46~48

1988년 2월 25일 출범한 제6공화국 정부는 과거와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남북관계의 정립을 위한 통일노력을 전개하였다. 민족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민족자존과 화해를 통한 민족공동체 형성에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정책적 표현이 1988년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7·7선언)과 1989년 9월 11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7·7선언'은 북한을 대결의 상대가 아니라 '선의의 동반자'로 간주하고,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공동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통일조국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간의 대결구조를 화해의 구조로 전환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조치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정책선언이었다.¹⁹⁾

- (i)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 학생 등 남북동포간의 상호 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해외동포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 (ii) 남북적십자회담이 타결되기 이전이라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이산가족들간에 생사·주소확인, 서신거래, 상호방문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주선·지원한다.
- (iii) 남북한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간 교역을 민족내부교역으로 간주한다.
- (iv) 남북 모든 동포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비군사적 물자에 대해 우리 우방들이 북한과 교역을 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 (v) 남북간의 소모적인 경쟁·대결 외교를 종결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발전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또한 남북대표가 국제무대에서 자유롭게 만나 민족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희망한다.

19) 대통령비서실, 『노태우 대통령 연설문집 1』, 1990, pp. 176~179

(vi)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 미국, 일본 등 우리 우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협조할 용의가 있으며, 또한 우리는 소련, 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한다.

이와 같이 '7·7선언'은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간의 인적·물적 교류협력의 기본적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때부터 남북간의 교류협력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선언에 따른 대표적 조치 중의 하나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90. 8. 1. 공포 · 시행)이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989년 9월 11일 국회에서 대통령의 특별선언을 통해 발표되었다.²⁰⁾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7·7선언을 계승한 것이며 남북간에 누적된 불신과 대결의식, 이질화 현상을 그대로 둔 채 일시에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완전한 통일을 이루려면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먼저 민족공동체를 회복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평화·민주'를 제시하고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는 자유, 인권,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를 제시하였다.

통일국가의 수립절차는 남북대화의 추진으로 신뢰회복을 기해 나가는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민족공동체헌장'을 채택하고, 남북의 공존공영과 민족사회를 동질화, 민족공동생활권의 형성 등을 추구하는 과도적 통일체제인 '남북연합'을 거쳐,²¹⁾ 통일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

20) 대통령비서실, 「노태우 대통령 연설문집 2」, 1990, pp. 255~263

21) 남북연합은 한반도에 두 개의 다른체제가 있다는 현실인정을 바탕으로 상호 공존공영하면서 민족사회의 동질화와 통합을 촉진해가는 정치적 결합체로서 남북관계가 민족내부의 '특수관계'임을 그 전제로 한다. 이러한 입장이 반영된 것이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의 "생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구절이다.

함으로써 완전한 통일국가인 통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남북연합단계에서는 민족공동체현장에서 합의하는데 따라 남북정상회의,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남북공동사무처 등을 둔다는 것이다.

“통일된 우리의 조국은 민족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 각자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여야 합니다.”

“통일을 이루는 원칙은 어디까지나 민족자결의 정신에 따라 자주적으로,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그리고 민족대단결을 도모하고 민주적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갈라지고 이질화된 민족사회를 그대로 두고 하나의 국가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민족공동체를 올바로 회복·발전시키는 일이야말로 통일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통일로 가는 중간단계로서 먼저 남과 북은 서로 다른 두 체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을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공영하면서 민족사회의 동질화와 통합을 촉진해 나가야 합니다. 남북간에 개방과 교류·협력을 넓혀 신뢰를 심어 민족국가로 통합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사회·문화·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남북간에 존재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해 간다면 정치적 통합의 여건은 성숙될 것입니다.

통일을 촉진할 이 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쌍방이 합의하는 현장에 따라 남북이 연합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합체 아래에서 남과 북은 민족공동생활권을 형성하여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토록 하여 민족공동체의 발전을 보다 가속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통일국가로 가는 중간과정의 과도적 통일체제라 할 수 있습니다.

남북연합은 최고결정기구로 ‘남북정상회의’를 두고, 쌍방 정부대표로 구성된 ‘남북각료회의’와 남북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남북평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북은 각료회의와 평의회 업무를 지원하고 합의사항 이행 등 실무를 위해 ‘공동사무처’를 두고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를 파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각료회의는 남북의 총리를 공동의장으로 하여 각각 10명 내외의 각료급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안에 인도, 정치·외교, 경제, 군사, 사회·문화 분야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평의회는 100명 내외로 쌍방을 대표하는 동수의 남북국회의원으로 구성하되, 통일헌법의 기초와 통일을 실현할 방법과 그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고, 남북각료회의의 자문에 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평의회’는 통일헌법의 기초과정에서 통일국가의 정치이념·국호·국가형태 등을 논의하고, 대내외 정책의 기본방향이나 정부형태는 물론 국회구성을 위한 총선거의 방법·시기·절차 등을 토의하여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은 각기 구상하는 통일헌법 초안을 ‘남북평의회’에 내놓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헌법안이 마련되면 민주적 방법과 절차를 거쳐 확정·공포하고 이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마침내 통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하여 통일의 대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특징²²⁾은 첫째, 자주·평화·민주의 통일 3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분단 현실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민족공동체 회복이라는 중간과정을 거쳐 최종통일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셋째, 남북간의 상호협력과 공존공영의 관계를 증진시켜 통일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과도적 통일체제인 ‘남북연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남북간의 모든 현안문제를 협의·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에서 민족동질성의 회복을 위한 교류협력의 추진과 병행하여, 정치·군사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간다는 점이다. 다섯째, 자유, 인권, 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 건설이라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22) 이홍구,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정책기조와 실천방향,”『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적 기초와 정책방향』, 국토통일원 편, 통일방안논문집 제1집, 1990, pp. 20~28

제2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추진배경과 의의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추진배경

1997년 현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은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이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또는 ‘공동체 통일방안’이라 한다)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이전의 역대 정부가 꾸준히 추구해 온 통일 정책의 구도와 궤를 같이 한 것인데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등 기존의 통일방안과 일관성을 유지한 가운데 통일의 철학, 통일의 원칙, 통일의 미래상 등을 보완하여 종합적으로 체계화한 방안이다. 1994년 8월 15일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제시되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나간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동구사회주의권의 몰락, 한·러 및 한·중 수교, 극심한 식량난을 비롯한 북한의 체제위기 심화 등 통일환경이 급격히 변화되었다는 상황 인식과 이미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실험은 실패로 끝났으며 남북사이의 체제 경쟁도 사실상 종결되었다는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제기된 것이다.²³⁾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정책의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고 있다.²⁴⁾

첫째, 통일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통일의 기본철학, 통일의 원칙,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밝혔다.

둘째, 통일은 7천만 민족이 다 함께 잘 살기 위한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민족공동체의 건설을 통해 국가 통일을 실현 해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셋째, 통일의 주체는 민족구성원 모두임을 강조하였다.

넷째, 결코 희망하는 바는 아니지만 북한내 급변사태 발생 등 예기치 않은 통일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다섯째,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의 포기와 개혁, 개방을 촉구하였다.²⁵⁾

여섯째, 민족분단의 종식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일곱째, 통일에 따르는 부담과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국민의 자세를 일깨우고 있다.

23)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사, 태평양경제협의회 (PBEC) 제26차총회에서 '태평양시대의 한국의 신외교'라는 기조연설 ('93. 5. 2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6기 출범식 개회사 ('93. 7. 6), 제49주년 광복절 경축사 ('94. 8. 15) 등 참조

24) 통일원, 『8·15 대통령 경축사 해설자료』, 1994

25) 북한은 1994년 8월 18일자 「로동신문」 논평을 통해 8·15 대통령 경축사에 대해 “비현실적이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을 ‘승공통일의 야망’으로 매도하였다.

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내용

(1) 통일의 기본철학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2대지주는 (i) 통일철학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ii) 통일의 접근시각으로서 민족공동체의 건설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우선 우리의 통일정책이 자유민주주의의 철학적 바탕위에서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자유민주주의'가 통일로 가는 과정이나 절차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국가에서도 일관되게 추구되어야 할 가치이어야 한다는 점을 확고히 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²⁶⁾

또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통일의 접근시각으로서, '민족공동체'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수의 인간들이 혈연이나 지연 등 상호간의 공통성을 기반으로 일정한 목표(경제적 생활 등)를 지향하여 결집된 집단을 사회학적 개념으로 공동체라고 부른다. 민족공동체는 오랫동안 민족사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민족의 동질성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인 것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된 '민족공동체'는 동일한 혈연을 가진 우리 한민족 구성원 전체의 운명적 결합과 공동생활 양태 및 권역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민족공동체란 민족을 하나로 묶고 있는 뿌리이며, 우리 민족이 재결합할 수밖에 없는 당위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다. '민족공동체' 통합개념은 남북이 같은 민족으로서 경제·사회·문화공동체를 회복·발전시켜 궁극적으로는 정치적 통합, 즉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민족공동체 정신은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민족통일을

26) 김영삼 대통령, 「제49주년 광복절 경축사」, 1994. 8. 15

통해 국가통일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민족공동체 개념은 통일을 특정집단 또는 계급의 문제로 보거나, ‘어떻게 권력을 배분하느냐’에 초점을 맞춘 북한의 연방제와 확연히 구별되는 접근방식이다.²⁷⁾

(2) 통일의 원칙²⁸⁾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평화·민주’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 민족의 힘으로 분단을 막지는 못 했지만 통일은 우리 민족의 뜻과 역량에 의해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통일은 전쟁이나 상대방을 전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통일에 이르는 길도 마땅히 ‘민주적’인 원칙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다.

① 자주의 원칙

‘자주’의 원칙은 통일은 우리 민족의 뜻에 따라, 우리 민족의 역량에 의해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문제를 주변 강대국의 보호나 간섭을 받지 않고, 민족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다.

북한은 ‘자주’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북한은 국가가 자기의 대내외정책을 외부의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수립하는 권리를 지니고 있는데, ‘자주권’이란 이러한 정치적 자주성의 구현이며, 민족자결권의 실현이라고 한다. 이러한 입장에 근거하여 북한은 주한미군의 철수, 남한의 외세의존정책 및 외세를 끌어들이는 세력의 배격 등을 주장하고 있다.

27) 통일원, 『8·15 대통령 경축사 해설자료』, 1994

28) 본 내용은 주로 민족통일연구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체계와 실천방향』, 1994, pp. 45~58을 참조하였다.

그러나 공산국가들마저 개방과 화해에 동참하고 있는 오늘날, 기존 우방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단절하여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하는 형태와 같은 ‘자주’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통일문제 해결에 있어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다른 국가들과의 상호 협조와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통일조국의 이념과 체제가 ‘자유화·복지화·개방화’라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않으면 통일은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② 평화의 원칙

‘평화’의 원칙은 통일이 전쟁이나 상대방에 대한 전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오직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아무리 통일이 민족의 지상과제라 하더라도 무력이나 폭력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6·25 동족상잔의 비극이나, 베트남, 예멘사례의 교훈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③ 민주의 원칙

‘민주’의 원칙이란 통일은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민주적 통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통일에 이르는 과정과 절차가 민주원칙에 입각하여야 함은 물론 통일된 조국 또한 민주국가여야 함을 의미한다.

한편 북한은 통일의 3대 원칙으로 초기에는 자주·평화·민주를 내세우다가 1972년 이후에는 남북이 합의한 ‘7·4남북공동성명’을 원용하여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

되는 민족대단결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민주’의 원칙에 수용하였다.

(3) 통일과정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아래에서 반목과 불신을 쌓아온 남과 북이 하루아침에 통일을 이룰 수는 없기 때문에 통일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 화해·협력단계와 남북연합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를 완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① 화해·협력단계

‘화해·협력단계’는 남북간의 적대와 불신을 줄이기 위해 상호 협력의 장(場)을 열어가는 단계이며, 이 단계에서 남북한은 분야별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이 단계는 ‘남북기본합의서’를 규범으로 하여 남북한이 각기 혼존하는 두 체제와 두 정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분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남북한이 적대와 불신관계를 청산하고 신뢰 속에서 쌍방간의 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한이 합의한 대로 한반도에 두 개의 정치적 실체가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을 타도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오히려 공존공영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남북한이 공존공영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서로 화해하고, 군사적으로 서로 침략하지 않으며, 경제·사회적으로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남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제1조),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제4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하며(제9조),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 추진하기로 하였으며(제12조), 민족 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제15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기본합의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예멘이 정치적 통일을 이루고도 내전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화해와 협력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외형만의 통일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② 남북연합단계

‘남북연합단계’는 화해·협력단계에서 구축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고 제도화’ 되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남북간의 냉전구조와 대결의식은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 남북한은 상호 신뢰를 더욱 다지면서 평화정착과 민족의 동질화를 촉진시켜 나가게 될 것이다. 결국 이 단계는 남북한이 서로 다른 체제와 정부하에서 통일지향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통합 과정을 관리해 나가는 단계이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남북간의 제도화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며 공존공영의 열매를 거두고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여 민족 공동생활권을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을 밟아감으로써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단계는 정치적 통일을 위한 예비단계로서 남북이 공동으로 구성하는 기구에서 정치적 통일, 즉 국가통일을 위한 여러 방법을 논의하게 되며, 남북연합에 어떤 기구를 두어 어떤 일을 할 것인

가 하는 점을 남북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남북정상회의와 남북각료회의를 상설화하여 남북간에 이질적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는 한편, 남북의 의회 대표가 모여 통일헌법안 등 통일을 위한 법절차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③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 완성단계

이 단계는 남북연합단계에서 제정한 통일헌법에 따라 남북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하여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민족통일과 정치적 통일을 동시에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통일된 국가는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정치적·경제적 자유가 보장되고 복지와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국가’이다.

그러나 통일국가의 수립이 모든 문제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하였다고 하더라도 오랜 분단 상태의 지속으로 인한 이질성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날 수 있다. 정치적·경제적으로 외형적인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사회·문화적인 공동체로서의 실질적인 통합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통일정부는 민족구성원 모두 하나의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합리성

① 통일조국의 당위적 미래상 제시

우리 민족의 통일은 궁극적으로 남쪽의 자유민주주의와 북쪽의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 가운데 민족의 영원한 발전과 번영을 보장

할 수 있는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될 체제선택의 문제로 귀착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치열한 체제경쟁을 벌인 20세기 인류문명사와 반세기를 넘긴 분단민족사의 경험적 교훈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 남북이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통일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궁극적으로 이같은 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② 민족공동체 건설의 지향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이질화로 파괴된 민족공동체를 복원하여 남북간의 대립과 갈등을 본원적으로 해결하여 완전한 민족통합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내면적인 민족 통합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통일의 정당성과 명분을 잃게 될 것이다.

③ 평화적 통일의 지향

통일이 아무리 소중해도 막대한 민족적 희생을 동반한다면 그 통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폭력이나 무력에 의한 통일을 배제시키고 있다.

④ 남북한 체제공존 추구

궁극적인 통일로 가는 중간과정으로서 남북간 체제공존관계의 정착을 당면 정책으로 설정하고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설정하고 있는 ‘남북연합’이 바로 남북한 체제공존관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려는 것이다.

⑤ 흡수통일 배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북한을 흡수통일하려는 것이 아니다. 화해협력과 남북연합단계를 거침으로써 남북한간에 교류·협력관계를 활성화시켜 가치에 대한 인식의 공유 등 민족공동체를 이룬 바탕 위에서 남북의 대표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한 기구에서 통일헌법을 제정한 다음 그 헌법하에서 공정하게 실시된 전 한반도에서의 총선거를 통하여 통일국가를 이루는 것이 곧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지향하는 목표이다. 따라서 북한측이 우려한 ‘먹고 먹히우는’ 흡수통일방식과 상관이 없다고 하겠다.

⑥ 점진적 통일의 실현

남북한이 사상, 체제, 정책면에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일거에 통합할 것을 내세우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통일은 점진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화해 협력단계와 남북연합단계를 거치면서 경제와 사회문화적인 영역에서부터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민족공동체를 형성한 후에 완전한 통일로 가려는 것이다.

⑦ 남북한 당국이 통일정책 추진의 주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의 주체는 당연히 민족구성원 모두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고, 통일문제를 풀어가는 정책추진의 주체는 남북한 당국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것이 합리적이며 현실적이고 민족자결의 원칙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남북한당국을 통일정책 추진의 주체로 설정하였다고 하여 주변국의 협력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 미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국가와 한반도 통일에 관하여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과 북의 이질화된 민족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회복·발전시켜 나가는 가운데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노력을 통해 1민족 1국가의 통일조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데 그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다.

1998년 새로 출범하게 될 정부는 대선공약('97. 12)을 통해 “남북기본합의서 실천을 통한 화해와 협력으로 점진적인 평화통일을 실현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고, 또한 대통령 당선자는 기자회견 ('97. 12. 19)에서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 남북한간의 교류·협력, 점진적인 통일실현”의 원칙을 재확인한 가운데 남북한 직접대화 추진방침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볼 때 신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방향은 그 동안 추진해왔던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확고히 하고, 실현가능한 분야의 교류 협력을 통한 북한의 안정적 변화유도”라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기조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3절 북한의 통일방안

1. 북한의 대남전략 기초

남북한은 통일문제에 대한 기본인식의 접근을 위해 7·4 남북공동성명('72)에서 통일 3원칙에 합의한 바 있고,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이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남북 화해와 협력의 기초로서 ‘서로 상대방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합의하였다.²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하나의 조선’이라는 통일관에 입각, 통일문제를 오직 ‘해방’과 ‘혁명’의 논리에서만 접근하여 왔다. 이들은 북한을 ‘전조선혁명’을 위한 혁명기지이고, 남한은 미제국주의자들의 강점하에 있는 미해방지구로서 혁명투쟁의 현장으로 인식하고 있다.³⁰⁾ 이처럼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남한은 ‘해방’과 ‘혁명’의 대상일 뿐이다.

이러한 주장의 논리적 근거로 1945년 8월 북한은 소련군에 의해 해방이 되었으나, 남한은 아직 일제를 계승한 미제국주의자들이 강

29) 남북기본합의서 제1조 참조

30) 1965년 4월 14일, 인도네시아 알리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한 김일성의 강의. 김일성,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965, p. 36, p. 46

접하고 있기 때문에 해방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게는 남한을 해방시키는 것이 조국통일인 바, 이와 같이 ‘남조선해
방’의 논리로 왜곡된 대남인식에서 통일문제에 접근하게 됨에 따라
남북한은 갈등적 대치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북한이 보는 통일은 처음부터 ‘하나의 조선’이라는 논리에 입각,
북+남=1+1이 아니라 1+0이라는 시각에서 보는 통일인 것이다.
남북한이 다 같이 조국통일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이와 같이 북
한이 말하는 조국통일과 우리가 말하는 조국통일은 그 시각과 개념
에 있어서 전혀 다르다는 것을 유념하지 않으면 안된다.

북한 스스로 주장하고 있듯이 그들이 말하는 조국통일은 남조선
혁명을 전제로 하는 통일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치하의
통일이다.³¹⁾ 북한이 말하는 통일은 남조선혁명을 통한 한반도 전체
의 사회주의화, 주체사상화, 공산주의화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그
들의 통일방식과 통일목표가 북한 체제의 최고규범인 노동당규약
전문에 다음과 같이 명문화되어 있다.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
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
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

여기서 말하는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혁명’은 곧 남조선혁
명을 일컫는 바, 민족해방은 주한미군을 철수케 하여 남한을 ‘미제
국주의’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인민민주주의혁명은 남
한의 자유민주정권을 봉건적 반동적 정권이라고 규정, 이를 타도하
고 그들이 주장하는 ‘민주정권’(용공 또는 연북정권)을 수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³²⁾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남조선혁명’의 기본성격을

31) 조선로동당,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당의 방침』, 조국통일사, 1969, p. 36

32) 통일원, 『95북한개요』, pp. 507~508 참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³³⁾

“남조선 혁명은 아직도 외래 제국주의의 예속 밑에 있는 우리나라 땅토의 절반과 인구의 2/3를 해방하기 위한 혁명으로서 전조선 혁명의 중요한 구성 부분을 이루고 있다. 우리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승리를 위하여는 북반부의 사회주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강화하여야 하며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치는 것과 함께 남조선에서 혁명을 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미제 식민지 통치를 없애지 않고는 남조선 인민들의 자유와 해방도 남조선 사회의 진보도 있을 수 없으며 우리 조국의 통일도 이룩될 수 없다. 이리하여 남조선 혁명은 외래 제국주의의 침략세력을 반대하는 민족해방혁명이며, 봉건세력을 반대하는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다.”

“남조선에서 미제가 쫓겨나고 혁명이 승리하기만 하면 우리 조국의 통일은 물론 평화적으로 실현될 것이다. 우리 당의 임무는 모든 힘을 다하여 남조선에서 혁명력량을 빨리 장성시키며 남조선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돋는 일이다.”

북한은 이와 같은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한 입장을 노동당 규약 전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통치를 청산하며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의 재침기도를 좌절시키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남조선 인민들의 사회민주화와 생존권 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조국을 자주적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을 이룩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

33) 김일성, 인도네시아 일리아르罕 사회과학원 강의('65. 4. 14)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 중앙 위원회 사업총화보고” ('70. 11. 1) ;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 리론』, 사회과학 출판사, 1975 참조, 『정치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73, pp. 117~118

이와 같이 북한이 ‘남조선혁명’의 성격을 교조주의적, 혁명주의적, 계급주의적 시각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 그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의 평화통일이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시각이 진정한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 전체의 주체사상화, 공산주의화라는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북조선혁명역량의 강화, 남조선혁명역량의 강화, 국제혁명역량과의 단결 강화’라는 3대 혁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엄청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왔다.

3대 혁명역량의 강화는 1964년 2월 27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조국통일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자’라는 결정을 통해 제시되었고, 1965년 4월 14일 인도네시아 알리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행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라는 김일성의 연설에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³⁴⁾

“우리 조국의 통일, 즉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는 결국 3대 혁명력량의 준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로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잘하여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것이며, 둘째로 남조선 인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튼튼히 묶어 세움으로써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는 것이며, 셋째로 조선인민과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다.”

3대 혁명역량강화 노선이 수립된 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남조선혁명) 전략의 기조는 주한미군 철수와 남한정권의 전복이라는 목표하에 3대 혁명역량강화 노선에 입각한 친북세력 강화, 정치, 조직, 사상 등 주요부문별 대남 포위공세의 전개와 더불어 혁명정서

34) 『조선중앙연감(1966~1967)』, pp. 19~35 ; 국토통일원, 『남북한 통일제의 자료총람』, 제1권, 1985, pp. 842~853

가 성숙되는 결정적 시기를 조성하여 남한내 민중봉기나 북한의 지원을 받아 전쟁을 하는 방법으로 ‘남조선혁명’을 완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³⁵⁾

특히 김일성은 1970년 11월 2일 노동당 제5차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합법 및 반(半)합법적 투쟁과 비(非)합법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큰 규모의 투쟁과 작은 규모의 투쟁 등 여러 가지 형태의 투쟁방법을 옳게 결합하여 혁명운동을 적극 밀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³⁶⁾

2. 북한 통일방안의 변천과정

북한의 통일방안은 ‘남조선혁명’을 목표로 하는 대남전략을 기조로 하여 시대적 조건과 환경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 왔다.

북한의 통일방안의 변천과정을 시대순으로 간추려 보면 북한의 초기 통일방안은 ‘하나의 조선’ 논리에 입각, ‘민주기지론’에 의한 무력적화통일이었다. 그것이 대남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가운데 실천으로 옮겨진 것이 6·25 남침이었다.

‘민주기지론’은 1960년 4·19혁명 이후 ‘남조선혁명론’으로 발전되었고, 이때 북한은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연방제를 처음으로 제기하였다(‘60. 8. 14). ‘남조선혁명론’과 연방제 통일방안은 1973년의 고려연방제를 거쳐 1980년 완전한 통일형태로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으로 발전되었으며, 1990년대의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로 전환되었다.

35)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 리론』, 사회과학출판사, 1975, pp. 246~270

36) 『조선중앙연감('71)』, p. 32 ; 국토통일원, 『남북한 통일제의 자료총람』, 제1권, p. 1042

(1) 정권수립에서 1950년대까지의 통일방안

광복 후 6·25전쟁까지 북한의 통일방안은 ‘민주기지론’에 입각한 무력통일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은 이미 1945년 12월 17일 “북조선을 통일된 민주국가를 위한 강력한 민주기지로 전변시킬 것”을 선언했다. 여기서 ‘민주기지’란 전한반도를 볼셰비키화하기 위한 공산주의의 기지를 의미한다.³⁷⁾ ‘민주기지’란 원래 스탈린의 통치방식에서 유래한 것으로 어떤 지역을 확보한 후 그 지역을 사회주의적 방식에 의해 정치, 경제, 군사적 역량을 강화시킨 후 세계혁명을 위한 수출기지로 삼는 것을 말한다.³⁸⁾ 북한은 ‘민주기지론’에 따라 ‘반제국주의적 반봉건적 민주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북한내의 정치 경제적 체제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민주개혁’을 토대로 1948년 9월 9일 북한공산정권이 수립되었다. 내각수상으로 선임된 김일성은 다음날 발표한 정부정강(政府政綱) 첫 번째 항에서 통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³⁹⁾

“전조선 인민들을 정부주위에 튼튼히 단결시켜 가지고 통일된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급속히 건설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이며 국토의 완성과 민족의 통일을 보장하는 가장 절박한 조건으로 되는 양군 동시철거에 대한 소련정부의 제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이다.”

북한은 이런 목적을 위해 1948년 12월 북한주둔 소련군을 먼저 철수시켰고, 주한미군을 1949년 6월에 철수하도록 유도한 다음 ‘민주기지’의 건설을 배경으로 대남평화공세 속에서 1950년 6·25남침을 감행했다. 이때부터 남북한은 같은 민족이면서도 극단의

37) 양호민, “전체주의 1인 독재체제의 확립,” 이상우 외, 『북한 40년』, 을유문화사, 1988, p. 88

38) 양호민 외, 『남과 북 어떻게 하나가 되나』, 나남, 1992, p. 40

39) 『조선중앙연감('59)』, p. 45 ; 국토통일원, 『남북한 통일제의 자료 총집』, 제1권, pp. 178~179

군사적 대치구조를 갖게 되었고, 정전(停戰) 이후 ‘민주기지’의 건설이라는 북한의 기본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다. 김일성은 1955년 4월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라는 테제를 통하여 ‘민주기지’ 건설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⁴⁰⁾

“우리 혁명의 원천지인 북반부의 민주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하여 민주기치를 비단 제국주의와 그 주구들의 침략을 반대하며 공화국 북반부를 보위할 강력한 력량으로 되게 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통일독립을 쟁취할 결정적 력량으로 전변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북반부에서 혁명을 더욱 진전시켜 사회주의 기초건설을 위한 과업들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휴전 이후 북한은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남북한 총선거의 준비를 위한 ‘전조선위원회’의 구성, 6개월 이내 일체의 외국군 무력 철수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평화통일론은 1950년대에 일관되게 주장되어 왔다. 그 내용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외국군 철수 및 감군, 남북대표자회의와 국제회의 개최, 경제 문화교류 및 통행 서신 교환, 남북 자유선거 실시 등으로 요약 정리할 수 있다. 북한이 이러한 평화통일론을 주장하게 된 것은 전후 복구를 위해 일정 기간 평화유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2) 1960년대의 남북연방제

북한은 1960년대에 들어와 ‘민주기지론’을 견지하면서 평화통일 제안과 ‘남조선혁명’이라는 이중전략을 구사해 왔다. ‘남조선혁명’의 실천수단으로 제기된 것이 남북연방제라 할 수 있다.

40) 김일성,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9, p. 138

일찌기 레닌은 「민족·식민지 문제에 대한 테제」에서 “강력한 공산국가와 비공산 민족국가가 과도적 형태의 연방제를 거쳐 프롤레타리아의 완전통일국가에로 도달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방제 아이디어를 최초로 북한에 제공한 사람은 4·19혁명 직후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기 위해 1960년 5월 초 북한을 비공식적으로 방문한 쿠즈네소프 소련 외무성 부상(副相)이었다. 그는 김일성에게 남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산주의와 무력남침 공포증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당국간의 연방형성제안을 권유하였다. 이에 대해 김일성은 동년 5월 20일 노동당 정치위원회에서 “연방제로 남조선을 끌어 안아 소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연방제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그 후 약 3개월 연구·토론 기간을 거쳐 김일성은 1960년 8월 14일 8·15 해방 15주년 기념연설에서 처음으로 연방제를 제의하였다.⁴¹⁾

김일성은 이 연설에서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이 민주주의적 기초 위에서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평화적 조국통일의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편”이라고 하면서 “만일 그래도 남조선 당국이… 아직은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과도적인 대책으로서 남북 조선의 련방제를 제의한다”고 했다.

그 내용은 “당분간 남북 조선의 현재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두 정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로 남북조선의 경제 문화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자”는 것이었다.⁴²⁾

1961년 9월 11일~9월 18일 개최된 북한 노동당 제4차 대회에서 김일성은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4·19혁명을 논하면서 “남조선

41) 신평길, 『김정일과 대남공작』, 북한연구소, 1996, pp. 306~310

42) 「로동신문」, 1960. 8. 15 ; 국토통일원, 『남북한 통일제의 자료총람 제1권』, 1985. 12, p. 444

인민들의 반미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이루어졌으나, 혁명정당이 없었고 투쟁강령이 없었기 때문에… 남조선 인민들이 흘린 피를 미제의 다른 앞잡이들의 손에 빼앗겼다”고 평가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의 가치 밑에 남조선의 모든 애국적 민주주의적 각 계층들을 뮤어 세워야 하며, 남조선의 애국적 민주주의 역량과 북조선의 애국적 사회주의 역량과의 단결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⁴³⁾

(3) 8개항의 대남제의와 조국통일 5대강령

북한의 ‘남조선혁명론’은 1970년 11월 노동당 제5차 대회에서 재확인되었으며,⁴⁴⁾ 남북연방제는 1971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4기 5차회의에서 ‘현정세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촉진시킬 데 대하여’라는 북한 외상 허담의 보고에서 8개항의 대남제의를 통해 다시 제시되었다.⁴⁵⁾ 허담의 8개항 대남제의는 북한의 통일정책의 주요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그 내용의 요지는 (i) 미군철수, (ii) 10만 이하로의 감군, (iii) 한미방위조약 등 민족의 이익에 배치되는 조약의 폐기, (iv) 남북총선거, (v) 각 정당 사회단체의 활동 보장, (vi)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연방제의 실시, (vii) 광범위한 교류의 실시, (viii) 이상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정치협상회의 개최 등이었다.

그 후 김일성은 우리의 6·23선언의 발표가 있은 당일인 1973년 6월 23일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총서기 구스타프 후사크 환영 대회의 연설을 통해 ‘조국통일 5대 강령’ 이란 것을 내놓았다.⁴⁶⁾ 이것은 허담의 8개항을 단순화한 것인데 그 요지는 (i) 남북간의 군

43) 김일성의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중,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로동신문」, 1961. 9. 21 ; 국토통일원, 앞의 책, 제1권, pp. 626~642

44)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 결정서(「로동신문」, 1970. 11. 13) ; 국토통일원, 앞의 책, 제1권, pp. 1047~1052

45) 「로동신문」, 1971. 4. 13 ; 국토통일원, 앞의 책, 제1권, pp. 1074~1077

46) 「로동신문」, 1973. 6. 24 ; 국토통일원, 앞의 책, 제1권, pp. 1356~1360

사적 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ii) 남북간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iii) 남북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 소집, (iv) 고려연방공화국을 국호로 하는 남북연방제의 실시, (v) 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 단일국호에 의한 유엔가입 등이었다.

(4) 고려민주 연방공화국 창립방안

북한은 1980년 10월 10일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김일성의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기존의 통일방안과 제안들을 다시 정리한 ‘고려민주 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제시하였다.⁴⁷⁾ 그 내용은 (i)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 (ii) 연방제의 구성원칙과 운영원칙, (iii) 10대 시정방침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을 보면 첫째, 남한에서의 ‘군사파쇼통치’의 청산과 민주화 실현이라는 명분으로 (i) 반공법, 국가보안법 등 파쇼악법의 폐지 및 폭압통치기구의 제거, (ii) 모든 정당사회단체들의 합법화 및 모든 정당 사회단체 개별인사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 (iii) 민주인사 애국인사들의 석방, (iv) 군사파쇼정권의 민주정권으로의 교체 등을 제시했다. 둘째, 긴장상태의 완화 및 전쟁위험의 제거라는 명분으로 (v)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미국과의 협상, (vi) 주한미군의 조속한 철수, (vii) 조선의 내정에 대한 미국의 불간섭 및 ‘두 개 조선’ 조작 책동의 추구 중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연방의 구성과 임무, 운영원칙을 보면 다음과 같다.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통일하는 가장

47) 「로동신문」, 1980. 10. 11; 『조선중앙년감 ('81)』, pp. 52~61; 국토통일원, 앞의 책, 제2권, pp. 678~689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도는 북과 남에 있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두고 북과 남이 련합하여 하나의 련방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인정한다. …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내오고 그 밑에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체를 실시하는 련방공화국을 창립하여 조국을 통일할 것을 주장한다.”

“련방 형식의 통일국가에서는 북과 남의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들로 ‘최고민족련방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에서 ‘련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여 북과 남의 지역정부들을 지도하며, 련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 최고민족련방회의와 그 상임기구인 련방상설위원회는 련방국가의 통일정부로서… 정치문제와 조국방위문제, 대외관계문제를 비롯하여 나라와 민족의 전반적 리익과 관계되는 공동의 문제를 토의 결정하며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분야에서 북과 남 사이의 단결과 협작을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연방의 운영원칙으로서 “련방국가의 통일정부인 최고민족련방회의와 련방상설위원회의 공동의장과 공동위원장은 북남이 른 번제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였다.⁴⁸⁾

연방국가의 국호는 ‘고려민주 연방공화국’으로 하고, 대외정책 노선은 “어떠한 정치군사적 동맹이나 뿐력에도 가담하지 않는 중립 국가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분야에서 남북의 단결과 협작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연방제가 실현되었을 때 시행할 정책으로서 10대 시정방침을 내놓았다.

- (i) 국가 활동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자주성의 견지와 자주정책의 실시
- (ii) 전 지역, 전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의 민주주의 실시와 민족의 대단결 도모

48)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3돐 경축연회 연설”, 「로동신문」, 1983. 9. 10.

- (iii) 남북간의 경제적 협작과 교류의 실시로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의 보장
- (iv) 남북간의 과학, 문화, 교육분야에 있어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며, 과학 기술과 민족문화예술, 민족교육의 발전
- (v) 남북간의 교통 체신을 연결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자유로운 교통 체신 수단의 자유로운 이용 보장
- (vi) 노동자, 농민을 비롯하여 전체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복지를 집중적으로 증진
- (vii)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민족연합군을 조직하며 외래침략으로부터 민족을 보위
- (viii) 해외동포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 보호
- (ix) 통일 이전 대외관계의 올바른 처리와 두 지역 정부의 대외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절
- (x) 통일국가로서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애호적인 대외 정책실시

고려민주연방제의 특징은 첫째, ‘고려’ 에다 ‘민주’ 를 첨가하여 선전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 ‘과도적 대책’ 또는 ‘당분간’ 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음으로써 외형상 완성된 형태의 연방국가라는 점이며, 셋째, 한국에 대해 무장해제에 가까운 선결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며, 넷째, 민족, 자주 등의 개념을 이용하는 용어 혼란전술을 포함하여 심리전적인 10대 시정방침을 제시한 점이다.

고려민주연방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이른바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 으로서 ‘남조선혁명론’ 의 발상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남북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연방제를 하자고 했는데 두 제도에 의한 연방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셋째, 우리말로는 ‘연방(Federation)’ 이라고 하면서 영어로는 ‘Confederation(국가연

합)'이라고 표현하는 등 결합형태의 모호성이다. 넷째, 국호, 국가 형태, 대외정책의 노선 등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째, 통일 이전에 남북간에 실시해야 할 사항들을 연방제가 형성 되었을 때의 시정방침으로 제시함으로써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의 실시를 기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섯째, 연방헌법 등 연방의 형성에 따르는 구체적 절차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5)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북한의 연방제는 약간의 전술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991년 김일성은 신년사를 통해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를 제기했다.⁴⁹⁾

“남북에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조국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는 원칙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제도에 의한 제도통일론은 분열을 끊임없이 지속시켜 결국 통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통일은 후대에게 맡기자.”

북한이 전례없이 제도통일을 흡수통일로 보고 제도통일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제도통일의 후대론, 지역자치정부의 권한강화론(외교권, 군사권, 내치권)을 들고나온 것은 독일의 흡수통일방식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의 통일방안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에 기초한 ‘고려민주 연방공화국’을 창설하여 통일을 이루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를 상술하면, 첫째, 통일국가의 형태는 남북 두 지역정부가 동등하게 참가하는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49) 김일성의 1991년 신년사, 「로동신문」, 1991. 1. 1.

의 연방국가이며, 제도통일은 후대에 일임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통일국가의 성격은 자주 평화 비동맹의 독립국가로 규정해 놓았다.

둘째, 통일과정과 관련하여 북한은 연방제 실현의 선결조건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고려민주 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표명하면서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선결조건’을 제시하였으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이란 것을 채택하면서도⁵⁰⁾ 남한에 대해 (i) 외세의존 정책의 포기, (ii) 미군철수 의지 표명, (iii) 외국군대와의 합동군사연습의 영구 중지, (iv) 미국의 핵우산 탈피 등 4가지 사항을 요구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통일원칙과 관련하여 북한은 7·4 공동성명의 통일 3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북한은 자주원칙을 외세배격 입장으로, 평화원칙을 한반도의 전쟁위험 제거로, 민족대단결을 각계각층 인민들의 자유첩총 왕래 및 이를 위한 사상적 제도적 장벽 제거로 해석하고 있다.

넷째, 통일이념에 있어서 북한은 주체사상과 공산주의를 내세우고 있으며, 통일의 주체는 ‘인민’임을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북한의 고려연방제안은 과도기구, 통일국가 수립절차 등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통일과정을 무시함으로써 통일에 이르는 과도기구는 제시하지 않고, 다만 통일국가의 기구로서 최고민족연방회의, 연방상설위원회를 내세우며, ‘민족통일 정치협상회의 개최→

5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회의(‘93년 4월 7일~4월 9일)에서 김일성의 연설을 통해 제시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전 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 평화적,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 (ii) 민족애와 민족자주 정신에 기초하여 단결, (iii)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 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 (iv) 동족 사이에 분열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의 정치적 논쟁을 중지하고 단결, (v)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에 대한 우려를 다같이 없애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 (vi)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감, (vii)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정신적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며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데 이용하게 이용하는 것을 장려, (viii) 접촉, 왕래, 대화를 통하여 전민족이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여 단합, (ix)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이 서로 연대성을 강화, (x)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 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

통일방안 협의 결정→고려민주 연방공화국 선포' 등의 통일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3. 북한의 통일방안과 그 의미

북한은 지금까지 통일명분을 내세워 체제유지 및 일당독재를 합리화하고 남한과의 적대적 관계를 적절히 이용하여 왔으며 형식은 고려연방제를 표방하면서 내용은 남조선 혁명을 기조로 한 통일방안과 대남전략을 교묘히 짜맞추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급격한 변혁, 비동맹국가들의 탈이념 실용주의화, 가중되는 북한의 경제난 등으로 인하여 북한은 통일정책의 추진방향을 현실적으로는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이면적으로 여전히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는 '하나의 조선' 논리를 고수하면서도 체제생존을 위해 표면적으로는 '남북공존'을 수용하면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91. 9. 17),⁵¹⁾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서명:'91. 12. 13, 발효:'92. 2. 19) 등에 응하였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다원적인 한국사회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민족대단결'을 명분으로 한 통일전선전술(統一戰線戰術)의 적극 추진, '지하당 구축' '남한사회 교란 및 갈등 조장' '주한 미군철수 분위기 유도' 등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통일전략은 기존의 통일전선전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한국정부의 약체화를 기도하면서 대미·일 직접협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보장 등의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전략의 변화양상과 양면성은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도 그대로 집약되어 반영되고 있다.

51) 북한의 유엔가입에 관해서는 이기택, 『한반도통일과 국제정치』, 삼영, 1991, pp. 314~324 참조

(1) 통일전선전술의 지속적 추진

북한은 김일성이 1990년 5월 24일 ‘조국통일 5개방침’⁵²⁾ 을 제시하면서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의 형성’을 강조한 이래, 1991년 1월 25일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북측본부를 결성하여 조국통일 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을 지원하는 한편, ‘범민족대회’의 추진 등을 통해 남한 정부와 재야운동권의 갈등을 유도하고,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 성사를 위한 조직체계를 마련하였다.

김일성은 1991년 8월 1일의 담화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를 통하여 “민족대단결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근본전제이며 또한 그 본질적 내용을 이룬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는 데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요한 것은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 것”⁵³⁾ 이라고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챕터을 “대결로선에 대한 민족대단결로선의 승리”라고 강조하면서 ‘범민련’ 결성('90. 11. 20, 베를린에서 남북 해외동포 대표로 중앙기구 결성), 통일축구 경기대회 개최 ('90. 10), 범민족통일음악회 개최 ('90. 10),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의 단일팀 구성 출전 ('91. 4~5) 및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단일팀 구성 출전 ('91. 6~9) 등을 민족대단결 노선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⁵⁴⁾

이러한 통일전선전술은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다(강령내용은 각주 50 참조).

첫째,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 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한다”는 제6항

52) 김일성이 제시한 조국통일 5개방침은 (i)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 완화와 통일을 위한 평화적 환경 마련, (ii) 분단장벽 철페와 자유왕래 전면개방 실현, (iii) 자주적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 마련 원칙에서 대외 관계 발전, (iv) 조국통일을 위한 대화 발전, (v)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적 통일전선 형성 등이다 (「로동신문」, 1990. 5. 25).

53) 「로동신문」, 1991. 8. 5

54) 「로동신문」, 1991. 12. 27

의 구체적 내용은 (i) 통일논의와 활동의 자유 보장, (ii) 정치적 반대파 탄압보복 박해 처벌 금지, (iii) 친남 친북 불시비, (iv) 모든 정치범 석방 복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남한으로 하여금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반공정책을 포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통일문제로 남한 내부의 국론분열을 야기시키려는 것이다.

둘째, “접촉 래왕 대화를 통하여 전민족이 서로 리해하고 신뢰하며 단합하여야 한다”는 제8항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i) 접촉 왕래의 장애물 제거 및 차별없는 왕래를 위한 문호개방, (ii) 각당 각파 각계각층에 동등한 대화의 기회 제공 및 쌍무적 다무적 대화의 발전 등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창구다원화를 통한 정부 약체화 및 정치 협상회의 소집 등을 주장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셋째,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이 서로 련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제9항의 구체적 내용은 (i) 남과 북, 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것은 편견없이 지지성원하고 해로운 것은 함께 배격하여야 하며, 각자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서로 보조를 같이 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는 것과, (ii) 남과 북, 해외의 모든 단체와 각계각층의 동포들이 조직적으로 제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종의 주적으로 설정된 한국정부를 포위하려는 계략으로 먼저 해외교포 및 친북단체의 활동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넷째,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는 제10항의 구체적 내용은 (i) 공을 세운 사람들, 애국열사 및 그 후대에게 특혜 제공, (ii) 과거에 민족을 배반한 사람들도 과오를 뉘우치고 애국의 길로 나서면 관용으로 대하고 공로에 따라 공정히 평가할 것 등이다. 이는 국내 재야 또는 운동권에게 반한친북 통일투쟁을 선동하는 한편 우익적 반북(反北) 인사를 회유하기 위한 것이다.

(2) 생존전략적 요소 가미

김일성은 1988년 신년사를 통해 통일문제를 해결하려면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중립적이며 빨리불가담적인 하나의 련방국가를 창설”⁵⁵⁾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1988년 9월 8일 정권수립 40주년 경축보고대회에서 행한 연설에서도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히우지 않고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거나 압도당하지 않는 공존의 원칙에서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두 자치정부를 련합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통일국가를 형성하여야 한다”⁵⁶⁾라고 하면서 공존의 원칙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러나 1989년 김일성 신년사에서는 “이제 남조선에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이 소수의 운동으로부터 다수의 운동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남조선에서의 통일운동이 새로운 발전단계로 진입함으로써 남조선 정세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라고 하며 통일투쟁의 성과를 거양코자 하였다.

1990년 10월 독일통일이 실현된 후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에서 “최근 다른 나라의 흡수통합방식에 혼혹된 남조선당국자들은 ‘북방정책’을 내걸고 청탁외교를 벌리면서 남의 힘을 빌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방식을 실현해 보려는 어리석은 꿈을 꾸고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북한은 이와 같이 독일식 통합방식 거론에 반발을 나타내면서 생존전략 차원에서 남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하였고 ('91. 9. 17),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92. 2. 19, 발효)에도 응하였다.

또한 1992년 7월 4일자 노동신문 사설에서는 “그들은 자주의 원칙을 저버리고 민족 내부문제인 통일문제를 외세의 힘을 빌어 남이 하는 방식으로 먹고 먹히우는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어리석게

55) 「로동신문」, 1988. 1. 1.

56) 김일성, “주체의 혁명적 가치를 높이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위업을 끝까지 완수하자,”『조선중앙연감 ('89)』, p. 29

기도하고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적 이행전략’에 편승하여 우리에 대한 개방유도로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체제에 기초한 ‘흡수통합’, ‘승공통일’을 이룩해 보려고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라고 언급하였다. 남한주도에 의한 흡수통일을 배제하면서 통일주도권을 장악하려는 북한의 의도는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에서도 엿볼 수 있다.

‘10대강령’의 제3항, 제4항, 제5항은 남북공존을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배제하려는 의도에서 표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첫째,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 제시된 제3항의 내용은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해야 한다”는 것인데, 구체적 내용은 (i) 남북의 사상, 이념, 제도의 인정·존중과 불간섭을 통한 진보와 번영 추구, (ii) 전민족적 이익 도모, (iii) 통일노력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 등이다.

둘째, “동족 사이에 분렬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의 정치논쟁을 중지하고 단결하여야 한다”는 제4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i) 대결 추구 및 조장 중지, (ii) 모든 형태의 정쟁 및 비방 중상 중지, (iii) 상호 적대정책 중지, (iv) 외세의 침략 간섭에 대한 공동 대처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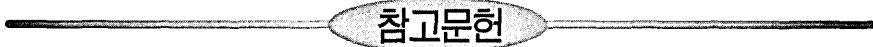
셋째,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의 위구(危懼)를 다같이 가시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하여야 한다”는 제5항의 구체적 내용은 (i) 상호 불위협불침략, (ii) 자기의 제도 불강요 및 상대방 흡수배제 등이다.

결국 북한은 주변4국이 모두 남한과 수교하고 있고, 남한의 총체적인 국력이 북한보다 우세하며,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이 가중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체제유지에 중점을 두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적화통일 추진에 최대의 역점을 둘 것으로

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통일전략은 '선 남조선혁명, 후 공산화통일' 노선으로 체계화하여 전개되어 왔고, 김일성의 사망('94. 7. 8)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주체사상(主體思想)이 북한체제 내에서 유지되는 한 사회주의체제에 의한 조국통일이라는 북한의 전략은 변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대남전략 차원에서 남한의 민족통합역량을 저해하는 한편 남한정부를 배제하려는 가운데 기존의 통일전선전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이중적인 적화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도 변화하는 국제환경의 새물결 속에서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혁 개방과 남북공존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변화를 인식하는 새로운 엘리트가 충원되거나 통치계층의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보다 빠르게 남북간의 본격적인 교류와 협력에 호응해 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남북기본합의서에 기초한 부속합의서가 분야별 남북공동위원회의 가동을 통해 실천단계에 들어가고, 공존·번영단계에 접어들게 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남북연합'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구영록 · 임용순 공편, 『한국의 통일정책』, 1993.
2.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북한정세 변화가능성 분석』, 1997.
3. 기사연 통일연구회, 『분단 50년 구조와 현실』, 민중사, 1994.
4. 김국신 외, 『분단극복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1)(2)』, 한울,
1994.
5. 연합통신, 『북한50년』, 1995.
6. 평화문제연구소 외, 『통일 · 북한 핸드북』, 1997.
7. 통계청, 『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1996.
8. 김학준, 『한국문제와 국제정치(I)』, 1992.
9. 민족통일연구원, 『민족공통체 통일방안의 이론체계와 실천방향』,
1994.
10. —————,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북한의 대남 정책』, 1993.
11. 신평길, 『김정일과 대남공작』, 북한연구소, 1996.
12. 유석렬, 『남북한 통일론』, 법문사, 1994.
13. 이봉철, 『한국의 통일정책』, 나남, 1993.
14. 정용석, 『분단국 통일과 남북문제』, 다나, 1992.
15. 최평길, 『미리 보는 코리아 2000』, 상원, 1993.
16. 통일원, 『남북기본합의서 해설』, 1992.
17. —————, 『남북한 통일 대화 제의 비교』, 1993.
18. —————, 『통일백서』, 1995.
19. 황성모 외, 『민족의 전통성과 통일』, 자유평론사, 1991.

V. 남북관계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 제1절 119
남북대화의 어제와 오늘
- 제2절 144
남북 사이의 교류와 협력
- 제3절 176
남북간의 주요 현안문제

이 장의 요점

-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은 남북간의 신뢰구축과 평화정착, 민족사회의 동질화를 촉진하는 소중한 기회와 수단으로서 큰 의의를 가지며 특히 교류협력은 남북의 상호보완적 발전과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도 앞으로 대폭 확대되어야 할 영역이다.
 - 남북대화는 1970년대 초의 적십자회담을 시작으로 경제·체육·국회 고위급 회담 등 비정치 회담에서 정치 회담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여러 차례 중단의 고비를 넘기면서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그 결과 '남북기본합의서' 및 '비핵화공동선언'을 채택하여 남북 공존을 위한 틀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남북간에는 화해·군사·경제·사회문화 공동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정부는 이미 남북 교류협력 관련법규를 제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남북한간에는 임가공(賃加工) 등 교역은 물론 경제협력사업도 꾸준히 늘어나는 상태이다.
-

제1절 남북대화의 어제와 오늘

1. 남북대화의 의의와 경과

(1) 남북대화의 의의

남북대화의 진정한 의의는 한마디로 남북한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남북 사이에 가로놓인 현안문제나 통일문제에 대해 서로 입장장을 밝히고 논의를 통해 하나의 합의를 도출해 내는 데 있다.

그 동안 남북한은 여러 형태의 남북회담을 개최하고 공식·비공식적인 접촉과 대화를 가져 왔지만, 대화에 임하는 입장과 서로 지향하는 목표 및 접근방식의 차이로 말미암아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남북대화의 궁극적인 목적을 남북한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호간 누적된 불신과 적대감을 청산하고 민족공동발전을 위해 상부상조하는 관계로 발전시켜 화해와 협력의 바탕 위에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두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대화의 궁극적인 목적을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실현하는 데 두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그 동안 회담의 성격이나 의제와 관계없이 모든 남북대화에서 ‘대남혁명 전략의 수행’ 차

원에서 정치·군사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제기하였고, 우리의 반공정책이나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오늘날 국제질서가 새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개방화'와 '민주화'를 지향하는 세계 모든 국가들과 같이 북한이 개방된 국제사회에 동참하기 위해서 남북간 관계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은 단절된 남북대화를 하루빨리 재개함으로써 민족공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북한은 민족의 생존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한·미 공동으로 제의한 '4자회담'에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나와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와 함께 긴장해소와 화해·협력을 바탕으로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2) 남북대화의 경과

분단 이후 50여 년의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남북한간에는 적지 않은 회담이 열렸었다. 그 동안 개최되었던 주요한 회담과 그 내용들을 분야별로 정리·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남북적십자회담

남북적십자회담은 5회의 파견원 접촉, 25회의 예비회담 전체회의, 16회의 비공개 실무회의를 거쳐 본 회담이 개최되었는데, 제20차 예비회담('72. 6. 16)에서 이산가족과 그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확인하는 문제 등 5개항의 본회담 의제에 합의하였다.

예비회담에서 합의한대로 1972년 8월 29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열린 제1차 회담을 시작으로 남북적십자 본 회담은 서울·평양에서 번갈아 가며 7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그러나 회담은 북한측의 정

치적 주장으로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하다가 1973년 8월 28일 이른바 김영주 성명을 통해 북한이 일방적인 대화중단을 선언하였다.

대화중단 상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경기 일원에 내린 폭우로 생긴 수해와 관련하여 북한은 1984년 9월 8일 우리측에 수재물자의 제공을 제의하였다. 이를 한적(韓赤) 총재가 대북성명을 통해 수락함으로써 9월 29일부터 10월 4일 사이에 수재물자의 인도·인수가 이루어졌다. 이 일을 계기로 10여년 만에 다시 적십자회담 재개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우리측은 수재물자 인도·인수작업의 종료와 함께 이같은 사업이 남북적십자간의 보다 폭넓은 교류와 협력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뜻에서 10월 4일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장 앞으로 남북적십자회담의 재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으며, 쌍방이 제20차 예비회담 ('72. 6. 16)에서 이미 합의한 5개항의 의제에 합의함으로써 제8차 본 회담이 1985년 5월 27일부터 5일 30일에 걸쳐 서울에서 열리게 되었다.

제8차 본 회담에서 우리측은 5개항 의제의 실천 방안이 모두 합의되자 이전이라도 8월 15일을 기해 시범사업으로 일정규모 이산 가족 고향방문단의 상호교환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100명 정도의 예술단이 상호방문하여 축하공연을 가질 것을 제의하였다. 8·15를 기해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을 교환하자 는 우리측의 수정제의가 받아 들여져, 이 문제와 관련한 별도의 실무접촉을 갖고 절차 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5월 29일부터 8월 22일까지 몇 차례 계속된 실무대표 접촉을 통해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마침내 9월 20일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의 동시 교환방문이 실현되었다. 이로써 분단 40년만에 처음으로 이산가족들의 가족·친척 상봉이라는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그 후 계속된 회담에서 쌍방간의 입장대립으로 본질적인 문제토의에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제11차 본회담을 1986년 2월 26일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이같은 합의도 북한이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남북대화 전면 중단 성명을 발표('86. 1. 20)함으로써 예정대로 개최되지 못했다. 우리측의 거듭된 회담 재개 촉구를 계속 외면해 오던 북한은 1989년 5월 31일 제2차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을 제의하였고 우리측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9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7차례의 실무대표 접촉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쌍방간의 입장 차이로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며, 남북고위급 회담 개최를 계기로 이루어진 제8차 실무접촉('90. 11. 8)에서도 이산가족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혁명가극공연을 고집함으로써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다. 1992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7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도 남북한은 또다시 8·15를 계기로 노부모 100명, 예술인 70명, 기자·지원인원 70명으로 구성된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의 서울·평양 동시교환'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적십자 실무대표간 1차접촉('92. 6. 5)을 가진 이래 총 8차례의 대표접촉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제1차 접촉 때부터 핵문제에 대한 입장 전환, 이인모 송환문제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웠으며, 제6차 접촉('92. 7. 20)부터 포커스렌즈 훈련중지를 전제조건으로 추가하였다. 결국 적십자 실무대표 접촉은 결렬되고 노부모 방문단 교환은 무산되고 말았다.

2) 남북조절위원회 회담

1972년 5월 2일부터 3박 4일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과 회담을 가진 데 이어, 북한은 부수상 박성철을

당 조직지도부장을 대신하여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에 파견하여 박정희 대통령과 극비리에 회담을 가졌다. 그 결과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남북조절위원회가 발족되었다. 남북조절위원회 회담은 세 번의 공동위원회 회의, 세 번의 남북조절위원회 본회의와 함께 세 번의 간사회의가 개최되었다. 세 차례에 걸친 공동위원장 회의는 제1차 회의가 1972년 10월 12일 판문점에서 개최되어 통일 3원칙에 대한 해석과 실천방법에 관해 토의하였으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제2차 회의는 1972년 11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 평양에서 열려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 교환하였고, 상호 비방방송 및 전단살포 중지 등에 합의하여 이를 1972년 11월 11일 0시를 기해 발효시켰다. 제3차 회의는 1972년 11월 30일 서울에서 개최되어 쌍방 남북조절위원회의 구성·운영절차를 마무리짓고 공동위원장 회의를 종결하였다. 이어서 세 번에 걸친 남북조절위원회 본 회의가 진행된 바 있으나, 쌍방은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공동발표도 없이 회의가 끝났다.

1973년 6월 12일~13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는 북한측은 '군사 5개항목' 제안의 우선 토의, 남북조절위원회와 별도로 남북정당·사회단체 연설회의 개최, 남북조절위원회의 5개분과위원회의 일괄 동시설치 등을 주장했다. 남북조절위원회회담 역시 8월 28일 북한측의 일방적인 대화중단 선언으로 별 성과없이 중단되었다. 남북조절위원회회담은 처음부터 정치적 목적을 지닌 정치회담이었기 때문에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그 후 우리측의 대화재개 노력은 계속되어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회의가 1973년 12월 5일부터 판문점에서 10회에 걸쳐 개최되었으나, 북한측이 남북조절위원회에 정당·사회단체대표의 추가 참가문제, 남북조절위원회 회의와 별도로 남북정치협상회의의 개최, 주한미군 철수, 반공정책포기, 6·23선언 취소, 구속자 석방 등 전제조건을

내세우다가 1975년 5월 29일 제11차 부위원장 회의의 무기연기를 통고하고 회담 자체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그 후 1979년 2월 17일부터 남북조절위원회 우리측 대표와 북한의 조국전선 대표간의 세 차례 접촉이 있었으나 아무런 성과없이 결렬되었다. 이 때의 회담형태는 대표의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변칙대화라고 부르기도 한다.

3) 남북체육회담

① 남북탁구회담

제35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의 개최지로 평양이 결정된 상황에서 대회 개최를 불과 2개월 여 앞두고 1979년 2월 20일 북한은 대한체육회 회장과 대한탁구협회 회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어 ‘남북한 단일팀’ 구성 참가에 관한 협의를 위해 1979년 2월 27일 남북탁구 협회 대표들이 판문점에서 만날 것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이 이를 수락했고 남북탁구협회간 회담이 4회에 걸쳐 개최되었으나 북한측이 끝까지 우리 선수단의 대회출전 기득권 보장에 대한 합의를 거부함으로써 진전없이 끝나고 말았다.

② 로잔느 체육회담

1981년 9월 바덴바덴에서 개최된 제84차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총회에서 서울이 제24회 올림픽대회 개최지로 결정되자 북한은 서울올림픽 개최를 방해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그러나 서울이 대회 개최지로 부적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 주재하의 남북체육회담 개최제의를 외면해 오던 북한은 1985년 7월

6일 태도를 바꾸어 회담 참가의사를 통보해 왔다. IOC는 7월 24일 IOC 주재하에 스위스 로잔느에서 남북체육회담이 개최될 것임을 공식 발표하고, 제1차 회담일자('85. 10. 8~9)를 남북한에 각기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열린 남북체육회담은 1987년 7월 15일까지 4차에 걸쳐 계속되었으나, 북한측이 IOC 중재안을 거부하고 서울 올림픽대회의 남북한 공동주최를 주장함으로써 구체적인 성과없이 회담은 결렬되었다.

③ L.A. 올림픽 대비 체육회담

북한은 1984년 3월 30일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제23회 L.A. 올림픽대회와 그 후의 아시아경기대회 및 세계선수권대회에 남북단일팀을 구성하여 출전”하는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제23회 L.A. 올림픽대회 참가 선수명단 제출 마감일이 2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남북한 간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 증대의 계기로 삼기 위해 이를 수락함으로써 남북체육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1984년 4월 9일 제1차 남북체육회담을 시작으로 3차회담까지 진행되었으나 본질적인 문제는 토의도 하지 못한 채 회담은 결렬되었다.

④ 북경아시안게임 대비 체육회담

북한은 1988년 12월 21일 제11회 북경아시안게임('90. 9)에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올림픽위원회 대표단간 회담을 제의하였다.

우리측의 수락으로 개최된 남북체육회담은 1989년 3월 9일부터 1990년 2월 7일까지 9차례의 본 회담과 6차례의 실무대표접촉을

통해 단일팀 구성에 관한 10개항 중 선수단장 문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항에 의견 일치를 보았으나, 전제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회담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회담 결렬을 선언하였다. 결국 북경아시안게임에 남과 북이 단일팀으로 참가하지 못하고 개별팀으로 참가하였으나, 대회기간 중 이루어진 남북공동응원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⑤ 통일축구대회 개최 및 국제경기대회 단일팀 참가 관련

체육회담

남북 쌍방의 체육부장관은 1990년 9월 23일 북경아시안게임 기간 중 북경에서 접촉을 갖고 남북통일축구대회 개최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한편, 바르셀로나 올림픽대회 등 주요 국제경기대회에 남북단일팀 구성·참가문제와 남북체육교류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체육회담을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결과 분단 45년만에 처음으로 남북한 체육인들이 서울과 평양을 교환방문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남북통일축구대회가 1990년 10월 9일부터 13일까지는 평양에서,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대회기간 중 쌍방 관계자는 남북체육회담 개최를 재확인하는 공동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체육회담이 재개되었다. 동회담은 1990년 11월부터 1991년 2월까지 4차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남북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4) 남북경제회담

정부는 수재물자의 인도·인수가 끝난 직후인 1984년 10월 12일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의 대북서한을 통해 “남북한간의 교역과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상설기구로서 쌍방당국과 경제계 대표들로 구성되는 남북한 경제협력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이상과 같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정부의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여 남북한 경제당국 및 민간경제 단체들이 참가하는 경제회담의 개최”를 제의하였고 이에 북한이 동의함으로써 경제회담이 개최되었다. 1984년 11월 15일 판문점에서 제1차 회담이 개최됨에 따라 남북 쌍방은 교역품목, 자연자원의 개발, 남북철도의 연결, 공동어로구역 설정 및 남북경제협력위원회 설치문제 등에서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보았다. 그러나 5차례의 회담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1986년 1월 20일 우리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삼아 제6차 남북경제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시킴으로써 아무런 합의문서나 물자교류의 실현을 보지 못한 채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 회담은 최초의 당국간 회담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5) 남북국회회담

①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

북한은 1985년 4월 9일 양형섭 최고인민회의의장 명의로 채문식 국회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남북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국회회담을 제의해 왔다. 이 제의에 대해 우리 국회는 6월 3일자로 통일헌법 제정을 위한 남북간의 협의기구 구성 문제와 통일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토의하기 위한 남북국회회

담 개최를 환영한다는 회신을 보냈다. 이에 따라 7월 23일 판문점에서 제1차 예비접촉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절차문제에 있어서는 쌍방의 제안 내용들이 비슷하여 대체적으로 합의를 보았으나 본회담 의제문제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보지 못했다. 두 차례의 예비 접촉이 진행되었으나, 의제와 수석대표의 급 문제 등에 대해 계속 의견을 보이다가 북한측이 1986년 1월 20일 팀스피리트 훈련을 이유로 모든 남북대화를 중단함으로써 더 이상 계속되지 못했다.

②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

1985년의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과 별개로 1988년 8월 19일부터 1990년 1월 24일까지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남북국회회담 준비접촉에서 쌍방은 회담형식, 의제 및 장소 등 남북국회회담을 위한 실무절차문제를 논의하였으며, 상당한 부분 합의에 도달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1988년 12월 29일 제7차 준비접촉 이후 팀스피리트 훈련 중단을 주장하면서 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시켜 왔으며, 1989년 10월 25일, 8개월만에 이루어진 제8차 준비접촉에서 회담과 관계없는 문제들을 거론하여 회담과 본 회담 준비를 위한 절차문제 토의를 회피하였다. 또한 북한측은 1990년 1월 24일 제10차 준비접촉에서도 실질문제 토의를 거부한 채 콘크리트장벽제거, 남북당국·정당수뇌급 협상회의 개최 등을 주장하는 한편, 팀스피리트 훈련의 중지를 긴급의제로 제기함으로써 회담은 공전되고 말았다. 쌍방은 제11차 준비접촉을 1990년 2월 22일에 갖기로 합의하였으나 북한측이 남북회담 북측 대표단 명의의 연합성명을 통해 팀스피리트 훈련기간 동안에는 모든 남북대화를 연기한다고 선언함으로써 회담이 중단되게 되었다. 그 후 북한측이 1990년 6월 20일 돌연 회담 재개를 제의해 옴으로써 1990년 7월 19일 제11차 준비

접촉을 갖기로 합의하였으나 이를 전인 7월 17일에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준비접촉을 무기 연기시킴으로써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다.

6) 남북고위급회담

① 남북총리회담 실무대표 접촉

1980년 1월 12일 이종옥 정무원 총리는 신현학 국무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남북총리회담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1월 24일 회담개최에 필요한 절차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실무대표접촉을 갖자고 제의하였으며, 북한측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열차례의 실무대표접촉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북한측은 제11차 실무대표접촉을 이를 앞둔 1980년 9월 24일 우리측 국무총리가 서리(署理)라는 자격을 문제삼아 실무대표접촉을 중단시켰다.

② 남북고위급회담 예비회담

1988년 12월 28일 강영훈 국무총리는 연형묵 북한 정무원 총리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남북한간의 상호신뢰 구축과 긴장완화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 해결하기 위한 남북총리회담 개최를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남북고위급 정치·군사회담 개최를 제의하면서 이를 위한 예비회담을 2월 8일에 열자고 제안했다.

우리측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1989년 2월 8일부터 1990년 7월 26일까지 판문점에서 8차례의 예비회담과 두 차례의 합의서 문안정리를 위한 실무접촉을 거쳐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남북고위급회담을 성사시켰다.

③ 남북고위급회담

남북고위급회담은 1990년 9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에서 제1차 회담이 개최된 이래, 1992년 9월까지 8차례의 회담이 개최되었다.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우리측은 상호체제 인정과 존중을 포함한 8개항의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기본 합의서와 함께 다각적인 교류실시방안 10개항과 정치·군사적 신뢰구축방안 8개항을 제안했다. 반면 북한은 유엔가입문제 등 3개항의 긴급문제 협의·해결과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를 주장하였다. 제2차('90. 10. 16 ~19, 평양) 및 제3차('90. 12. 11~14, 서울) 회담에서 우리측은 북한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면서 우선 기본합의서 채택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남북사이의 불가침과 미·북간 평화 협정체결, 남한에서 핵무기와 미군철수를 주장함으로써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제4차 회담('91. 10. 22~25, 평양)에서 북한측은 처음 한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을 긴급 제안하는 동시에 남북불가침에 관한 선언과 남북화해와 협력 교류에 관한 기본합의서 채택을 주장하다가 통합안으로 남북불가침과 화해 및 협력 교류에 관한 선언 채택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화해·불가침과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다. 쌍방은 입장 절충을 통해 단일문건으로 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할 것과 서문,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 협력, 수정 및 발효 순으로 합의서 내용을 구성할 것에 합의하였다.

제5차 회담('91. 12. 11~13, 서울)에서 남북한은 이같은 합의를 토대로 기존 쟁점사항들에 대한 상호 양보를 통해 전문과 25개 항으로 된 '남북사이의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12. 13)하였다. 이와 함께 한반도 핵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대표접촉을 12

월안에 개최키로 하는 등 3개 항의 공동발표문을 채택하였다. 제5차 회담에서의 합의에 따라 1991년 12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문점에서 3차례에 걸쳐 대표접촉이 진행되어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한편, 제6차 회담과 7차 회담, 8차 회담에서는 남북 쌍방간에 합의된 여러가지 합의서를 발효시켰다. 6차 회담('92. 2. 19~21, 평양)에서 남북한은 역사적인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과 함께 '남북 고위급 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발효시켰다.

제7차 고위급회담('92. 5. 5~8, 서울)에서는 남북연락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남북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발효시키고,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제8차 회담('92. 9. 15~18, 평양)에서 남북한은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발효시켰으며,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발효와 함께 4개 공동위원회의 제1차 회의 일자와 장소도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0월 31일 대남 전화통지문을 통해 화랑훈련(11. 2~7)과 한·미 연합 독수리훈련(11. 3~9), '93 팀스피리트 훈련 등 우리의 연례적인 군사훈련을 구실로 11월 5일부터 1주일 간격으로 개최 예정이던 4개의 공동위원회의의 참석을 거부하고 12월 21일~24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제9차 남북고위급 회담도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버렸다.

④ 분야별 분과위원회

제6차 고위급회담의 합의·발표에 따라 남북한 쌍방은 각 분과 위원회 위원명단을 1992년 3월 6일 서로 통보하고, 남북정치분과 위원회 회의('92. 3. 9)를 시작으로, 남북군사분과위원회('92. 3. 13)와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 회의('92. 3. 18)를 각각 판문점에서 개최하였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따라 남북한은 그 이행기구인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의 구성 운영문제 협의를 위한 제1차 대표접촉을 제6차 고위급 회담 기간인 1992년 2월 19일에 진행한 데 이어 7차례의 대표접촉을 갖고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92. 3. 14)하고, 위원명단통보('92. 3. 18)에 이어 1992년 3월 19일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후 분과위원회 및 핵통제공동위원회 회의 각각 세 차례, 정치 분과 위원회 위원접촉 한 차례, 교류·협력분과위원회 위원접촉 네 차례 등 총 17회의 협상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통일 3원칙의 해석, 부문간 우선순위, 부속합의서의 성격과 이행방법, 공동위원회 구성의 우선순위, 공동위원회의 기능과 수, 접촉창구의 문제 등에 대해서 남북한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였다.

제7차 고위급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분야별 부속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해 제8차 고위급회담이 개최되기까지 분야별 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정치분과위원회는 네 차례에 걸친 회의와 세 차례의 위원장접촉, 네 차례의 위원접촉을 가졌다. 그리고 군사분과위원회는 다섯 차례의 회의와 한 차례의 위원장접촉, 세 차례의 위원접촉을 가졌다. 이와 함께 교류·협력분과위원회도 네 차례의 회의와 한 차례의 위원장접촉, 두 차례의 위원접촉을 가졌다. 그러나 교류 협력분야에서만 대체적인 합의를 이루었고 화해분야 및 불가침분야

에서는 의견대립으로 부속합의서의 일괄타결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제8차 고위급회담을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북한은 각 분과위원회의 협상과정에서 핵사찰문제, 이인모 송환문제 등을 반복적으로 거론함으로써 협상의 장애요인을 조성하였다. 제8차 고위급회담 기간 중 쌍방은 분과위원장 접촉을 갖고 정치 군사 부속합의서의 쟁점 중 일부를 타결하고 나머지 쟁점 조항은 추후 협의·해결한다고 부기(附記)함으로써 화해, 불가침, 교류 협력 등 3개분야의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였다. 아울러 정치분과위원장 접촉에서 남북화해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도 타결되었다.

그러나 부속합의서 채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북간의 입장차 이로 합의되지 못한 쟁점사항은 장차 협의 해결한다는 형식으로 처리되었다.

화해분야의 미합의 사항은 (i) 국제기구에의 하나의 명칭, 하나의 의석가입문제, (ii) 국제회의 등 정치행사에 유일대표단 참가문제, (iii) 제3국이 남북의 상대방 이익침해 행위시 불가담·불협력하는 문제, (iv) 타국과 맺은 조약·협정 중 민족의 단합 이익에 배치되는 것은 개정하거나 폐기하는 문제 등이었다. 그리고 불가침분야의 미합의 사항으로 북한측이 제기한 것은 (i) 군사분계선 일대에 무력을 증강하지 않는 문제, (ii) 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 금지 문제, (iii) 상대방의 영해·영공을 봉쇄하지 않는 문제이며, 남한이 제기한 것은 (iv) 서울지역과 평양지역의 안전보장 문제였고 이 문제들은 군사공동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하도록 규정되었다.

7)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

①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

북한이 핵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93. 3. 12)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의 핵비확산조약 탈퇴효력발생 일('93. 6. 12)이 다가오자 우리측은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고위급회담 대표접촉을 가질 것을 북한에 제의하였다('93. 5. 20). 이는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최초의 대북제의로서 미·북고위급회담을 앞두고 남북한이 직접 대화를 통해 북한핵문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제의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이 통일문제해결을 위한 남북정상회담 개최문제 논의와 남북사이의 현안들을 타결하기 위한 최고위급의 뜻을 전달하는 부총리급의 특사교환을 제의하였다('93. 5. 25). 북한은 6월 26일 을지훈련을 이유로 특사교환 제의를 자진철회하였으며, 우리측의 핵통제공동위원회 재개 제의('93. 8. 4)에 대해서도 팀스파리트훈련, 국제공조체제 등을 이유로 거부하였다. 그 다음 북한은 1993년 9월 1일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대표단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여 새로운 특사교환 방식을 제의했다. 그것은 특사를 '임의의 급'으로 하자는 것과 의제에 있어서 비핵화 문제, 긴장 완화와 남북합의서 이행을 위한 공동대책문제를 우선 명시한 것이었다.

우리측이 대화의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북한의 '임의의 급' 특사교환제의를 수용함에 따라 1993년 10월 5일 제1차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대표접촉이 이루어졌다. 3차례에 걸친 실무대표 접촉에서 우리측은 남북특사교환에 관한 합의서(안)을 제시하면서 특사교환을 위한 절차문제를 마무리지어 빠른 시일내에 특사교환을 실현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한측은 특사교환에 관한 합의서(초안)을 제시하면서도 특사교환을 위해서 핵전쟁 연습중지, 국제공조체제 포기 등의 조건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특사교환을 위한 절차문제 토의를 거부하였다.

또한 북한은 11월 3일 제4차 실무대표접촉을 하루 앞두고 북한

핵문제에 관한 권영해 국방부장관이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 군사대응불사계획 발언을 문제삼아 제4차 접촉을 일방적으로 연기 시켰다.

북한의 거부로 4개월여간 중단상태에 빠져 있었던 제4차 실무접촉은 우리측의 제의로 1994년 3월 3일 재개되어 제8차 접촉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북한측은 처음부터 핵전쟁연습중지, 국제공조체제 포기, 패트리어트미사일 반입중지, 핵무기를 가진 자와는 악수를 할 수 없다고 한 김영삼 대통령의 발언 취소 등 4개 요구사항을 전제조건으로 제시, 절차문제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1994년 3월 19일 개최된 제8차 실무접촉에서 북한측이 ‘서울 불바다’ 운운의 전쟁위협 발언을 하고 차기 접촉일자의 결정마저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퇴장함으로써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은 중단되었다.

②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2월 25일 취임 1주년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일성은 6월 북한을 방문한 카터 전미국대통령을 통해 정상회담에 호응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왔다. 카터 전대통령으로부터 김일성의 의사를 전해들은 김영삼 대통령은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김일성을 만나겠으며, 필요한 사항을 실무차원에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4년 6월 20일 국무총리 명의로 북한 정무원 총리 앞으로 서한을 보내 남북 정상회담 개최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부총리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예비접촉을 6월 28일 판문점에서 가질 것을 제의하였고 북한측이 이에 호응해 나옴으로써 1994년 6월 28일 평화의 집에서 비공개로 개최되었다. 예비접촉은 전체회의 두 차례,

수석대표간 단독접촉 두 차례, 합의서 문안정리를 위한 대표접촉 한 차례 등 사상 최초로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를 마련하는데 성공하였다.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합의서에서 남북한은 정상회담을 1994년 7월 25일~29일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기타 실무절차문제들은 각기 예비접촉대표 1인과 수행원 2인의 대표접촉에서 정한다는 것을 합의하였다.

이같은 부총리급 예비접촉에서의 합의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실무절차를 협의하기 위한 제1차 대표접촉이 1994년 7월 1일 통일각에서, 제2차 대표접촉이 7월 2일 평화의 집에서 비공개로 개최되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절차 합의서가 합의되었다.

이어서 7월 7일에는 통신관계 실무자 접촉이 이루어지고, 7월 8일에는 경호관계 실무자 접촉이 비공개로 개최되어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7월 13일~16일까지 평양에 파견될 사전답사반 명단을 넘겨 주는 등 정상회담 진행절차에 대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던 중 7월 9일 정오에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김일성의 사망(7. 8)을 발표하였고, 7월 11일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 북측 단장인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장 김용순 명의로 이홍구 부총리에게 “우리측 유고(有故)로 예정된 북남최고위급회담을 연기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을 위임에 의하여 통지”한다는 서한을 보내옴으로써 남북정상회담은 연기되고 말았다.

8) 대북 쌀지원을 위한 남북접촉

북한이 1990년 이후 마이너스성장을 계속하면서 심각한 에너지 난과 식량난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이다. 북한이 연간 필요로 하는 식량은 대략 570만톤에 이르지만 그 중 북한에서 생산되는 양은 400만톤 정도로 매년 약 170만톤에 달하는 식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북한의 최대 곡물수입국인 중국이 식량교역에서 경화결제를 요구하고 중국도 동부3성의 수해 등으로 인해 곡물사정이 어렵게 됨으로써 중국으로부터 식량도입이 차질을 빚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이성록 국제무역촉진위원장은 1995년 5월 일본을 방문하여 방북 연립여당 대표단과 가진 회담에서 일본이 보유중인 쌀 잉여분을 일정량, 일정기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쌀도 전제조건이 없으면 받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정부는 5월 26일 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의 발표문을 통해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들이 현실적인 곤경을 벗어날 수 있도록 민족복리 차원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정치적 부대조건없이 북한이 필요로 하는 곡물을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북한은 이같은 우리 정부의 곡물제공용의에 대해 공식 입장표명을 계속 미루어 오다가, 6월 9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북한측의 조선삼천리총회사가 6월 13일 중국 북경에서 만나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것을 제의해 왔다. 정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하여금 '선 당국간 회담, 후 민간상사접촉' 방침을 북한측에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북한측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6월 17일부터 21일 까지 북경에서 제1차 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남북한은 ① 우리측이 북한측에 1차로 쌀 15만톤을 전량 무상지원, ② 우리측 선박으로 청진·나진항에 인도, ③ 원산지 불표기, ④ 합의사항 실천을 위한 민간상사로서 대한무역진흥공사와 북한측 조선삼천리총회사를 지정, ⑤ 1995년 7월 중순에 제2차 회담개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북 쌀 지원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제2차 북경회담은

북한측의 쌀 수송선 씨 아페스호 강제 인공기 게양사건, 우성호 선원 억류 상태의 장기화 등 남북관계에서 어려운 일들이 계속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었다. 이 회담에서 우리측은 우성호 문제 등 현안문제 해결에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과 북한측 식량문제의 장기적·안정적 해결을 위해 농업·경공업·에너지 분야에서 쌍방이 서로 협력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우리측의 쌀 제공량이 다른 나라보다 적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측이 쌀 추가제공 규모 및 시기를 제시해 주어야 여타 현안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어 1995년 9월 26일부터 10월 1일 까지 쌀 추가지원 규모에 대한 우선적 협의를 요구하는 북한측 주장과 우성호 문제, 회담장소 변경문제등 현안에 대한 북한측의 태도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이 대치하는 가운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났다.

2. 남북기본합의서 챕터과 의의

(1) 남북기본합의서의 의의

남북기본합의서는 통일을 한민족의 공동 번영을 위한 과정으로 전제하고, 남북관계의 개선과 평화통일을 향한 기본틀을 제시하고 있다는 데 무엇보다도 큰 의의가 있다.

남북한은 그 동안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으로 인해 상호 불신 반목하여 온 현실상황에서 하루 아침에 통일을 이룰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기본합의서는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군사적으로 침범하거나 파괴 전복하지 않으며,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해 민족 공동발전을 도모하여 명실상부한 민족공동체를 이루함으로써 점진적·단계적 통일을 실현하겠다는 데 합의한 합법적인 문서라는 점

에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분단 아래 최초로 남북한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책임있는 당국간의 회담을 통해 원만히 이루어졌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말하자면 7천만 온 겨레가 지켜보는 가운데 제3자의 개입 없이 남북한 당국간의 공개적인 협의를 거쳐 채택 발효된 최초의 합의서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2) 남북기본합의서의 주요내용

남북기본합의서는 서문과 함께 제1장 남북화해, 제2장 남북불가침,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4장 수정 및 발효 등 모두 4장 25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 주요한 내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① 상대방 체제의 인정·존중(1조), ② 내부문제 불간섭(2조), ③ 비방·중상 중지(3조), ④ 파괴·전복행위 금지(4조) ⑤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5조), ⑥ 국제무대에서의 대결과 경쟁 중지(6조) 등 분단기간 동안 남북 사이에 쌓여진 불신과 대결의 장벽을 헐고 민족성원 상호간에 화해와 신뢰를 쌓아 나아가기 위한 실천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불가침에 대한 쌍방의 확고한 약속을内外에 선언하면서 그 이행을 보장해 나갈 구체적인 실천조치로서 ① 무력불사용과 무력침략 포기(9조), ② 의견대립과 분쟁문제의 평화적 해결(10조), ③ 불가침의 경계선과 구역의 명시(11조), ④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동 위원회에서 협의 추진할 사항의 명시(12조), ⑤ 쌍방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의 설치(1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민족전체의 복리향상과 민족공동체의 회복·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로서 ①

경제교류·협력(15조), ② 과학, 문화, 보건,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 협력(16조), ③ 자유로운 인적왕래 및 접촉(17조), ④ 서신거래,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대책 강구(18조), ⑤ 철도·도로 연결 및 해로·항로 개설(19조), ⑥ 우편·전기통신 교류(20조), ⑦ 국제무대에서의 다각적인 협력과 대외 공동진출(21조)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밖에도 남북기본합의서에는 합의내용의 이행을 보장하고 실행해 나갈 협의 실천기구인 분과위원회, 공동위원회 및 남북연락사무소에 관한 조항들을 각 장마다 설정하고 있다.

3.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의미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91. 12, 서울)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세 차례의 대표접촉을 진행한 결과로 공동문안에 합의했고,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92. 2, 평양)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함께 공식 발효시켰다.

(1)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의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북한 쌍방이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를 만들자”는 약속을内外에 천명함으로써 한반도를 핵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공동선언으로 인하여 북한측이 고수해 오던 ‘한반도 비핵지대화’라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철회하게 되었고, 아울러 우리측의 거듭된 ‘한반도 비핵화정책’을 구체화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책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동선언이 채택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합의내용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필요한 조치들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일단 마무리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첫째,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협정에 서명·비준하고 엄정한 사찰을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전제하고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합의했다는 점이다.

둘째, 이 공동선언의 내용에 “남북 상호사찰을 실시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하였다는 점이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물론 민족의 생존과 직결되는 핵문제가 남북한간의 공통된 주요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국제적 사찰의 수용은 물론 남북한 상호사찰의 실시에 이르기까지 합의점을 얻어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것이다.

(2)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주요내용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서문과 함께 6개항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 공동선언은 서문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남북은 ①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1항), ② 핵 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2항), ③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3항), ④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4항), ⑤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5항)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4.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실천기구

(1) 실천기구의 구성과 운영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에는 합의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협의·추진하기 위한 각종 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둘으로써 합의서를 성실히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한은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92. 2. 18~21, 평양)에서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92. 9. 15~18, 평양)에 이르는 7개월간에 걸친 협의를 통해 합의서의 이행실천을 위한 3개의 분과위원회, 남북연락사무소, 5개의 공동위원회 등 실천기구들을 구성 운영하였다.

우선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 및 비핵화공동선언과 더불어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 발효됨에 따라 3월 6일에는 남북 정치, 군사, 교류협력 분야의 3개 분과위원회가 각각 구성되었다.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회의, 위원장 및 위원접촉 등 총 46차례의 회의를 거듭한 결과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의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분야 등 3개의 부속합의서를 채택·발효시키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또한 비핵화공동선언이 발효한 2월 19일에서 3월 14일간에 걸친 7차례의 대표접촉을 통해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됨에 따라 3월 18일에는 상호 위원 명단을 교환하고, 3월 19일에는 제1차회의를 시작함으로써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는 본격적으로 구성 운영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제7차 남북고위급회담('92. 5. 5~8, 서울)에서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발족시킴과 아울러 군사, 경제교류 협력, 사회문화 교류 협력 등 3개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5월 18일 이를 발족시킴으로써 남북기본합의서에 명시된 시한내에 실천기구들을 차질없이 구성 운영하게 되었다.

또한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 남북화해분야의 합의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남북간에는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에 명시된 모든 실천기구들을 구성 운영하게 됨으로써 합의서의 실천기반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

(2) 남북기본합의서의 부속합의서 채택

남북기본합의서의 분야별 부속합의서 채택은 17차례의 접촉과 협의를 거쳐 어렵게 마련되었다.

그 결과 남북연락사무소와 군사, 경제교류 협력, 사회문화교류 협력 등 3개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또한 분야별 분과위원회 회의와 위원장 접촉 등 모두 26차례에 걸친 접촉과 협의를 거쳐 부속합의서의 명칭, 구성체계 등 형식면에서 완전합의를 보게 되었다.

제2절 남북 사이의 교류와 협력

1.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

우리 정부는 점진적 단계적 통일방식인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3단계로 추진하는 공동체 통일방안’은 그 1·2 단계에서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을 중시하고 각 분야의 실천을 전제로 하고 있다. 첫 단계인 화해협력단계에서는 남북한이 적대와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신뢰와 협조관계를 쌓아 가기 위해서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이 촉진되어야 한다. 그 다음 남북연합단계에서는 남북한이 공동생활권을 형성하여 경제·사회·문화공동체를 이루해 나가기 위해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반세기 동안 불신과 대결을 계속해 온 남북한이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을 이루려면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불신관계에서 벗어나 신뢰관계를 회복하고 민족의 동질화를 촉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분단국가의 통일에 있어서 우선적인 교류협력의 실천이 정치통합 달성을 촉진기능을 한다는 것은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확실하게

입증되었다. 더욱이 탈냉전 후 세계사의 흐름이 이념 및 체제의 구별없이 화해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려는 것임을 보더라도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교류협력을 통해 수많은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2. 남북교류협력 제도

(1)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1) 법령 제정 의의

정부는 헌법 제4조에 규정한 평화적 통일정책추진 원칙을 실천하기 위하여 1988년 7월 7일 제시한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통해 남북한이 분단의 벽을 허물고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와 협력을 실현할 것을 천명하였다. 「7·7선언」은 세계사의 흐름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통일환경의 변화를 남북관계의 새로운 발전모색으로 연계시키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을 결집한 것이다. 정부는 이 정책 선언을 구체화하기 위한 여러 실천적 조치를 취해 나가는 가운데 남북한간에 교류와 협력이 체계적으로 제도화되어 법의 테두리안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 나갈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1990년 8월 1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하였다.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안)은 1989년 2월 13일 국회에 제출

1) 정부는 1989년 2월 13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특별법(안)」을 제 145회 임시 국회에 제출하였고, 그 후 민주 자유당은 정부안과는 별도로 「남북교류협력에관한특별법(안)」을, 당시의 평화민주당은 「남북교류촉진법(안)」을 각각 제출했으며 국회에서는 상기 법안들을 접종하여 1990년 7월 14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라는 명칭으로 통과시켰고, 동년 8월 1일 공포 시행되었다.

된 이후 약 1년 5개월 동안 활발한 논의를 통해 국민 각계의 의견이 광범위하게 수렴되었고, 여야간 합의에 의한 단일안이 통과되었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남북한간의 접촉과 왕래, 교역과 협력을 전면적으로 개방한다는 정신에 기초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고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남북한간의 교류 협력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 발전시킨다는 의의를 가진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을 제정한 것은 남북관계에 대한 정부조치를 통치행위 차원으로 다루던 관행²⁾에서 벗어나 법적 근거를 갖는 행정행위 차원으로 전환하였다는 의미이며 이는 곧 정부가 남북관계도 법적 근거와 법적 통제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다른 법과의 관계

이 법률은 입법단계에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와 국가보안법과 모순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우선 이 법률이 헌법 제3조에 위반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있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서는 우리의 통치권이 북한지역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전제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나왔다. 물론 이러한 견해는 형식논리상으로 볼 때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북한지역에 미치지 못하고

2) 남북관계에 관한 정부조치를 통치행위로 다룬 예로 1989년 6월 12일 대통령특별지시에 의해 마련된 ‘남북교류협력에관한기본지침’이 있었는데 이는 국회에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안)’의 입법화가 자연되는 상황에서 이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추진의 근거와 준칙을 정한 것이며, 1990년 8월 1일 상기법률이 제정 공포되면서 실효되었다.

있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통일정책의 현실적 기초가 상실되는 것은 물론, 이 법률의 성립기반을 부인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법률을 제정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영토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주권의 효력범위를 축소하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남북한간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일 뿐이라는 점에서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헌법 전문(前文)과 제4조에서는 평화통일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바, 이러한 헌법이념에 따라 통일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라 하겠다.

법률상의 또 다른 문제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법체계상 혼란을 야기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이 주장은 헌법 전문 및 제4조의 규정과 정부가 평화통일정책을 구체화하므로써 북한을 하나의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변화로 인해서 헌법 제3조는 사문화(死文化)된 조항이 되었으므로 이에 기초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남북관계의 현실에 맞는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의 헌법상 근거는 헌법 제3조가 아니고 제37조 2항이기 때문에 북한은 그 자체만으로는 무조건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체제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들과 관련될 때 범죄구성 요건상의 반국가단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률을 제정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³⁾

이러한 견해들을 차치하고라도 정부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파괴에 대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

3)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남북교류협력의 본격화 과정에서 제기될 법적 문제점 및 대책』, 1992, pp. 61~62

는 것은 헌법상의 책무이다. 남북한간에 전쟁이 있었고, 아직도 휴전상태에서 양측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대치하여 긴장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로 인해서 야기되는 법적 공백과 사회적 혼란 등 국가적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리 헌법 제3조와 제4조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헌법 제3조는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이어야 한다는 당위 규범이며 제4조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당위를 추구하되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남북교류협력 절차

남북한 주민이 서로 교류협력을 하려면 정부의 승인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에 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이유는 교류협력의 북측 상대는 북한당국으로 일원화되어 있는데 반해서 우리측 당사자는 상호 경쟁상태의 민간인이기 때문에 우리측의 과잉경쟁을 조정하여 남북한간의 안정적이고 질서있는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더욱이 북한당국이 우리측 교류협력당사자를 통일전선전술의 대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단계의 남북교류에서는 정부의 승인이 불가피한 것이다. 다만 앞으로 남북한간에 합의에 의해 교류협력이 제도화될 경우에는 민간인의 자율범위가 확대될 것이다.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⁴⁾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 왕래와 접촉, 교역 및 기타 협력사업 관련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후속법령(11개 법령)과 남북협력기금법 및 후속법규(3개법령)으로 이루어져 있다.

1) 주민왕래

남북한 주민이 상대지역을 왕래하려면 통일원장관이 발급하는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방문증명서의 발급절차로서 남한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고자 할 때에는 방문증명서 발급신청서, 신원진술서, 사진 및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동법시행령 제10조 1항).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이다. 현재 정부는 북한당국 또는 권한있는 기관이 작성한 초청장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초청장은 특정한 양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원칙적으로 원본일 경우에만 유효성이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은 남북한간에 주민 왕래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을 방문한 남한 주민이 사고를 당하거나 억류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서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안전과 무사귀환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고려를 하기 때문인 것이다.

현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동합의서 제10조 3항)에는 상대측 주민의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 보장에 관한 규정이 있고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위원회가 가동되면 남북한간에 이에 관한 세부절차가 마련될 것이다.

또한 북한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고자 할 때에도 방문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동법시행령 제10조 2항). 다만 북한 주민의 발급신청서 제출이 현실적으로 곤란할 것으로 보아 남한 주민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1조 2항). 북한 주민

에게 정부가 방문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북한 주민에 대한 신변안전의 보장을 약속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방문증명서는 남한 지역에서 일종의 신분증명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이 법은 우리 국민 중 외국에서 영주권을 얻었거나 장기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재외공관장에게 신고만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동법 제9조 2항, 동법시행령 제18조 1·2항), 또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적(北韓籍)을 보유한 해외거주 동포도 여행증명서 만 소지하면 우리나라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다(동법 제10조). 이처럼 이 법은 남북한 주민의 왕래를 적극적인 입장에서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국가 안전보장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은 남북한을 왕래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방문시의 행위가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질서, 공공복리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왕래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동법시행령 제17조 3항). 나아가 이러한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동법 제3조).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일체의 남북 교류협력이 반국가행위로 간주되어 금지되어 왔었으나, 이 법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남북한간의 교류협력행위를 국가안보를 해치는 행위와 해치지 않는 행위로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은 국가안보를 해치지 아니하는 교류협력행위에 대해서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 왕래시 방문기간은 1년 6개월 이내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최초의 방문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귀환할 때 출입 장소에서 방문증명서를 반납해야 한다(동법시행령 제16·17조). 경제협력사업시행 관계자나 국내기업 또는 경제단체의 북한지역사무소 주재원 등 북한지역에 장기체류할 필요가 있는 자는 1년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수시 방북을 허가하는 북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 방문자는 방북시 방북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남북한 왕래절차에 관해서 남북한 당국간에 별도의 합의가 있거나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법시행령 제20조).

2) 주민접촉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서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동법 제9조 3항). 여기서 접촉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회합 또는 통신(전화, 전신, 편지, Fax, Telex 등)을 통하여 상호 의사를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남북한 주민간에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접촉이 필요할 것이며, 상호왕래·교역·협력사업을 위해서도 먼저 접촉을 통하여 의사교환을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이 성사되려면 남북한 주민간 접촉이 개방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편 남북한 주민이 왕래승인을 받고 상대지역에 가서 주민접촉을 하는 경우에도 접촉승인을 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경우 방문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접촉하는 것은 별도의 승인이 필요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시행령 제19조 1항). 예를 들면 가족방문을 위하여 상대지역을 방문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가족이 사는 동네 이웃 사람들을 만난다 든지 전화를 하는 것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치적 목적으로 정치인을 만난다든가 기타 본래의 방문목적을 현저히 벗어나는 접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접촉승인이 필요하다.

접촉승인은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국제행사에 참가한 남한 주민이 동 행사에서 북한 주민과 접촉하는 경우,

외국에서 우발적으로 북한 주민과 접촉하는 경우, 외국에서 가족인 북한 주민과 접촉하는 경우, 교역을 위하여 긴급히 북한 주민과 접촉하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승인 없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는 경우에는 일단 접촉한 후 신고를 하면 되도록 하였다(동법 시행령 제19조 34항). 이것은 인도적 목적이나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주민접촉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상당히 개방적인 접촉을 허용하려는 취지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나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있거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⁵⁾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절차를 신축적으로 조정하여 보다 쉽게 접촉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동법시행령 제20조).

3) 교 역

남북한간의 물자 교류는 쌍방간에 유무상통(有無相通)의 관계를 이룩하고 나아가 경제공동체 형성의 기초를 마련하는 중요한 남북교류의 한 형태이다. 남북한간 교역은 더욱 활성화되고 증가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의 간접교역 형태보다는 남북한 직교역이 더욱 바람직한 것이다.

남북한간 교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역당사자가 물품을 반입 또는 반출하려 할 때에는 대상물품 · 거래형태 · 대금결제 방법에 관해서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동법 제13조). 그런데 교역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남북한간의 교역이 단순한 물품의 이동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실현에 기여하는 수단이라는 점, 그리고 남북한의 화폐가 다르기 때문에 국제무역관행에 따를 수밖에 없

5)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 조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통일원에 설치한 기구로서 위원장은 통일원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14인 이내)으로 구성된다.

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외에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제한하고 있다(동법 제12조). 여기서 반출입이라 함은 매매·교환·임대차·사용대차·증여 등을 원인으로 하는 남북한간의 물품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포함)을 의미한다.

교역당사자가 정부의 반출입 승인을 받은 경우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것은 교역대상 물품의 공고에 의하여 제한승인품목으로 분류된 물품의 반출입에 한하고, 기타 자동승인품목으로 분류된 물품에 대해서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그 승인권을 위탁하고 있다(남북한교역대상물품및반출·반입승인절차에관한고시 제2조). 이와 같이 남북한간 교역을 가능한 한 자유교역의 원칙에 따라 폭넓게 개방하려고 하였다.

특히 남북한간의 교역이 민족내부거래라는 특수성에 입각하여 남북한간에 교역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및 기타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부과금을 면제하는 무관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동법 제26조 2항 단서, 동법시행령 제50조 3항의 1). 이와 같은 무관세원칙의 취지는 북한측에도 받아들여져 관련 남북 부속합의서 타결과정에서 남북한간에 합의가 이어졌다(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 제1조 10항). 앞으로 남북한은 쌍방간의 교역을 민족내부거래로 실시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여 국제사회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남북한간의 교역을 활성화시킨다는 입장에서 수출에 준하는 각종 지원제도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동법 제26조). 그런데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남북한간 교역은 무엇보다도 남북관계의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질서있게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물품의

반출입에 관한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정부는 교역당사자에게 반출입 물품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조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법 제15조 1항). 앞으로 남북한간의 교역이 활성화되고 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교역에 관한 세부절차가 마련되면 청산결제방식(清算決濟方式)에 의한 교역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동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40·41조).⁶⁾

4) 협력사업

남북한간 협력사업은 남북한 주민들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학술·체육·경제 등에 관한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협력사업이 활성화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민족공동체 형성과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협력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후, 승인받은 협력사업자가 구체적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였다. 남북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 포함)는 우선 협력사업자로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동법 제16조)고 정하고 있는 바, 이것은 협력사업을 추진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러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협력사업자로 승인을 얻으려면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또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사업실적이 있어야 한다(동법시행령 제30조).

6)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1조 ⑤ ⑥항에는 남북한간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생방이 합의하여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협력사업자로 승인을 받은 자가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상대자와의 협의서 및 북한 당국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동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34조). 이 때 협력사업자는 북한의 상대자와 먼저 협의를 하여야 할 것인 바, 이를 위해서는 북한 주민과 접촉하거나 북한을 방문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협력사업의 대상은 제한이 없으나 그 내용이 실현가능하고 사업자의 능력으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며, 남북관계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승인하게 된다(동법시행령 제35조).

그리고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국내기업이나 경제단체에 대해서 북한지역에 사무소(대표부·대리점·출장소 등)를 설치하여 업무연락이나 시장조사, 연구활동 등 비영업적 활동 및 위임대리 업무의 수행을 허용하고 있다(국내기업및경제단체의북한지역사무소설치에관한지침 제2조).

남북한 협력사업시 외국환의 거래는 외국환관리법 또는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법시행령 제39조, 제41조). 또한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국내세법을 적용하되, 북한당국과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금 면제 등 특례를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동법시행령 제53조).

남북한간의 협력사업은 남북관계의 특수한 성격을 전제로 하여 추진되는 만큼 어디까지나 남북관계의 개선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질서있게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협력사업자도 사업 시행 중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질서,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최근 3년간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등에는 사업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동법시행령 제32조, 제33조).

5) 절차 위반시의 조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남북한 주민이 왕래, 접촉, 교역 및 협력사업 등 남북교류협력 행위를 할 경우 사전에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거나 승인을 받지 않은 행위에 대해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7조).

예를 들면 이산가족 상봉, 교역 등을 목적으로 북한 주민과 접촉하거나 북한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법정 절차를 위반한 경우라도 반국가적인 행위가 아니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상의 벌칙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국가의 안전보장을 해칠 목적이나 또는 해가 될 것을 알면서 교류협력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정 절차를 준수했더라도 정당한 교류협력 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동법 제3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국가보안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교류협력 행위로서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동법 제27조 1항). 좀더 경미한 사항으로서 관계법령에 규정된 신고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부의 조정명령 또는 정부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7조 2항). 남북한간의 교류협력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의 성격상 벌칙규정을 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⁷⁾이 일부 있으나 이러한 견해는 현재의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그리고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벌칙규정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적다고 할 수 있다.

7) 오준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현행법제와 그 개선방향,” 통일원, 『통일문제연구』, 1992년 봄호, pp. 40~41

(3) 남북협력기금

남북교류협력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재정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남북협력기금법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⁸⁾

남북협력기금은 통일원장관이 운용·관리를 관장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는 한국수출입은행에 위탁하였으며,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다.

1) 기금의 조성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을 재정적 지원을 통해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은 교류협력의 본격화에 대비하여 기금 확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남북협력기금을 충분히 조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첫째, 정부예산에 의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으로서 아직까지는 거의 여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기금 조성을 전적으로 정부예산에 의존할 경우, 기금조성에 예산상의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모든 기관 및 단체는 물론 개인(재외동포, 외국인 포함)도 누구나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동법 제4조 1항).

둘째, 필요할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재정투융자특별회계나, 다른 기금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 차입할 수 있도록

8) '남북협력기금법(안)'은 1990년 2월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5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동년 7월 14일 제150회 임시국회에서 제출인대로 통과하여 동년 8월 1일 공포 시행되었다.

하고 있다(동법 제4조 2항, 제5조).

셋째, 국채관리기금에서 들여 온 예수금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4조 3항). 이와 같은 기금재원 조성방법 이외에 기금의 재원으로 되는 것은 기금의 운용수익금이나 또는 기금의 관리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익금도 있다(동법 제4조 45항).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에 정부출연으로 250억원을 조성한 이래 1997년 10월까지 정부출연금 4,850억원, 민간출연금 4억 9,900만원, 운용수입금 693억 5,300만원 등 총 5,548억 5,200만 원이 조성되었다.

2) 기금의 지원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은 대체로 남북한 주민의 인적 왕래비용에 대한 지원과 같은 비상환성 지원방법이 있고, 경제교류협력에 대한 자금융자와 같은 상환성 지원방법이 있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면에서는 상환성 지원이 바람직하나, 남북한 교류협력의 촉진면에서는 비상환성 지원도 불가피할 것이다.

① 무상지원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 무상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로는 우선 남북한 주민으로서 자비(自費)에 의한 남북한 왕래가 곤란한 경우와 남북한 당국간 합의로서 왕래비용을 당국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또는 남북한 교류활성화에 기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다. 이 경우 그 기본적 경비(숙식비, 교통비 등)를 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문화·학술·체육분야 등의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데 소요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협력사업의 계획·준비·실시 및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수익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그 수익금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손실보조

남북교역이나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남한 주민이 사업시행과정에서 반출한 물품대금의 회수불능이나 회수지연, 대응물품의 반입불능 또는 반입지연, 투자자본의 원금과 이자의 회수불능이나 회수지연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손실액을 기금으로부터 보조받을 수 있다.

손실보조를 받으려면 남북교역 또는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정부와 손실보조 약정을 체결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손실보조 약정자는 실제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사실증명서류와 함께 손실보조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는 정당한 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손실액의 100분의 90 이내에서 손실보조금을 지급한다.

③ 자금대출

남북교역이나 경제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남한 주민으로서 교역이나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기금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다. 이 때 대출액은 소요자금의 100분의 90 이내로 한다. 대출을 받고자 하는 교역업자나 경제협력사업자는 정부와 자금대출에 관한 사전협의를 한 후 자금대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3년을 포함해서 10년 이내이며, 이자율은 일반은행대출보다 유리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채무보증

남북교역이나 경제협력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은 남한 주민은 기금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은 교역 또는 경제협력사업자와 금융기관간에 체결된 계약상의 보증한도 범위 내로 한다. 기금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채무보증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금융기관 지원

금융기관이 남북한 주민의 왕래·교역·경제협력사업 등과 관련하여 북한 화폐에 대한 환전업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가 있다. 이 때 금융기관이 입은 손실에 대하여 기금에서 보전을 해 줄 수 있으며,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자에게 융자를 해준 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액 범위 내에서 자금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남북한간에 대금결제 구좌가 설치되어 여기에서 대금결제 구좌의 미결제채권이 발생할 경우 이를 기금이 인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북한 원화를 매입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북한 원화를 금융기관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⑥ 민족공동체회복 지원

남북교류협력이 민족의 신뢰와 민족공동체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에 따라 소요자금 융자, 손실보조, 채무보증, 금융기관 지원, 보조금의 지급,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교류협력에 관한 분야별 남북합의

남북한은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를 발효시켰고 ('92. 2. 19), 이어서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도 발효되어 ('92. 9. 17) 남북한간에는 교류와 협력을 실천할 수 있는 기본체제는 일단 마련되었다. 나아가 남북합의서를 이행할 실천기구인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어 ('92. 5. 18) 앞으로 이들 이행실천기구가 활동을 시작하고 필요한 분야별 세부합의서가 마련되면 남북한간에는 교류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체제가 마련되었으나 아직도 본격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소극적 입장 때문이다.

교류협력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교류협력 실시, 민족구성원들의 자유왕래와 접촉의 실현, 철도 도로 등 육로, 해로, 항공로의 개설 및 우편 전기통신의 연결, 국제무대에서의 협력과 해외공동진출 등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1) 경제분야

경제분야 교류협력의 목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데 두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족내부교류로서 물자의 직교역을 실시하고 석탄·광물·수산자원 등을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발하며, 또한 공업·농업·건설·금융·관광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여기서 교역과 경제협력의 당사자 자격은 법인으로 등록된 상사, 회사, 기업체 및 경제기관으로 하되 개인도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계약은 당사자간에 직접 체결하되 각기 내부적으로 필요한 절차(당국의 승인 등)를 거쳐서 체결하기로 하였다. 또한 경제협력사업의 대상과 형식, 교역대상품목과 규모는 모두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협력사업의 규모와 교역품목별 수량, 거래조건 등 실무적인 문제는 계약당사자들이 결정하도록 하였다.

남북교역은 상호성과 유무상통(有無相通)의 원칙에 따라 실시하며 교역물자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이 결정하도록 했다. 대금 결제방식은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로 다른 결제방식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청산결제은행 지정과 결제통화의 선정, 대금결제 및 자본의 이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 합의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남북한은 경제교류협력을 계속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앞으로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 및 분쟁조정절차 등에 대하여도 합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남북한간에 단절된 교통로의 연결 또는 개설에 관해서는 교통로가 개설되기 전에 필요한 주민의 왕래와 물자수송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 남북이 합의하여 임시 교통로를 개설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우선 해로를 개설하여 인천, 부산, 포항항과 북의 남포, 원산, 청진항을 연결하기로 하고 앞으로 교류협력규모가 커지고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는 데 따라 해로를 추가로 개설하고 철도와 도로를 비롯한 육로와 항공로도 개설하기로 하였다.

우편과 전기통신의 교류에 관해서는 남북한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 연결하기로 하고 빠른 기간 내에 판문점을 통해서 우편과 전기통신을 교환 연결하되 우선은 공적 업무와 인도적 업무에 이용하도록

하고 점차 이용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과학·기술·환경 분야의 교류협력은 관련 정보자료를 교환하고 남북한 공동으로 연구 조사하며 기술협력과 기술자 전문가들의 교류를 실시하고 환경보호대책을 공동으로 수립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특허권과 상표권 등 상대측의 과학 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2) 사회 문화분야

남북한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관련 분야에서 기술 협력 등 다각적인 협력을 함은 물론 관련 정보자료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회 문화분야 관련 기관과 단체 구성원들간의 접촉과 교류를 실시하고 연구, 조사, 편찬사업 및 행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예술작품, 문화유물, 도서출판물의 교환전시회를 개최하며, 상대측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민족구성원들의 남북한간 왕래와 접촉에 관해서는 남북한이 앞으로 자유왕래를 위한 조치를 공동으로 취하기로 했다. 또한 왕래자에 대하여는 방문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과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교통, 숙식 등 편의를 제공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구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남북한을 왕래하는 주민은 자기측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하도록 하고 쌍방이 합의한 범위내에서 물품을 휴대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왕래와 접촉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실무적 문제에 대하여 앞으로 쌍방은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이밖에 사회 문화교류·협력을 실

시해 나가는 데 필요한 기구설치 및 실무적 문제, 경제, 사회, 문화 관련 국제행사나 국제기구 등에서의 협력과 함께, 해외에 공동 진출 하기 위한 대책 등을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3) 인도적 문제 해결

이산가족문제에 관해서 남북한은 이산가족 친척들의 자유왕래와 방문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왕래절차에 따르기로 하였고, 이산가족의 범위와 면회소 설치, 재결합문제, 기타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 및 실천 등을 쌍방의 적십자단체들이 맡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남북한은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하여 상대 측 지역에 자연재해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서로 도우며, 또 이산가족 가운데 이미 사망한 사람들의 유품처리, 유골이전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남북한간 합의내용은 원칙적인 면에서는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매우 의미있는 것이라 하겠으나, 실천적인 면에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의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남북한간 교통로와 통신의 연결, 남북한 주민의 자유왕래, 이산가족 재회문제 등이 실천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남북한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실천할 수 있는 세부합의서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남북교류협력 현황

남북한간에 교류협력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8년 '7·7 선언' 이후였다. 교역은 1988년 10월 7일 정부의 남북한교역 문호 개방조치가 있은 후, 그리고 주민의 왕래와 접촉은 1989년 6월 12일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마련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이 시행된 이후부터 시작되었다. 더욱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적 뒷받침이 이루어지면서 교류협력은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2년에 '남북한간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되고, 이행실천기구인 '경제협력공동위원회와 사회문화교류·협력 공동위원회'가 구성되어 큰 기대를 모았으나 북한 핵문제 등으로 인하여 남북한간 교류협력이 소강상태를 면하지 못하다가 1994년 10월 21일 미·북간에 제네바 핵협상이 타결되고, 1994년 11월 8일 정부의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가 발표됨에 따라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1996년 9월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 이후 일시적으로 대북지원 및 투자가 동결되기도 했으나 앞으로 관련분야의 확대와 함께 보다 활성화되리라고 본다.

(1) 인적교류

인적교류는 남북한의 주민이 상대측 지역을 방문하는 왕래와 남북한 및 제3국 등에서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만나거나 교신하는 접촉으로 대별된다.

남북한간 주민의 왕래와 접촉이 시작된 1989년 6월부터 현재까지 인적교류 가운데 중요한 왕래 및 접촉사례를 보면 우선 1990년 9월부터 1992년 9월까지 2년에 걸쳐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한 총리를 비롯한 고위급회담 대표들이 서울과 평양을 서로 왕래하면

서 여덟 차례의 회담을 하였고, 또 같은 해 남북한 전체주민의 성원 속에 사상 최초로 통일축구대회와 범민족통일음악회를 서울과 평양을 오가면서 개최한 바 있다. 1991년에는 우리의 국회의원들이 제85차 국제의원연맹(IPU) 평양총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판문점을 통하여 남북한을 왕래하였으며, 같은 해에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제13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처음으로 남북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등 남북 사이에 의미있는 교류협력사업이 이루어졌다. 또 1992년에는 경제계 인사들을 비롯하여, 종교계, 여성계 등 각 분야의 인사들이 남북을 왕래하거나 제3국에서 접촉하였다.

1993년 이후에는 중국 등 제3국에서 이산가족들의 북한거주 가족 상봉이 늘어나는 가운데, 재외국민(영주권자 및 장기체류 허가자)들의 제3국을 경유한 북한 왕래가 증가하고 있다. 1994년 11월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조치' 이후에는 우리 기업인들의 북한 방문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남북한 주민의 왕래 경로는 판문점을 통한 왕래와 제3국을 통한 왕래가 있는 바, 이제까지 판문점을 통한 왕래는 주로 당국간 회담을 위한 왕래 또는 당국의 주선에 의한 민간인들 왕래이고, 민간인들은 대부분 제3국을 통해서 왕래하였다. 남북한간 인적교류는 아직까지 당국간 합의에 의한 단체교류가 대부분이고, 순수 민간인의 개별적 교류는 극소수에 불과하여 주민의 자유왕래라는 본래의 취지에 못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남북한 왕래는 1989년 6월 12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지침 시행 이후 1997년 10월까지 남한주민의 북한방문이 신청 287건(2,696명), 승인 239건(2,468명), 성사 200건(2,203명)이며, 북한주민의 남한방문은 신청 15건(607명), 승인 14건(597명), 성사 12건(57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편 남북한 주민간의 접촉은 주로 남한주민의 북한주민 접촉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신청 7,314건

인적교류현황 : 1989.6.12~1997.10.31.

● 남한주민의 북한 방문실적

건/(명)

구 분	신 청	승 인	불 허	처리중	성 사	비 고
1989	1(1)	1(1)	-	-	1(1)	-
1990	7(199)	6(187)	1(12)	-	3(183)	-
1991	12(244)	11(243)	-	-	10(237)	-
1992	17(303)	8(257)	10(47)	-	8(257)	1(1)이월
1993	6(21)	5(19)	1(2)	-	4(18)	-
1994	12(78)	7(54)	-	-	1(12)	-
1995	66(567)	59(546)	10(32)	-	53(539)	5(24)이월
1996	50(249)	35(170)	3(19)	-	28(146)	2(13)이월
1997	116(1,034)	107(991)	2(8)	21(108)	92(810)	14(73)이월
계	287(2,696)	239(2,468)	27(120)	21(108)	200(2,203)	-

● 북한주민의 남한 방문실적

건/(명)

구 분	신 청	승 인	불 허	처리중	성 사	비 고
1989	-	-	-	-	-	
1990	5(306)	5(306)	-	-	4(291)	
1991	3(175)	3(175)	-	-	3(175)	
1992	4(113)	3(103)	1(10)	-	3(103)	
1993	2(6)	2(6)	-	-	2(6)	
1994	-	-	-	-	-	
1995	1(7)	1(7)	-	-	-	
1996	-	-	-	-	-	
1997	-	-	-	-	-	
계	15(607)	14(597)	1(10)	-	12(575)	

※자료: 통일원, 『남북교류협력동향』, 제76호 ('97)

< 표 5-1 >

남북한주민간접촉실적 : 1989. 6. 12. ~ 1997. 10. 31

(연도별)

건/(명)

구 分	신 청	승 인	불 허	처리종	성 사	비 고
1989	36 (76)	21 (22)	15 (48)	-	-	
1990	235 (687)	206 (652)	29 (35)	-	62 (377)	
1991	753 (2,195)	685 (2,047)	41 (70)	-	266 (1,173)	
1992	801 (2,420)	744 (2,250)	72 (230)	-	238 (1,015)	27(78) 전년도에서 이월
1993	1,172 (2,220)	1,148 (2,182)	21 (36)	-	313 (707)	12(18) 전년도에서 이월
1994	1,338 (2,864)	1,261 (2,673)	28 (63)	-	237 (691)	15(20) 전년도에서 이월
1995	1,011 (2,769)	1,007 (2,703)	44 (108)	-	494 (1,222)	64(148) 전년도에서 이월
1996	729 (2,338)	692 (2,029)	53 (406)	-	465 (1,003)	24(106) 전년도에서 이월
1997	1,239 (2,697)	1,187 (2,586)	14 (34)	46 (86)	437 (1,053)	8(9) 전년도에서 이월
계	7,314 (18,260)	6,951 (17,144)	317 (1,030)	46 (86)	2,512 (7,241)	

(분야별)

건/(명)

구 分	신 청	승 인	불 허	처리종	성 사
이 산 가 족	3,235 (3,522)	3,214 (3,496)	1 (1)	20 (25)	991 (1,130)
경 제	2,355 (6,257)	2,271 (6,021)	71 (203)	13 (33)	1,120 (1,903)
학 술	379 (2,811)	348 (2,506)	29 (301)	2 (4)	112 (1,626)
문 화	230 (1,139)	188 (1,059)	40 (77)	2 (3)	39 (570)
체 육	126 (366)	118 (339)	6 (23)	2 (4)	29 (90)
종 교	243 (1,159)	192 (1,015)	50 (136)	1 (8)	59 (577)
언 론 출 판	201 (557)	161 (463)	37 (89)	3 (5)	31 (104)
관 광 교 통	152 (474)	143 (444)	8 (28)	1 (2)	35 (99)
과 학 환 경	139 (621)	129 (607)	9 (13)	1 (1)	28 (227)
기 타	254 (1,354)	187 (1,194)	66 (159)	1 (1)	68 (915)
계	7,314 (18,260)	6,951 (17,144)	317 (1,030)	46 (86)	2,512 (7,241)

※자료: 통일원, 『남북교류협력동향』, 제76호 ('97)

< 표 5-2 >

(18,260명), 승인 6,951건(17,144명), 성사 2,512건(7,241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남북한 주민의 분야별 접촉현황을 보면 먼저 접촉인원 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접촉을 한 것이 경제계 인사들이었고 그 다음이 이산가족, 학술계, 문화계, 종교계, 언론 출판계, 관광 교통계, 체육계 인사 순이다. 다음 접촉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이산가족들의 접촉 건수가 가장 많았고 경제계, 학술계, 문화계, 체육계, 종교계, 언론·출판계, 관광·교통계 인사 순이다.

(2) 물적교류

1988년 10월부터 시작된 남북한간 교역⁹⁾은 정부의 노력과 민간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및 북한의 경제난 타개를 위한 실리적 목적 때문에 비록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 형태이기는 하지만 인적교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다.

남북한간에 교역이 시작된 이후¹⁰⁾ 1997년 10월까지 교역실적은 통관기준으로 15억 14,238천 달러에 이르렀다. 이 중에서 북한으로부터 반입액은 12억 31,189천 달러인 데 비해 반출액은 2억 83,049천 달러에 불과하여 반입액이 반출액의 약 4.3배가 되는 등 지금까지 남북교역은 반입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이 남북한 교역이 극심한 불균형을 나타내는 이유는 북한의 외화부족과 우리 제품이 북한으로 반입될 때 이것이 사회개방의 유발요인으로 작용 할 것을 북한 당국이 두려워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남북교역의 연도별 추세를 보면, 1988년 교역이 시작된 이래 1990년까지 3년간은 그 실적이 저조하다가 1991년에는 전년에 비

9) 1988년 10월 7일에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우리 민간상사가 간접교역 형태로 군사물자를 제외한 남북 물자를 반출 반입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남북한간 교역 허용조치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였다.

10) 남북한간에 최초로 물자가 교류된 것은 1984년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북한의 수재물자인 쌀, 천, 시멘트, 의약품 등이 판문점과 인천, 북평항을 통해서 우리측에 전달된 것이었다.

해 8배 이상 급신장하였다. 그 이유는 우리측이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을 제정·시행하면서 정부와 민간기업이 남북교역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며, 한편 북한으로서는 경제난이 더욱 심화된 데다가 주요 무역상대국인 러시아 및 동구권 국가들과 무역규모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또 1992년에는 남북기본합의서의 발효 등으로 교역액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북한의 핵문제, 간첩단사건 때문에 교역액이 1억 73,426천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보다 약 56%밖에 증가하지 못했다. 1993년에는 전년보다 약 7% 증가하는 데 그치고, 1994년도 전년보다 약 4% 증가하는 데 그쳤다. 1995년에도 전년보다 무려 50% 이상 증가한 2억 87,290천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1996년에는 2억 52,037천 달러로 전년보다는 감소했으나 1997년에는 10월 말까지 2억 76,890천 달러를 기록해 남북대화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남북교역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북교역은 대부분 간접교역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¹¹⁾ 간접교역의 결함을 고려하여 우리는 남북한간 직교역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북한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이후에는 남북한 업체간에 직교역을 추진한 사례도 있다. 특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가 발효된 이후에는 직교역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우리 기업의 해외현지법인이나 해외지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직교역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사실상 우리 기업과 북한 업체간의 직교역이지만 서류상으로 간접교역의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최근 남북한간에는 위탁가공형태의 교역이 매년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위탁가공교역이란 생산과정의 일부를 북한의 업

11) 간접교역의 중개자로는 무관세구역(無關稅區域)이며 중국상사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홍콩이 가장 많고, 일본, 싱가포르, 중국 등도 활용되고 있다.

남북한 교역현황(통관기준) : 1988.10~1997.10.

(금액: 천 달러)

연도	반 입			반 출			합 계		
	건수	품목수	금액	건수	품목수	금액	건수	품목수	금액
'89	66	24	18,655	1	1	69	67	25	18,724
'90	78	21	12,278	4	3	1,187	82	24	13,465
'91	300	50	105,722	23	17	5,547	323	67	111,269
'92	510	81	162,863	63	24	10,563	573	105	173,426
'93	601	77	178,166	97	21	8,425	698	98	186,591
'94	708	83	176,298	267	42	18,248	975	125	194,546
'95	976	99	222,855	1,668	90	64,435	2,644	189	287,290
'96	1,475	125	182,399	1,908	102	69,638	3,383	227	252,037
소계	4,714	233	1,059,236	4,031	194	178,112	8,745	427	1,237,348
'97.1	155 (86)	40 (32)	11,219 (10,457)	120 (76)	20 (23)	4,388 (2,639)	275 (162)	60 (55)	15,607 (13,096)
2	126 (91)	34 (35)	7,954 (12,982)	188 (167)	24 (19)	11,612 (4,832)	314 (258)	58 (54)	19,566 (17,814)
3	126 (104)	33 (39)	19,175 (18,798)	105 (202)	28 (40)	4,359 (9,909)	231 (306)	61 (79)	23,534 (28,707)
4	140 (90)	49 (36)	29,494 (10,151)	184 (196)	17 (19)	7,893 (5,775)	324 (286)	66 (55)	37,387 (15,926)
5	159 (122)	49 (32)	14,345 (14,196)	296 (130)	27 (21)	11,486 (3,804)	455 (252)	76 (53)	25,831 (18,000)
6	157 (106)	42 (37)	14,870 (15,645)	181 (212)	21 (25)	8,647 (7,149)	338 (318)	63 (62)	23,517 (22,794)
7	181 (163)	49 (38)	19,347 (16,379)	361 (272)	29 (25)	17,231 (11,127)	542 (435)	78 (63)	36,578 (27,506)
8	183 (140)	44 (45)	16,846 (18,493)	136 (129)	38 (27)	9,810 (8,478)	319 (269)	82 (72)	26,656 (26,971)
9	197 (152)	49 (44)	18,802 (18,655)	221 (131)	27 (22)	21,811 (5,311)	418 (283)	76 (66)	40,613 (23,966)
10	155 (152)	51 (49)	19,901 (18,355)	146 (157)	23 (21)	7,700 (3,540)	301 (309)	74 (70)	27,601 (21,895)
소계	1,579 (1,206)	134 (115)	171,953 (154,111)	1,938 (1,672)	110 (90)	104,937 (62,564)	3,517 (2,878)	244 (205)	276,890 (216,675)
합계	6,293		1,231,189	5,696		283,049	12,262		1,514,238

※자료: 통일원, 『남북교류협력동향』, 제76호 ('97)

※주 : 1) ()는 '96년 동기실적임.

2) '95년 대북 쌀 지원(150,000톤, 237,213천 달러)을 제외한 수치임.

3) 품목수 소계는 중복되는 품목으로 인해 누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표 5-3 >

체에게 위탁하는 형태의 교역을 말한다. 이 중에서도 초보적인 형태가 임가공교역인데, 이는 북한 업체에게 원 부자재(原副資材)를 공급하고, 북한 업체에서는 노동만을 제공하여 노임을 취하고 제품을 만들어 보내오는 형태의 교역인 것이다. 이와 같은 임가공교역은 1991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임가공품목은 대부분 봉제품이지만 컬러TV, 자동차배선, 기계류설비 등으로 그 품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북한과 임가공교역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업체에서는 봉제품에 관한 한 북한 노동자들의 기술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과 임가공교역이 활발하게 추진된다면, 남북한 합작투자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바람직한 교역형태라고 할 수 있다.

위탁가공교역은 1997년 10월 현재 엘지상사, 삼성물산(주), (주)대우 등 59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 남북교역의 품목수는 반입품목이 134여개에, 반출품목은 약 110여개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교역품목구조를 보면 북한으로부터 반입품목은 철강, 금속류(금괴, 아연괴, 은괴 등)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농수산물, 한약재 등 주로 1차상품과 중간 원자재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1993년부터 반입품목 중에 봉제품인 섬유류가 늘어났는데 이는 임가공교역의 결과이다. 한편 북한으로의 반출품목은 섬유류, 화학제품이 많으며, 기타 농수산물, 기계류, 철강류, 전기전자제품 등이 있다. 반출품목에서도 1993년부터 섬유류가 급증했는데, 이것도 임가공교역을 위한 봉제품의 원 부자재 반출의 증가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교역품목구조가 남북한의 산업구조를 반영하여 상호 보완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나, 북한측으로서는 이를 그대로 발전시킬 경우 남북한간의 산업구조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여 남북교역은 원료는 원료대로,

남북한 위탁가공교역현황(승인기준) : 1989.10.~1997.10.

(금액: 천 달러)

년도	반 입		반 출		합 계	
	금 액	위탁가공	금 액	위탁가공	금 액	위탁가공
'89	18,655	-	69	-	18,724	-
'90	12,278	-	1,187	-	13,465	-
'91	105,722	-	5,547	-	111,269	-
'92	162,863	638	10,563	200	173,426	838
'93	178,166	2,985	8,425	4,023	185,591	7,008
'94	176,298	14,321	18,248	11,342	194,546	25,663
'95	222,855	21,174	64,435	24,718	287,290	45,892
'96	182,399	36,238	69,638	38,154	252,037	74,402
소계	1,059,236	75,356	178,112	78,447	1,237,348	153,803
'97.1	11,219 (10,457)	2,475 (2,278)	4,388 (2,639)	2,165 (1,506)	15,607 (13,096)	4,640 (3,884)
2	7,954 (12,982)	2,746 (3,829)	11,612 (4,832)	2,603 (3,049)	19,566 (17,814)	5,349 (6,879)
3	19,175 (18,798)	3,112 (4,283)	4,359 (9,909)	1,179 (2,701)	23,534 (28,707)	4,291 (6,984)
4	29,494 (10,151)	2,601 (1,762)	7,893 (5,775)	3,961 (4,837)	37,387 (15,926)	6,562 (6,599)
5	14,345 (14,196)	2,152 (678)	11,486 (3,804)	5,848 (3,338)	25,831 (18,000)	8,000 (4,016)
6	14,870 (15,645)	3,239 (939)	8,647 (7,149)	3,941 (6,660)	23,517 (22,794)	7,180 (7,595)
7	19,347 (16,379)	5,224 (3,058)	17,231 (11,127)	6,161 (5,394)	36,578 (27,506)	11,385 (8,452)
8	16,846 (18,493)	4,601 (2,904)	9,810 (8,478)	2,156 (2,357)	26,656 (26,971)	6,757 (5,261)
9	18,802 (18,655)	7,003 (6,756)	21,811 (5,311)	1,808 (1,544)	40,613 (23,966)	8,811 (8,300)
10	19,901 (18,355)	5,032 (5,181)	7,700 (3,540)	2,534 (2,622)	27,601 (21,895)	7,566 (7,803)
소계	171,953 (154,111)	38,185 (31,668)	104,937 (62,564)	32,356 (34,109)	276,890 (216,675)	70,541 (65,777)
총계	1,231,189	113,541	283,049	110,803	1,514,238	224,344

※자료: 통일원, 『남북교류협력동향』, 제76호 ('97)

※주 : ()는 '96년 동기실적임.

< 표 5-4 >

제품은 제품대로 각각 반입 반출에 있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이 원료와 제품을 구별하여 인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면 남북교역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북교역이 각기 남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다르다. 우리의 전체 무역량에 비해서 남북한간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미하지만, 북한의 총무역규모로 보아서는 남북한간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이 경제난의 타개를 위해서 남북교역에 적극적일 것이라는 점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남북교역에 참여하는 우리 업체는 초창기에 대기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1990년부터 차츰 중소기업의 참여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남북교역이 추진되어 오는 과정에서 남북한의 경제체제 차이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점, 북한의 외화 및 교역 대상물품의 부족, 분쟁해결장치 등 제도상의 미비점 등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개방정책으로 과감하게 전환하고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남북교역에 관한 세부부속합의서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남북교역이 직교역으로 전환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3) 협력사업

대북 경제 개방조치 이후 남북한간의 교역이 추진되어 성과를 보임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북한지역투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으나, 북한 핵문제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됨으로써 협력 사업을 추진 할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제네바 미·북 핵협상 타결('94. 10. 21)로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됨에 따라 정부는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를 발표('94. 11. 8)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994년 12월 1일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과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 지역 사무소 설치에 관한 지침을, 1995년 6월 28일에는 대북 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 관리지침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에 따라 경제교류와 협력이 꾸준히 증진되어 1995년 6개 기업, 1996년 4개 기업, 1997년 16개 기업 등 총 27개 기업이 남북경제 협력사업자로 승인을 받았다. 이 중 실제로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은 (주)대우¹²⁾, (주)태창, (주)녹십자, 한국전력(주), 한국통신(주), 외환은행 등 6개 기업이며, 나머지 21개 기업은 현재 북한측과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이다.

한편, 사회문화 분야에 있어서는 1991년 4월 일본에서 개최된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같은 해 6월 포르투갈에서 개최된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남북한단일팀을 구성하여 출전한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남북한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사안별로 공동보조를 취해 왔다. 남북한은 '한글의 로마자 적기를 기계로 하자는 남북한모임' 5차회의('92. 6. 16~6. 17, 파리)에서 한글의 로마자표기 국제표준화에 합의하였다. 이것은 남북한이 한글의 로마자 표기단일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공동대응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또한 남북한은 제6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92. 8. 26~9. 3)에서 동해 명칭개칭안을 공동제안함으로써 유엔 산하 국제기구에서 처음으로 공동보조를 취하였다.

12) (주)대우의 협력사업을 살펴보면, 업종은 셔츠 블라우스, 재킷, 가방 등 세 개 사업이며, 투자규모는 512만 달러이고, 투자유형은 합영이다.

제3절 남북간의 주요 현안문제

1. 대북 경수로지원사업

1993년 3월 북한이 핵비확산조약을 탈퇴함으로써 북한 핵문제는 국제적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교류와 접촉을 통한 남북관계의 진전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 '94년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대북 경수로 지원입장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결정은 북한의 핵동결 대신 경수로 발전소를 건설해 주기로 약속한 미·북 제네바합의로 이어져 북한 핵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제네바 합의('94. 10. 21)는 북한의 핵시설 동결과 궁극적으로 이를 해체함으로써 핵개발을 저지하고 나아가 경수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북한개방과 남북교류협력의 돌파구를 열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경수로사업의 재원조달과 공급을 담당할 국제 컨소시움인 한·미·일 3국 주도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설립('95. 3. 9)하였다. 현재 KEDO는 한·미·

일 · EU로 구성된 집행이사회와 핀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인도네시아, 칠레, 아르헨티나, 폴란드 등이 일반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수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통일원 산하에 동 사업을 전담하는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을 설치('95. 1. 23)하였다. 1995년 6월에는 미·북 쿠알라룸푸르 합의에서 한국의 중심적 역할 수행과 한국형 경수로 공급 원칙이 합의되었으며 이러한 바탕 위에서 1,000MWe급 경수로 2기를 북한에 제공하는데 따르는 제반 조건 및 범위 등을 규정하는 '경수로공급협정'이 KEDO와 북한간에 체결('95. 12. 13)되었는 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 공급협정 요지 ◆

구 분	주 요 내 용
공급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의 냉각재 유로를 가진 1,000MWe 용량의 가압경수로 2기 ▷ 기타 부지내 도로, 모의 훈련대 등 경수로 원전에 필수 불가 결한 사항
상환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호기 별로 3년거치 기간을 포함, 20년간 무이자로 연 2회 분할 상환
인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년을 목표로 인도일정 수립 ▷ 북한은 경수로사업 진전에 따라 핵동결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관련시설을 해체
이행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DO가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와 상업공급계약체결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율적인 통신·통행의 보장 ▷ KEDO인원에 대한 신변안전과 재산보장 ▷ KEDO인원에 대한 세금·관세 면제 등 편의 보장 등

〈 표 5-5 〉

또한 1996년 4월부터 경수로 공급협정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후속 의정서 협상이 KEDO와 북한간에 개최되었다. 그 결과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통행」「통신」「부지인수」「서비스 이용」「미지급시 조치」 등 6개 의정서가 체결되었다. 공급협정에서 상정하고 있는 후속 의정서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앞으로 KEDO와 북한은 「품질보장」「훈련」「인도일정」 등 6~7개의 잔여 의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1997년 12월 현재 체결된 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KEDO-북한간 합의된 의정서 현황

의정서명 (발효일)	주 요 내 용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의정서 (96.7.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DO는 유엔 등 국제기구와 유사한 특권·면제 향유 ▷ KEDO 계약자 인원은 북측의 체포·구금, 재판 관할 및 집행으로부터 원칙적 면제
『통행』의정서 (96.7.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개시에 필수적인 통행로 확보 ※ 사업 진전에 따라 효율적인 통행로 추가·조정 ▷ 사업의 본격 개시전까지 단축된 경제적 항공로(남북직항로) 개설 ▷ 해로는 바지선 및 항로(동해기점 153마일)와 인원·물자수송을 위한 항로(동해기점 182마일) 확보
『통신』의정서 (96.7.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EDO의 독자적 통신수단 설치 및 사용 ※ 독자위성통신은 착공후 2년 시점부터 설치 운영 ▷ 사업초기에는 북측 통신수단으로 제3국 경유 연결 ▷ 부지 현장과의 문서 수발 및 우편 서비스 보장
『부지인수』의정서 (97.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범위 확정(270만평) 및 부지 인도절차 규정 ▷ 부지의 배타적 사용권한 및 자유로운 부지접근 확보
『서비스 이용』의정서 (97.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인력, 물자, 서비스제공에 대한 합리적 가격 보장 ▷ KEDO-북한간 합의된 일반원칙에 따라 사업당사자간 계약 체결
『미지급시 조치』 의정서 (97.6.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정 지급일 미지급시 벌칙금리 적용 ▷ 지급일로부터 30일 후 경과후에는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미지급잔액 전부(또는 일부)"를 갚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기한이익상설』 조항 발동 가능

〈 표 5-6 〉

1997년 4월부터 의정서 이행과 관련된 세부절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세 차례의 실무협상이 개최되어 통행·우편·항공·의료 등 19개 분야에 대한 합의서를 채택하게 되었다. 이로써 공사개시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초기부지준비 공사에 소요되는 장비와 인력을 경수로 사업장에 투입하는 등 제반 준비가 마무리되어 1997년 8월 19일 함경남도 금호사업 부지에서 착공식을 개최하게 되었다.

초기부지준비 공사는 1여년에 걸친 약 4,500만 달러 규모의 공사로 공사 기간중 우리측 인력 약 200여명이 부지에 상주하게 된다. 초기준비공사는 주로 부지정지 작업을 실시하면서 임시사무소·숙소·식당 건설을 비롯한 유류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공사로 한·미·일간 재정분담협상이 타결되면 바로 본공사로 이어지게 된다.

대부 경수로 지원사업이 비록 KEDO라는 국제기구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남북관계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경수로 사업의 테두리내에서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현재 경수로 사업 부지로 건설인력과 물자를 운송하는 데 두 가지의 통행로가 합의되어 있다. 동해를 통한 해로와 북경을 경유하여 항공기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기초굴착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2년 정도 후에는 남북한간 직항로도 개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경수로 사업 부지와 남한간에 통신 및 우편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통신망은 일본을 경유, 전용회선 8회선을 구성하여 통신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 2년 후에는 무궁화위성을 통한 독자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합의되어 있다. 한편 우편물은 북경을 경유하여 국내로 배달되고 있으며, 편지나 소포가 부지에서 국내까지 도착하는데 약 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셋째, 지난 7월 2일 19개 분야에 걸친 합의서의 채택은 남북간 분야별 공동협력을 열어가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예컨데 우리측 건설인력이 금호현장에서 부상을 입게될 경우 북측 병원에서 남북의사간 공동진료도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분야별 합의는 앞으로 남북관계가 활성화될 경우 원용 가능한 선례가 될 것이다.

넷째,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함경남도 금호지구에서 「남북 화합의 장」을 여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앞으로 270만평의 경수로 건설부지에서 7~8년에 걸쳐 수많은 남북 근로자가 함께 일하게 된다. 이는 분단 반세기의 대결구도가 지속되는 동안 쌓여온 불신의 벽을 허물고 상호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경수로 발전소가 완공되면 북한의 전력난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오늘날 북한은 극심한 에너지난으로 공장 가동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 경수로 지원은 장기적으로 통일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금호지구 경수로 사업장에 마련된 남북화합의 장이 전반적 남북교류·협력의 물꼬를 터 진정한 민족공동발전의 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2. 4자회담

현재 한반도의 평화는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에 의해 유지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전협정은 본질적으로 미완의 평화체제로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4조 60항에 규정되어있다.

이같은 취지에 따라 1954년에 한반도의 평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네바 국제회의가 개최된 바 있었고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 1992년 2월 19일 기본합의서와 후속협상에서 현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할 때까지 그 효력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면서 불

가침에 대해 합의를 한 바 있다.¹³⁾

그러나 북한은 이같은 남북한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대미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면서 정전협정의 무실화를 통해 정전체제 자체를 파괴하려 했다.

북한은 1993년 4월 중립국 감독위원회 체코 대표단을, 1995년 2월에는 중립국 감독위원회 폴란드 대표단을 축출하였다.

또한 1994년 5월에는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를 일방적으로 설치하고 12월에는 중국으로 하여금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대표단을 소환토록 했다. 특히 1996년 4월에는 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변인 명의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유지·관리 임무포기를 선언하고 판문점 공동경비 구역내에 무장병력을 투입하는 등 군사적 긴장 상태를 고조 시켰다. 그로 인해 지금까지 불완전하나마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시켜 온 정전협정의 기능이 상실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대미 평화협정 체결의 중간조치로서 미국과 잠정협정 체결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요컨대, 북한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군사긴장의 책임이 있고 미군이 남한에 남아 있기 때문에 평화가 파괴된다는 논리에 기초하여 대미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면서 당장 쌍방간에 평화협정체결이 어렵다면 잠정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이다.

원래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협정을 남북한간에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1974년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면서 북한과 미국 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태도를 바꾼 것이다. 그 후 지금까지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체결 주장은 끊이지 않고 있다.¹⁴⁾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정전체제 파괴행위와

13) 제1장 제5조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여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루어질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고 되어 있다.

14) 최고인민회의 3기 1차회의('62. 10)에서는 남북한간의 평화협정을 주장하고 최고인민회의 5기 3차회의 ('74. 4)에서는 미북간 평화협정을 주장하였다.

대미 평화협정체결 주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왔다. 그 결과 1996년 4월 16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정부는 남북한과 미·중이 참가하는 4자회담을 제안하게 되었다. 그동안 4자회담을 위해 남·북한과 미국이 참가하는 공동설명회('97. 3. 5), 후속협의('97. 4. 16)와 함께 여러 차례 실무접촉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난 6월 30일 차관보급 3자협의 본회담 개최를 위한 예비회담을 갖기로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세 차례(8. 5, 9. 18, 11. 21)에 걸쳐 예비회담이 진행되었다.

1차 예비회담에서 본 회담 개최시기와 장소, 대표급,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했으나, 의제 문제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다가 제3차 예비회담에서 우리측 안을 받아들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제반문제'로 합의하였다. 이같은 예비회담의 합의에 따라 1997년 12월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1차 본회담이 개최되었으나 북한측의 선의제 세부화 주장으로 구체적인 토의에 들어가지 못한 채 차기회담 개최 일자와 특별소위원회 구성에만 합의하고 종료되었다.

4자회담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상하기는 어렵다. 회담의 성격에서 남과 북은 이해를 서로 달리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남북한 당사자의 주도와 미·중의 보장 형식으로 한반도에서 실효성있는 평화체제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북한은 대미평화협정과 주한미군철수에 목적을 두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회담 분위기 조성 조건으로 회담참가국간의 지위 평등 문제를 제기하고 미국의 대북조치 완화, 식량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국들은 물론 세계 모든 국가들이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4자회담의 전망이 어둡다고 할 수 없다. 북한도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외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면 이같은 국제사회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

3. 대북식량지원

북한의 식량난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영농체계의 비효율성, 비료와 농약 부족 등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외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북한 식량문제의 본질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우리의 대북식량지원은 북한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하고 북한의 식량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되는 방향에서 추진하면 바람직할 것이다.

정부는 북한식량난의 본질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침에 따라 대북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 첫째, 민간차원의 지원을 남북 적십자간의 합의에 따라 한적을 창구로 질서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둘째, 정부차원의 지원은 4자회담 등에서 남북한간 대화를 통해 북한 식량문제의 근원적 해결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셋째, 국제차원에서도 국제기구의 대북지원호소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력에 상응한 규모로 참여한다는 것이며 이와 함께 분배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군사비 감축등 식량난 해소를 위한 북한의 자구적 노력을 촉구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그동안 우리의 대북지원은 정부차원, 민간차원, 국제기구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지원규모는 1995년 6월부터 1997년 11월 30일까지 총 2억 8,676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 중 정부차원에서는 '95년에 쌀 15만톤을 무조건 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총 2억 6,237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민간차원에서는 대한적십자사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총 2,428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한편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규모는 총 3억 8,950만 달러에 이르는데 그 중 UN 기구를 통해서는 2억 3,459만 달러, 국제적십자사 연맹을 통해서는 2,072만 달러, 개별국가와 국제 NGO의 지원은 1억 3,419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우리는 대북식량지원 과정에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다. 1997년 5월 26일 북경에서 있었던 남북적십자간 접촉에서 남북적십자간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그 동안 국제적십자사 연맹을 통한 간접지원방식에서 남북한간 직접전달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남북적십자간 구호물자 전달에 관한 합의서, 남북한간 구호물자의 직접전달, 수송경로와 대상지역 확대, 지원주체 명기 및 지정기탁 허용 등 그 동안 우리 민간 단체들이 요구한 내용을 대부분 수용했다.

정부는 북한의 식량문제가 일회성 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농업분야에서 여러 가지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재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입장은 여론조사 결과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1997년 통일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무조건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18.9%, 「지원할 필요가 없다」가 8.7%, 「남북관계 현실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 72.3%로서 신중론이 지배적이다.

이제 북한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은 막대한 군사비와 정치 선전비를 절감하여 외국에서 식량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¹⁵⁾ 그리고 농업체제를 개혁하여 영농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사회주의적 영농정책을 개선하여 농자유전의 이치에 맞게 농민에게 토지를 분배하여 생산의욕을 고취,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15) 쌀 100만톤 구입비는 약 4억3천만 달러 (국제가 -톤당 430달러), 옥수수 100만톤 구입비는 약 1억5천만 달러 (국제가 -톤당 150달러)

참고문헌

1. 남북회담사무국, 『남북대화』, 제46호~64호.
2. 민족통일연구원, 『김일성사후 북한의 정책전망과 우리의 통일방안』, 1994.
3. —————, 『북한의 식량지원 요청배경과 대북한 식량지원 방향』, 1995.
4. —————, 『북한 핵문제의 전개과정 분석 및 전망』, 1993.
5. —————, 『핵관련 북한의 협상전략전술 분석』, 1994.
6. —————, 『한반도평화체제 구축방안 모색』, 1995.
7. —————, 『나진 선봉지대 개발계획과 남북한 경제관계 전망』, 1994.
8. —————, 『북한경제개혁의 최적방향 연구』, 1996.
9. 통일원, 『남북교류협력 관계 법규집』, 1994.
10. ———, 『남북교류협력 법 제도 실천과제 연구』, 1995.
11. ———, 『남북교역사례집(Ⅳ)』, 1995.
12. ———, 『남북기본합의서 해설(I)(Ⅱ)』, 1992.
13. ———, 『남북한 교류협력 실무안내』, 1992.
14. ———, 『남북한 교류협력동향』, 1996.
15. ———, 『남북한 통일 대화 제의 비교』, 1993.
16. ———, 『통일백서』, 1997.
17. ———, 『화해협력시대의 개막과 남북한 관계』, 1992.
18. 정부락,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 및 대책방향』, 1997,
미주통일문제포럼 주제발표문, pp. 14-17.

VI. 통일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제11절	189
통일 조국의 미래상	
제12절	195
분단국 통일의 교훈	
제13절	205
통일 대비 고제	

이 장의 요점

- 통일 과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통일이 지향해 나갈 목표(통일 조국의 미래상)와 정책 추진의 기조(통일 원칙과 과정, 방법) 등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굳건히 하는 일이 중요하다.
 - 우리 모두가 바라는 통일 조국의 미래상을 현실로 구현해 나감에 있어 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이룩한 다른 분단국의 역사적 경험과 제기된 문제점들을 고찰해 봄으로써 교훈을 얻을 수 있다.
 -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서둘러야 할 기본 과제는 우리 사회 내부에서 우선 통일을 촉진하고, 이를 큰 혼란과 충격없이 맞이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 나감과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력증진 등 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통일과업의 주역들에게 필요한 민족공동체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사전에 심어주고, 통일시대에 바람직한 태도와 가치관을 배양하는 통일대비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일이 매우 긴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 통일은 언제라도 올 수 있는 만큼 그 대비는 빠를수록 좋다. 통일은 민족의 진운은 물론 내 개인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 모두 자신이 몸담고 있는 분야에서 통일역량을 키워 나가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

제1절 통일 조국의 미래상

남과 북이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족으로 다시 통합될 때 우리가 건설해 나갈 통일된 조국의 이념과 체제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이같은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통일된 조국의 미래상을 미리 그려보는 일이며, 통일과업의 목표를 확실히 설정하는 일이 된다.

통일은 단순히 남과 북이 분단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민족 사회를 건설해 가는 창조적 과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민족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추구해 나갈 통일의 미래상이 분명해야 이와 관련된 모든 정책과 운동이 뚜렷한 목표를 가질 수 있고 이것은 구체적이면서도 역동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준비하는 일에서 불필요한 혼란이나 민족적 역량의 낭비를 방지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의 가능성이 단순한 염원의 차원이 아닌 현실적 문제로 등장하게 된 오늘에 와서 통일 준비와 추진 운동의 지표가 되는 통일의 목표(통일 국가의 미래상)를 좀더 구체적으로 정립하여 제시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통일 조국의 미래상을 7천만 민족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며, 개개인의 자유,

복지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족공동체를 토대로 건설되는 1 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형태의 통일 민족국가로 밝히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통일 국가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야 할 것인가?

1. 통일 한국의 기본이념

우리가 앞으로 건설할 통일 국가는 근본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보편적으로 추구해 온 기본 가치들을 구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 한국의 이념 체계는 무엇보다도 ‘인간 존엄성’의 보장이란 기본 가치의 추구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의 존엄성이란 주관적으로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소유한다는 것이며, 객관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 한국이 이같은 인간 존엄성의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인류가 근대국가의 발전과 함께 추구해 온 ‘자유’, ‘평등’, ‘복지’,라는 보편적이며 핵심적인 가치를 함께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통일 국가가 추구해 나갈 체제 이념적 기본 가치는 일차적으로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해 나갈 개인의 자아실현에 두어져야 하는 것이다.

자유·평등·복지라는 세 가지 기본 가치들을 함께 구현해 나가는 데 가장 효과적인 체제이념은 현재로서 자유민주주의가 있을 뿐이다. 자유와 평등의 조화,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의 균형,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의 결합,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절충 등으로 표현되는 자유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인류가 개발해 온 어느 정치이념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이 지난 70여 년에 걸친 사회주의의 역사적 실험을 통하여 이미 입증되고 있다.

체제이념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는 평등이라는 개념을 공유하고 있지만, 자유민주주의는 자유 속에서 평등을, 사회주의는 평등을 통한 자유를 추구하는 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는 평등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압제로 인해 개인적 자유가 제약될 뿐만 아니라 결국 최우선 가치로 추구하는 평등이란 이상마저 파괴하고 만다. 평등의 완전한 추구는 자유는 물론 평등의 파괴로 귀결되고, 자유의 완전한 추구 역시 평등은 물론 자유의 파괴로 이어지므로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자유민주주의야말로 혼존하는 어떠한 이념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잘 실현시킬 수 있는 정치이념이라 하겠다.¹⁾

자유민주주의는 도덕적으로 집단이나 계급에 앞서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존중하는 정치이념이다. 또한 정치적으로 투표권, 참정권, 정부 선택권 등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이념인 것이다.²⁾

통일 국가가 지향해 나갈 또 하나의 기본 이념은 ‘민족주의’이다. 남북 통일의 정당성은 무엇보다도 분단되어 있는 한민족의 정치적 공간과 문화적 공간을 일치시키는 통일된 민족 국가의 형성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대적 민족 국가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민족주의가 통일 한국의 이념적 지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³⁾

민족주의의 개념을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독립된 근대 국가를 건설하려는 집단의식’⁴⁾으로 정의할 때, 한국 민족주의는 일차적으로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을 해소하는 통합 원리로서 작용

1) 앞의 책, pp. 92~93 참조

2) 민족통일연구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체계와 실천방향”, 1994, p. 125

3) 민족통일연구원, 『통일 한국의 정치이념』, 1994. 12, p. 51

4) 박봉식, “통일이념으로서의 민족주의”, 민족통일연구원 개원 2주년 기념 국내 학술회의 발표 논문집, 1992, p. 7

한다. 또한 민족주의는 계층간·지역간·세대간 갈등을 용해시킬 수 있으므로 국민 통합과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것은 또 국민적 화합 뿐만 아니라 통일에 대비한 내부 역량을 강화시키는 기능도 담당한다.

민족주의는 또한 대외적으로 다른 민족과의 관계에서 내 민족의 이익과 입장을 내세우는 집단의식으로서, 통일 후 세계체제 속에서 민족적 독자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는 체제이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통일 민족 국가의 체제이념으로서 민족주의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의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이른바 ‘열린 민족주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세계화의 대세속에서 ‘우리 것만이 민족적인 것’이고 ‘반외 세가 곧 민족주의’라는 단순 논리에 입각한 복고적 저항 일변도의 국수적 민족주의의 추구는 민족의 장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한 것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2. 통일 한국의 분야별 체제

이상과 같은 기본적 가치와 체제이념을 각 분야에서 구현해 나갈 통일 국가의 분야별 미래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인가?

첫째, 통일 한국이 선택할 정치체제는 국민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의회와 복수 정당 제도를 갖춘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체제가 될 것이다. 남북한 지역 갈등의 해소, 남북 주민의 자발적 참여 의식 제고, 국민의 다양한 이익 반영, 정치세력간의 이견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짜여져야 한다. 여기에는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제도, 지역대표성이 반영된 양원제 국회제도, 지방자치제, 복수정당제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통일 한국의 경제체제는 경제의 고도 성장을 통해 국민복지의 증진에 상대적으로 우월한 체제임이 입증된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통일 한국의 경제체제는 오늘과 같은 남한의 체제를 그대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독점화와 무한정한 사적 이윤 추구에서 오는 시장경제의 폐단을 국가가 정책수단으로 시정하는 수정자본주의와 같은 혼합경제체제의 성격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는 곧 복지국가를 체제 운영의 기본틀로 채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통일 한국의 사회체제는 정치·경제체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통일 한국의 정치나 경제체제가 민주적이고, 개방적이며, 인간 중심적인 체제를 지향하는 것과 같이 그 사회체제 역시 같은 기본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통일 한국의 사회는 민주적 사회이며 개방적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 중심적 가치(자유, 인권, 평등, 복지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인간 중심적 사회체제란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중심 가치로 삼아 모든 제도와 정책을 인간 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는 체제를 말한다. 이것은 개인의 입장보다 집단과 계급을 우선시하는 집단주의나 전체주의적인 체제와 근본적으로 대비되는 체제라 할 수 있다.

넷째, 통일 한국의 문화는 먼저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인본주의)로서 민족의 전통문화에 뿌리를 두는 것이어야 한다. 통일 한국은 전통문화 속에서 탈 이념적인 문화소(文化素)를 찾아내어 공통의 문화로 삼고 민족의 동질성을 추구하면서 민족문화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통일 한국의 문화는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권위주의, 관료주의, 획일주의적 문화로는 통일 후의 문화체제

가 자율성과 통합성을 유지하기 대단히 어렵게 될 것이며, 폐쇄적·
수구적 문화체제로는 다가오는 21세기 새로운 시대 상황과 국제환경
속에 민족문화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없게 된다.⁵⁾

3. 통일 한국의 국가형태

남과 북이 통일된 이후에 형성될 국가의 법적·제도적 조직형태
를 상정해 보는 것은 통일 국가의 미래상(국가체제)을 그려보는 마
지막 순서이다. 우선 통일에 이르는 '과도 단계의 모형'으로서 남북
연합체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 단계에서 선택해야 할 이상적인 국가 형태
는 7천만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며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족공동체를 토대로 건설된 민주공화국이
되어야 할 것이다.

5) 앞의 책, p. 140

제2절 분단국 통일의 교훈

2차대전 후 동서냉전체제 하에서 대립해오던 베트남, 독일, 예멘 등 3개의 국가가 통일을 성취하였다. 베트남은 1975년 북베트남이 무력으로 남베트남을 점령하여 통일을 이루었고, 방식은 다르지만 독일과 예멘도 1990년에 통일을 이루었다. 이런 통일국가들은 아직 분단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선망의 대상이지만, 오히려 통일이 늦어짐으로써 다른 통일국가의 경험을 교훈삼아 통일과정을 한결 수월히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사실 이들 국가들은 서로 다른 국내외적 상황 하에서 통일을 이루어 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사례에 속한다. 베트남은 무력통일, 예멘은 합의통일, 독일은 흡수통일의 예에 속한다. 이런 맥락에서 여기서는 베트남, 예멘, 독일의 통일과정과 통합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베트남의 사례

장기간 프랑스 지배하에 있던 베트남은 1954년 ‘제네바 협정’에 의하여 분할되면서, 북쪽은 막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체제를 세웠고 남쪽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베트남 공화국’을 수립하였

다. 분단 후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에 대하여 테러, 파괴 활동을 강화하면서 궁극적으로 남베트남을 점령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다. 대내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남베트남 '해방'을 위하여 주민들에게 혁명의식을 고취시켰다. 그리고 남베트남에 '통일전선'을 구축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는 바, 노동당원들을 남파시키고 남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던 사회주의 세력을 규합하여 1960년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 (베트콩)을 결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남베트남 전지역은 피아를 구분하기 힘든 전장으로 변하였다.

국민의 지지를 크게 받지 못했던 남베트남은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전쟁을 수행하였지만, 북베트남과 베트콩의 조직적 저항으로 인하여 수없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된다. 결국 미국은 남·북베트남 정부와 민족해방전선 대표자들과 함께 1973년 파리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 의하여 미군이 철수하였으며, 베트콩의 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이 후 크고 작은 전투행위가 지속되던 중, 1974년 '구정대공세'를 시작으로 전면전을 재개한 결과 월남정부는 붕괴되고 말았다.

북베트남이 효과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먼저 남베트남에 통일전선을 성공적으로 구축함으로써, 남베트남의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정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반면 남베트남은 끊임없는 정통성 시비와 이에 따른 탄압 정책으로 인하여 사회통합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더구나 미군이 철수함으로써 전쟁수행 능력이 현저히 약화되었으며, 만연된 사회혼란으로 인하여 국가안보에 대한 주민의식도 상당히 약화되었다.

그런데 월남정부가 무력화되자 공산당 지도부에게 예상외의 고민을 안겨 주었다.⁶⁾ 내부적으로 교통과 통신이 남북으로 연결되었

6) 전경수·서병철, 『통일사회의 재편과정: 독일과 베트남』, 서울대 출판부, 1995

고, 주민들은 친인척을 찾아서 왕래하기 시작하였다. 북쪽 사람들은 남부인들의 생활수준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었다. 남부의 문화가 책과 음악 등을 통해서 북부로 스며들기 시작했으며, 북부 주민들은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반대로 남부 사람들은 자유가 없고 경제가 열악한 북부의 상황에 대하여 회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 접한 북쪽의 정치 지도자들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으며, 통합작업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공산당 지도자들은 남북 주민에게 사회주의의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서둘러 사회주의 체제를 도입하였다. 생산수단을 국유화·집단화하였으며, 경제활동을 강력히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주요 당조직과 행정조직은 북쪽의 공산당원이 거의 독점하였다. 종교활동은 표면적으로 허용되었지만,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와 상충되는 종교적 이념은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종교도 탄압하게 되었다.

특히 남부주민을 ‘사회주의적 인간형’으로 만들기 위하여 대대적으로 사상교육을 실시하였다.⁷⁾ 사상교육은 공산당 주도로 대중동원 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우선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학생들의 사회주의 의식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성인들의 경우는 월남정부의 부당성과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주입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정치인, 군인, 관료, 교사 등 이른바 ‘특수계층’들은 수용소에 구금하여 재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방식도 비인간적이었다. 밀림 등 사회와 격리된 재교육캠프에서는 비위생적 환경, 공포심 조성, 배고픔, 의료보호의 박탈, 체형, 고문, 처형 등 심각한 인권유린이 만연되었다. 그 결과 상당수의 사람들은 통일조국을 버리고 이른바 ‘보트피플(boat people)’이 되었다.

7) 전경수·서병철, 앞의 책; 통일원(편), 『베트남 및 예멘의 통합사례 연구논문집』, 1995

2. 예멘의 사례

예멘은 사우디 반도 남쪽에 위치한 국가로서 지정학적으로 유럽-아시아-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역사적으로 장기간 외세의 지배를 받던 예멘은 남북으로 분단되고 각각 독립을 이루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북예멘에는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들어섰고 남예멘에는 맑스-레닌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주의 체제가 자리잡게 되었다.

남북예멘은 다른 분단국가들처럼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통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결과 크고 작은 전쟁을 겪었는데, 무력충돌이 있을 때마다 아랍권 국가들이 중재하여 정상회담을 갖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여기서 통일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했다. 이와 같이 무력충돌-평화협정-통일원칙 합의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던 중, 1989년 다시 정상회담을 갖고 통일헌법안을 승인하였으며, 1990년 5월 통일을 선포함으로써 일단 합의에 의하여 통일을 이루었다.

예멘이 합의에 의해서 통일을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아랍권 국가의 지속적인 중재와 소련 고르바초프의 개방·개혁 정책도 큰 힘이 되었지만, 결정적으로는 남북예멘 지도자들간 권력배분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통일조약에서 합의된 권력배분은 남북간 대등한 배분이다. 예를 들면 북예멘은 대통령과 국방장관을 맡고 남예멘은 부통령, 총리, 내무장관, 외무장관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남북예멘의 지도자들은 정치적 통합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통일 후에 대한 통합정책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정부 기구는 확대되었고 비효율적이 되었다. 그리고 관료나 군인의 명령 계통과 책임의 소재는 불명확했다.

더욱이 사회통합의 기조로 내세운 이슬람 교리에 대해 남북예멘

주민간 갈등이 노정되었다.⁸⁾ 북예멘 보수주의자들은 이슬람 율법을 ‘모든 법의 유일한 근원’으로 삼기를 바랐으며, 남예멘의 중산층들은 이슬람 율법의 불합리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일부다처제, 여성의 사회활동 문제, 음주 허용 여부 등 사사건건 대립하였다. 통일수도 사나는 정부기구의 팽창과 걸프전 이후 귀환한 해외 근로자로 인하여 인구가 폭증하였으며, 사무실 및 주택 문제, 식수 및 전력 부족으로 큰 불편이 발생하였다.⁹⁾ 이런 와중에 주민간 불신이 증가하고 갈등이 첨예화되어 반정부 시위, 노동자 파업, 주민 폭동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런 사회혼란은 경제사정의 악화에도 일부 원인이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남북예멘 정치인들이 세력파시를 위하여 사회집단들의 시위를 부추겼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 남예멘의 지도자들은 집무를 거부하고 남예멘의 수도였던 아덴으로 철수하였다.

이런 위기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1994년 남북예멘의 지도자들은 다시 회동하고 권력배분 문제 등 위기종식을 위한 평화협정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평화협정후 알비드 부통령(남예멘)이 사우디를 경유하고 아덴으로 귀향하자 살레 대통령(북예멘)은 부통령의 의도를 의심하게 되었다.¹⁰⁾ 결국 양측간 무력충돌이 벌어지고, 여기서 북예멘이 승리함으로써 재통합되었다.

예멘은 베트남과 달리 일단 합의에 의하여 통일을 달성하였지만, 결과적으로 베트남과 같이 전쟁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 셈이다. 그 이유는 곧 일반 주민은 물론이고 남북예멘의 지도자 사이에 뿐리 깊은 갈등과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8) 통일원(편), 『베트남 및 예멘의 통합사례 연구논문집』, 1995

9) 김국신, 『예멘 통합 사례연구』,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1993

10) 사우디 아라비아는 심장적으로 남예멘 출신 정치인들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남북예멘의 분열을 조장하고 있었다. 통일원, 『베트남 및 예멘의 통합사례 논문집』, 1995, p.181 참조

3. 독일의 사례

독일의 통일과정은 비교적 소상히 알려져 있다. 소련의 마지막 지도자였던 고르바초프의 ‘개혁’과 ‘개방’ 정책의 결과 동서 냉전 체제가 와해되고, 동유럽권 국가들이 독자적인 체제를 갖추기 시작함에 따라 통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독일의 통일과정이 그렇게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다른 동구권 국가와는 달리 동독의 지도자들은 소련의 정책에 의구심을 가졌으며, 개혁, 개방정책에 완강히 저항하였기 때문이다. 동독을 철권통치하던 호네커는 동독 건국 40주년 기념일 전야에 행한 연설에서 “미래는 사회주의의 것”이라고 호언하였을 정도였다.¹¹⁾

그러나 개혁을 요구하는 동독 주민의 소요가 빈발하는 가운데 개혁을 거부할 수 없었다. 동독 정권은 지도층 교체로 주민의 소요를 무마하려고 하였다. 호네커가 실각되고 크렌츠와 모드로로 지도자를 대체하였지만, 개혁과 통일을 염원하는 동독 주민의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는 없었다. 이와 같이 지도층이 재편되는 와중에 동독 주민들의 시위는 확산되었으며, 급기야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다.

동서분단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더 이상 동독이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존립하기 힘들게 되었다는 점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었다. 곧 이어 동독에 새로운 정치세력이 들어서고, 1990년 3월 동독에서 역사적인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였다. 이 선거에서 선출된 드메지어 수상을 수반으로 하는 연립정부는 서독의 콜 정부와 신속하고도 집중적인 협상을 전개하여, 통일조약을 체결함으로써 1990년 10월 3일 공식적으로 동독과 서독의 통일을 이루게 되었다. 이 조약에서 서독의 법체계를 동독지역에 확대 한다는 원칙을

11) 통일원, 『독일통일백서』, 1994, p. 5

세움으로써 서독이 동독의 ‘신연방주’를 흡수하는 형태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낳았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독일통일은 문자 그대로 역사적 사건이었다. 수십만의 인파가 운집하였다. 이들은 망치로 벽을 부수고 서로 얼싸안고 환호성을 터트렸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통일을 이루었다는 기습뿌듯한 만족감과 민족적 자부심을 느꼈다. 독일정부에서 발간한 「독일통일과 신연방주 재건에 관한 자료집」에는 통일 선포식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베를린 제국의사당 건물앞에 흑, 적,황색의 독일 국기가 나부끼는 가운데 수십만명의 인파가 참석한 통일축제가 성대하게 열렸다.”¹²⁾

그러나 현실은 냉혹한 것이었다. 불법행위 청산작업, 재산권 문제, 붕괴된 사회주의 경제의 현실 등 산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파탄지경에 이른 동독 경제를 재건하기 위하여 천문학적 액수의 ‘통일비용’이 큰 문제가 되었다. 대부분의 기업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가격구조가 심각히 왜곡되어 있었다. 기간설비도 낙후되어 있었다. 사회주의식 완전고용은 허울 뿐, 모든 기업,행정기관에 잠재실업이 숨길 수 없는 사실로 판명되었다. 또한 근로자 1인당 생산성이 서독의 30%도 채 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노력에 의하여 동독경제가 상당히 개선됨으로써 통일의 효과가 점차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1992-3년부터 서서히 회복기에 들어선 동독경제는 이 후 실질국내총생산이 7~9%사이에서 증가하였다. 일인당 소득수준으로 보면 1991년에 서독의 47%였던 것이 1993년에는 62%로 상승했으며 지금은 80%를 상회하고 있다. 물론 이런 성장이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성장이냐 혹은 서독으로부터 재정이전을 통하여 이루어진 성장이냐에

12) 통일원, 「독일통일백서」 1994, p. 15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¹³⁾ 통일 초기에 우려되었던 경제문제가 상당히 해결되고 또 하나의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고 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독일이 해결해야 될 문제로 사회적 갈등을 들 수 있다. 왜냐하면 제도적 차원의 통일에 전력한 결과 사회통합 즉, 마음과 마음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아직도 ‘1국가, 2사회’ 문제로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통합 위기의 증표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선 통일이후 실시된 첫 총선(‘94) 결과 집권 기민-자민연정이 승리하기는 하였지만, 구동독 공산당의 후속정당인 민주사회당(민사당)이 약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식조사 결과도 동서독주민간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 즉, 편견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독인들은 서독인들을 wessis라고 부르고 서독인들은 동독인들을 ossis라고 서로를 비하하여 부르고 있다. 다시 말해 서독인들은 동독인보다 자신들이 우월하다고 느끼며 통일초기보다 동독인들을 훨씬 더 비판적으로 본다. 반면 동독인들은 서독인들을 ‘오만하다’고 생각하며, 자신들은 사회적이며 정직한 생활을 한다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범죄도 증가하였다. 서독에서는 소매치기, 강도 등 일반범죄가 20% 가량 증가하였으며, 동독 특히 드레스덴에서는 통일전보다 거의 4~5배 증가하였다.¹⁴⁾ 또한 젊은층 극우세력이 등장함으로써 옛 나치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조짐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는 폴란드 관광객들을 습격하고, 베트남 출신 근로자를 폭행하며, 유태인 묘를 훼손한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주민간 갈등과 사회적 문제는 독일정부가 제도적 통일에 치중한 나머지, 사회통합에 대한 대비가 미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3) 전성우, “동서독 통일과정의 사회학적 함의,” 김명수·이언택 외, 『북한사회의 이해』, 한양대출판원, 1997

14) 김영윤·여인곤·황병덕, 『독일통일의 분야별 실태 연구』,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1992.

4. 분단국 통일의 교훈

우리의 통일이 다른 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기존 통일국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었으며, 그 문제점 또한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통일은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구체적 사건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통일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야 하며, 무력에 의한 통일을 경계해야 한다. 베트남의 사례로부터 알 수 있듯이, 전쟁에 의한 통일은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국토가 황폐화되고 생산시설이 파괴될 뿐 아니라 막대한 인명피해를 가져온다. 또한 주민간 이질감과 적대감이 증폭될 뿐 아니라, 사회통합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국민의 자발적 동의를 얻기 힘들었으며, 경제발달과 삶의 질도 향상되기도 어려웠다. 따라서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을 위해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과거 남침하였던 전력이 있으며, 경제난에 허덕이는 이 순간에도 무력을 꾸준히 증강시키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둘째, 무분별한 협상에 대한 경계심도 갖춰야 하겠다. ‘어떻게든 통일만 되면 된다’는 통일지상주의는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이다. 베트남의 통일에서 알 수 있듯이,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됨으로써 결국 북베트남의 통일전선전술이 먹혀들었다. 예멘의 통일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정부 조직을 기계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조직이 비대화되고 명령, 통제 계통이 불명확했다. 소수의 권력층에 의한 ‘나눠먹기식’ 통일은 통일을 통하여 기득권층의 권력을 지속시키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 통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에는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북예멘의 이슬람율법과 남예멘의 맑스-레닌주의는 결코 병존할 수 없었으

며, 결국 내전으로 끝나는 졸속통일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통일도 중요하지만 통일후의 사회상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통일은 졸속으로 흐르기 쉽다. 따라서 통일은 지도자간 그리고 주민간 신뢰를 쌓은 다음 점진적으로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통일이 이루어 질 때를 대비한 통합역량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비록 통일이 점진적으로 협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통일은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 하여도 일시적 혼란을 피할 수 없다. 예멘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의 동의가 없는 공권력의 사용은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국민의 동의를 수반하는 민주적 제도와 관행을 발달시켜야 한다. 독일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통일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수반한다. 따라서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공정분배를 제도화하는 경제제도를 발달시켜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도 주민의 적극적 참여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통일시 발생할 수 있는 남북한 주민간, 계층간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더불어’ 생활하는 공동체적 사회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성숙된 시민의식을 발달시켜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독일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서독주민들은 정부의 통일정책을 지원함으로써 콜수상이 이끄는 정부가 비교적 일사분란하게 통일과정을 주도 할 수 있었다.

제3절 통일 대비 과제

우리 모두에게 통일의 성취는 민족적 이상을 실현하는 길이며, 개개인의 장래를 결정하는 과업이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하게 대처하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

통일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든 간에 그 후에 야기될 문제와 과제들을 예상하고, 그에 대비하여 준비를 갖추며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대책을 각 분야에서 서두를 필요가 있다.

통일이 되면 남북간의 현저한 경제적 격차, 가치관과 사고방식, 생활관습이나 행동양식의 차이 등 일반적인 문제에서부터 주민의 이동, 군사, 경찰, 재산권, 외교, 법제도, 정치적 청산, 교육개혁과 통합문제 등 구체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오늘의 대내외 통일환경과 여건을 감안할 때, 한반도의 통일이 먼 훗날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앞에 언제라도 닥쳐올 수 있는 현실적 과제로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전 준비 차원의 정책 추진은 시급하다고 하겠다. 동서독의 통일이 예기치 않은 시기에 이루어졌듯이, 남북한의 통일도 우리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점진적·단계적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좋

든 싫든 간에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의 그 날을 되도록 일찍 예상하여 시간을 가지고 치밀한 분석과 현실에 바탕을 둔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은 통일의 추진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시키는 일임과 동시에 통일 이후 민족 사회의 실질적 통합을 원활히 이루기 위한 착실한 준비작업이 되는 것이다.

오늘의 시점에서 통일을 대비하는 당면 과제는 첫째, 대내적으로 통일을 촉진하고 수용할 수 있는 각 분야의 기반을 확충하고, 둘째, 대외적으로는 통일에 유리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며, 셋째, 2000년대 진정한 통일 한국의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한 사회 통합의 준비 차원에서 국민에 대한 통일 대비 교육을 강화하는 일이다.

1. 대내적 통일기반의 확충

(1) 국민적 합의 형성

대내적 통일기반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굳건히 이루는 일이다.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 나갈 통일에 대한 당위성과 정책 추진의 원칙과 방법, 통일 국가의 미래상에 대한 진정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일정책을 효과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기반 위에선 통일정책이어야 추진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비로소 강한 추진력을 가지게 된다.¹⁵⁾ 따라서 통일이 단순한 염원의 차원이 아닌 현실의 실천과제로 등장한 현시점에서 통일문제에 관한 국민적 합의의 확충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민족이 원래 하나였

15) 이상우, 『함께 사는 통일』, 나남, 1993, p. 203

으므로 다시 하나로 합쳐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민족의 장래야 어떻게 되든 간에 덮어놓고 통일만 하면 된다는 생각은 참으로 위험하다. 남과 북이 모두 잘 살기 위하여 통일을 하려는 것이기에, 과연 우리 민족 구성원 모두가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국민적 합의문제와 관련하여 또 하나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강조되는 것은 통일에 따르는 고통과 희생을 올바로 인식하고 국민개개인이 이에 대한 책임과 사명을 분담해 나가겠다는 점에 미리 합의하는 일이다. 통일은 일시적인 과업이 아니라 새역사 창조를 위한 지속적인 대장정(大長程)이며 여기에는 막대한 비용과 함께 끊임없는 인내와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일이다. 따라서 추진 주체가 이에 대한 확고한 사전 인식과 신념을 갖지 못하면 도중에 좌절하고 말거나 처음부터 포기하기 쉽게 된다.

독일의 경우를 보더라도, 1990년 10월에 통일을 이룬 지 7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서독 주민들은 막대한 경제적 부담¹⁶⁾과 후유증 때문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오늘날 그들은 통일이라는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면서 제기된 제반 문제들과 난관을 해결 극복할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비록 통일 비용과 고통이 큰 것이라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결코 분단에 따르는 비용과 고통보다 클 수 없다는 점이다. 분단이 더욱 장기화되는 경우에 나타날 민족동질성의 파괴, 민족사와 문화 전통의 단절, 이산가족의 고통 등은 산술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민족적 손실이자 인도적 아픔이다. 뿐만 아니라 분단과 대결로 인한 막대한 군사비, 각종 기회비용 등 분단관리에 소요되는 유형 무형의 낭비와 경제적 손실을 생각해 보면 공리

16) 1990년 이래 6년간 공부문에서만도 약 1조 1,700억 마르크(약 640조원)가 동독지역을 위해 지출되었다고 통독 6주년을 맞아 독일의 테오 바이겔 재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밝히고 있다.

적인 측면에서도 통일은 결코 뒤로 미루거나 포기할 수 없는 과제가 된다.

(2) 모범적 민주공동체 건설

통일은 다름 아닌 한반도 전역에 하나의 ‘민주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과 북에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참된 통일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만들려는 우리의 노력에 북한이 쉽사리 호응해 오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선 우리 사회부터 모범적인 민주공동체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이는 곧 통일 조국의 미래상을 우리 내부로부터 먼저 구현해 나가자는 것으로, 언제 올 지 모르는 통일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준비작업이자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낼 수 있는 첨경이며, 북한의 동포들에게 커다란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다.¹⁷⁾

우리가 먼저 이 땅에 건설해 나가려는 민주공동체는 ‘함께 사는 삶’, ‘자유로운 삶’,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구성 원리로 하는 민주 정치의 장(場)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함께 사는 삶이란 제반 가치의 배분 과정에서의 개개인의 형식적인 평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형평이 구현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갈등의 조절 원리를 말하며 자유로운 삶이란 시민사회와 국가권력간의 관계에서 국가권력의 지도와 통제가 아닌 시민 사회의 자율적인 역할에 의해서 이해 관계의 갈등이 조정될 수 있는 ‘질서 있는 자유’의 확보를 의미한다. 또한 ‘인간다운 삶’은 자유와 평등으로 대표되는 인간적 삶의

17) 김영삼 대통령은 1994. 8. 15 광복49주년 기념사에서 “통일은 결국 남과 북이 이질화된 민족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회복, 발전시키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 사회부터 모범적인 민주공동체로 키워 나가야 합니다”라고 주창한 바 있다.

기본 가치가 조화롭게 구현되어야 한다는 공동체적 삶의 기본 구성 원리를 말하는 것이다.¹⁸⁾

우리 사회를 누구나 부러워 할 모범적인 민주공동체로 키워 나가려면, 먼저 민주주의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성숙시키고 우리 사회를 누구나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참된 공동체'로 키워 나가야 한다. 독일의 통일을 가져온 첫째 요인이 서독의 잘 발달된 민주주의에 있었다는 분석은¹⁹⁾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우리 체제가 북한보다 월등한 것으로 입증될 때, 우리를 대하는 북한 주민의 태도나 자세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민주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서 미완의 민주화를 완성시킴과 아울러 이 사회를 풍요와 정의가 함께 구현되는 고도 복지사회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서 특히 중요한 과제는 소외된 계층에게 사회 전체가 눈을 돌리는 일이다. 독일이 1990년 10월 분단되어 있던 두 사회를 어렵지 않게 통합해 낼 수 있었던 배경은 서독의 잘 발달된 사회복지정책을 바탕으로 한 서독 주민의 대내적 통합과 이를 선망하는 동독 주민의 자발적 체제 선택이 놓은 결과로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우리 사회를 도덕과 정의가 충만하고 자유와 평등, 복지가 확립된 「민주공동체」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지향해 가는 공동체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임과 동시에 통일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일임에 틀림없다.

(3) 경제역량의 강화

통일은 결코 염원이나 의지만으로 이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 추진하는 주체에게 충분한 역량이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

18) 이상우, 『함께 사는 통일』, 나남, 1993, pp. 327~328

19) 박성조·양성철 공저, 『독일통일과 분단한국』,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1, p. 195

은 기회가 도래한다 하여도 통일을 실현해 나갈 수 없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또 하나의 대내적 과제는 우리 내부의 물질적 기반인 경제력을 키워 나가는 일이다. 우리의 경제력은 북한의 대남혁명의지(對南革命意志)를 무산시키고 개혁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물질적인 토대가 되는 것임과 동시에,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을 심각한 혼란이나 부작용없이 신속히 재건할 수 있는 원동력이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력은 아직까지도 통일에 따른 막중한 부담을 충분히 감당해 낼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실정이다. 우리 경제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고도 성장을 지속하여 통일을 대비한 경제역량을 증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자본주의 체제가 안고 있는 취약점을 보완해 나가 지금보다 앞선 고도 복지사회를 건설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서독이 유럽공동체를 주도하는 막강한 경제력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초기 단계에서 심각한 후유증을 경험하여야 했다²⁰⁾는 사실에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된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Economist)지 부설 정보분석자문기관(EIU)의 보고서는 북한 체제가 2~3년 내에 붕괴되어 한국이 흡수 통일을 이룩할 것으로 전제할 때, 통일비용은 초기단계에서 매년 5백~6백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통일 이후 10년간 비용이 5천~6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²¹⁾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서기 2000년에 남북한 통합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경우의 통일비용을 약 9,800억 달러로 추계하고 있다. 이렇게 연구기관에 따라 통일비용의 추산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북한 경제현황에 대한 평가, 통일비용의 개

20) 1993년 말부터 동독 경제의 점차적인 회복과 함께 통일 독일 전체가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외교안보연구원, 앞의 책, p. 16

21) 구영록·임용순 공편, 『한국의 통일정책』, 나남, 1993, p. 42에서 재인용

념, 산출방법 등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통일에는 현재의 우리 경제력으로는 쉽게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가 통일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같이 막대한 통일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총체적 역량을 키워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2. 통일에 유리한 환경의 조성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분단된 조국의 평화통일 과업은 결코 우리 일방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성취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남북의 통일은 북한이란 상대방이 있는 과업이며, 민족 내부 문제이면서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는 국제적 문제라는 이중적 속성을 지닌 것이다. 따라서 분단의 혼명한 관리와 이의 극복을 위한 우리의 정책적 노력은 남북관계라는 민족 내부적 상황 조건과 주변국의 대한반도 정책이라는 국제적 환경 여건의 향방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에 유리한 대내외적 환경의 조성이라는 과제가 통일을 앞당겨 실현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기본 과제의 하나로 검토되어야 한다.

(1)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통일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둘러야 할 첫번째 과업은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남북한간에 상호 불신과 적대,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는 한 어떠한 통일 노력도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은 지난 50여년이 넘는 남북관계사를 통해 일찍부터 확인된 바이다.

상호 불신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태에서는 일방의 어떠한 호의나 선의도 상대방이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불신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신뢰를 쌓아 가는 첫걸음은 상대방에 대한 안전보장의 제공이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안전을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 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북간에 화해와 신뢰를 조성하고, 공존의 길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대화가 선행되는 가운데 전쟁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체제를 전복하려 기도하지 않을 것이라 믿게 하여야 한다.²²⁾

결국 한반도에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는 도정(道程)은 무엇보다도 먼저 전쟁 재발의 위협을 제거하고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한반도는 범적으로 지난 1953년 7월 이래 전쟁에 참전했던 쌍방의 교전군 사령관이 서명한 「정전협정」에 의하여 조성된 정전상태하에 있을 뿐 아직도 전쟁을 종결하는 「평화에 관한 합의」가 채택되지 않아 지극히 불안정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민족공동체의 건설을 통해 평화적 통일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앞서 이러한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함으로써 비정상적인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로 바꾸고, 적대적인 상호 관계를 공존 공영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다시 말해 평화체제가 시급히 구축되어야 한다.

한반도에서 이같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상호 불신과 반목을 해소하고 화해 협력을 쌓아 나가 평화적 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기틀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통일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기반 요건이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22) 이상우, 앞의 책, p. 223

여기서 한반도 평화체제란 개념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공존의 자발적 합의로서 평화질서'를 유지하며, 이의 준수를 보장하는 협약이나 기구를 비롯한 제반 법 제도적 장치를 총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 내용은 현존하는 정전협정을 남북한 당사자가 협의하여 새로운 평화조약이나 협정으로 대체함으로써 정전상태를 항구적인 평화상태로 전환하며, 이 협정의 준수를 관계국들이 국제적으로 보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평화체제로의 전환에 대한 남북한간의 기본 합의는 지난 1992년 2월 남북간 총리를 대표로 하는 고위당국자회담을 통하여 발효된 바 있는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에 "남과 북은 현 정전 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라는 내용으로 명문화된 바 있으나, 그 후 평화협정의 당사자문제를 비롯한 쌍방의 현격한 입장 차이로 말미암아 그 이행 전망이 불투명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에 먼저 평화를 정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민족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건설해 나가려는 우리의 노력은 머지 않아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994년 4월 28일 북한측이 외교부 성명을 통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정치협상을 북·미간에 직접 개최하자는 제안을 들고 나온 이래 한반도에 조성된 일련의 정세에 대응하여 지난 1996년 4월 한·미 양국 정상이 제주도에서 제안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4자 회담」 개최는 현단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측이 시대착오적인 대남전략에서 벗어나 이에 호응해 오기만 한다면, 오늘과 같은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킬 수 있는 「평화협정」을 원만히 협의,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미국과 중국 등 관계국가들이 지원하고 보증해 주는 효과적인 국제적 보장장치도 함께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안으로 제기되어 있는 것이 우리 정부가 지난 1994년 5월에 제안한 바 있는 동북아 집단안보체제의 결성 구상이다.²³⁾

독일 통일이 유럽안보체제의 테두리 안에서 실현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두 차례나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이 주변 국가의 우려를 불식하고 통일을 실현할 수 있었던 국제 정세적 여건은 서독 스스로가 유럽안보체제, 즉 「유럽안보협력회의」(CSCE)²⁴⁾의 결성을 주도하고 이에 적극 동참하였기 때문에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동북아 집단안보체제 구상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역내의 다자간 안보·경제협력체제의 수립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북한의 동참을 유도함으로써 동북아 지역내 국가간 집단 협력의 틀 속에서 안전보장을 모색하고, 나아가 남북간의 자주적 통합 논의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²⁵⁾

(2) 국제적 이해와 지지의 확충

통일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두번째 과업은 우리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적 이해와 지지를 확충해 가는 것이다.

23)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우리 정부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고위관리회의 ('94.5. 방콕개최)에서 「동북아 다자안보대회」추진 구상을 공식 제의하였다. 그러나 이 구상은 북한이 동북아 지역 차원의 다자간 안보대회에 반대하고 있어 아직까지도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24) 유럽안보협력회의(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는 1970년대 초 빌리 브란트 수상의 주도로 창설되었으며, 1975년 8월 알바니아를 제외한 모든 유럽국가 및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35개국의 국가대표들이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 모여 이른바 유럽안보협력회의 최종문서에 서명했다.

25) 외무부, 『외교백서: 1994년판』, 1995. 6, pp. 191~192

논리적으로는 통일문제가 우리 한민족 내부의 문제이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국제환경 요소에 의해 민감하게 영향받는 국제적 문제이다. 남북 모두가 주변 강대국에 비해 열세의 국력을 가지고 있어서 주변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의 민족적 역량과 위상이 열강의 반열에 끼일 정도로 막강해지지 않는 한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변경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현실 상황에서 통일은 주변국의 양해없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주변 4강 중 특정 국가의 '사활적 이익'을 해치는 통일을 추구하는 경우 그 나라의 협력이나 양해를 구하기는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동서간 이념적 대결구조가 해체되고 탈냉전의 새 시대를 맞은 오늘에도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이해와 지지를 획득하는 일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한반도 문제의 한국화'를 주장하는 일부 학자의 견해는 아직 성급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특정 시점에 조성된 국제환경은 영구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内外상황에 따라 계속 변화된다. 또한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는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정세, 특히 동북아의 정세와 주변 4강의 대한반도 정책이 우리의 통일에 유리한 것이 되도록 주변국가와 선린 우호관계를 증진해 나감과 아울러 통일 한국이 동남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이해시키는 통일외교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그 일은 통일을 위한 필수적인 대외 환경을 조성해 가는 길이며 다가오는 통일을 맞기 위한 준비작업의 하나가 될 것이다.

(3) 북한의 변화 유도

대내외의 통일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해 가는 세번째 과제는 북한

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은 결국 북한의 변화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통일환경의 개선을 위한 우리의 정책 노력은 우선적으로 북한이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개방 개혁을 유도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게 된다.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고 촉발하는 방안으로서 우선 북한과의 인적, 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경제부분의 협력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북한의 동참을 유도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성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북한의 개혁과 개방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유엔을 비롯한 각종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 북한의 참여를 지원하고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각종 제도적 틀 안에 북한을 동참시킴으로써 북한 지도부의 정책결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 을 높여 나가는 방안도 바람직하다.

3. 통일을 위한 국민교육의 강화

통일을 대비하는 과제에는 물질적 역량의 배양이나 정책적, 법적, 제도적 측면의 정비방안과 함께 정신 문화적 대책도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더욱이 통일의 추진과정을 뒷받침하고 통일 이후의 국가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신 문화적 측면의 사전 함양 작업은 대부분 물질적·제도적 측면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장기적 안목에서 일찍부터 서둘러 추진되어야 한다.

통일 과업의 주역인 국민들에게 통일 지향적 가치관과 삶의 양식 을 심어 주고 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통일 준비 교육은 통일 과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고, 눈앞에 현실로 다가 올 통일의

그 날을 큰 혼란과 충격없이 맞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뿐만 아니라 통일된 국가에서 민족 전체의 삶이 더욱 복되고 평화스러운 것이 되기 위해서 민족 사회를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통합해 나가는 데 기여할 건전한 민주시민의식이나 민족의식 등 정신 문화적 기반 요소가 사전에 함양되어야 한다.

우리보다 앞서 통일을 이룩한 독일 통일의 선례에서 보면, 1972년 동서독간에 기본 조약이 체결된 이래 18년 동안 상호 교류와 협력의 관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민족적 동질화 노력과 치밀한 준비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7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동서독 주민간에 심각한 심리적 괴리감과 갈등이 존재하고, 체제 통합에 따른 사회 문화적 충격이 가시지 않아 하나의 독일인으로서 융합과 내면적 통합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통일을 위한 국민정신교육의 과제는 통일의 과정을 뒷받침하고 원만히 맞이하기 위한 통일 준비 교육과 통일 이후의 삶을 대비한 통일 대비 교육으로 나누어 고찰해 볼 수 있다.

우선 우리 모두 바람직한 통일을 맞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민적 가치관과 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태도를 사전에 훈련하는 데 역점이 두어지는 통일준비교육은 주로 통일 추진 과정과 통일 이후의 민족 사회에 나타날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을 예견하여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극소화시킬 수 있는 정신 문화적 기반 요소들을 국민 교육을 통해 미리 튼튼히 길러 주는 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통일을 맞을 준비 차원의 우리의 국민 교육은 대략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중점 전개되어야 한다.

첫째, 국민의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적대감과 불신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냉전체제 하에서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되어 온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과 불신을 해소하지 않으면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을 도모해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화해 협력을 지향

하는 탈냉전의 시대적 흐름에도 부응해 나갈 수 없게 된다. 이미 고착화된 부정적 대북한관의 전환은 민족공동체의 건설을 통한 통일 성취라는 우리 통일정책의 전개방향에 부응해 나가기 위한 일차적 과제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 발전시키고, 민족 사회의 이질화 현상을 극복해 나갈 의지를 고취해 나가야 한다. 민족동질성이야말로 '민족공동체적 삶'의 기본 조건이며, 우리 민족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통합원리로서 역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질화 상태를 그대로 둔 채 갈라진 민족 사회의 재통합을 기대할 수 없다.

셋째,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나가야 한다. 민족공동체 의식은 이 민족을 하나로 결속해 주는 끈이요, 남북한 주민을 하나로 통합시켜야 하는 가장 큰 명분이며 통일 추진력의 원천이 된다. 우리가 최종적인 국가 통일에 앞서 실현해야 하는 민족공동체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민족 성원 사이에 '너' 와 '나' 가 아닌 '우리' 라는 의식을 공유하게 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따라서 하나로 된 민족공동체의 형성과 그 발전을 위해서는 그 속에 더불어 살아가야 할 남북한 주민들을 심리적으로 융합시키는 데 기여할 가치관과 단일 민족으로서 동포애나 운명적 유대감과 같은 공동체 지향적 의식을 내면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통일에 따른 희생과 고통을 사전에 확실히 인식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분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사전에 심어 줄 수 있어야 한다. 통일의 주역들이 통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 통일 과정에서 개인적 고통이나 경제적 부담에 당면하면 쉽게 좌절하거나 추진 의지를 상실하게 된다.

다음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의 교육과 함께 강조되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통일 국가에서 새로운 상황에 대비하는 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일이다.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교육은 통일 국가의 완성

과 그 유지 발전을 뒷받침하고, 통일 후 민족의 내면적 통합에 기여 할 기초 요소들을 발굴, 이를 국민의 가치관과 행위규범으로 사전에 내면화시키는 일종의 통일 대비 정신역량의 배양을 위한 교육 활동 이다. 이것은 크게 민주 시민 교육을 강화하는 것과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교육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통일된 한국 사회의 미래상이 ‘민주 시민 사회’가 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 통일 이후 예상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삶을 영위해 갈 국민에게 ‘함께 사는 원리와 방법’을 비롯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품성과 태도를 함양하는 통일교육으로서의 민주 시민 교육은 통일 이후의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는 정신 문화적 대비책의 하나로 마땅히 강조되어야 한다.

통일 이후 이 땅에 실현될 ‘선진된 민주 시민 사회’는 다원적 가치가 병존하는 다원주의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다원주의 체제하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과 사회적 갈등의 종국적 해결은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민주적 해결 방식은 당사자의 사전 동의와 결과에 대한 자발적 승복을 전제로 한다. 당사자에게 민주적 원리와 기본 절서에 대한 인식과 훈련이 결여되었을 경우 이같은 동의와 승복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없게 되어 사회적 관계에서 야기되는 각종 분쟁의 원만한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통일 이전 단계에서 바람직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강조되어 왔던 민주 시민 교육은 통일 이후의 삶을 대비하는 교육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된다.

통일을 대비하는 교육의 또 다른 영역으로서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는 교육의 필요성은 이것이 통일 국가의 완성과 발전에 기여할 ‘기반적 가치 요소’의 하나가 되기 때문이다. 통일 후의 국가는 하나로 된 민족 국가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통일 후의 남북한 주민 모두 「한민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견지

해 나가게 하는 것이야말로 새로 건설된 민족공동체의 안정과 발전에 필수적 조건이 된다.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아(自我)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통일 국가 사회에서 당면케 되는 급격한 문화적 충격 속에서 방향감각을 잃게 되거나 '아노미 현상'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

민족 성원 개개인이 같은 민족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뿌리는 결국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에서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족 정체성의 확립에 기여하는 사전 대비 교육은 결국 '열린 민족주의' 시각에서 전개되는 민족교육의 강화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강광식 외, 『통일 후유증 극복방안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2. 21세기위원회, 『21세기의 한국』, 서울프레스, 1994.
3. —————, 『2000년에 열리는 통일시대』, 동아일보사, 1993.
4. —————, 『2020년의 한국과 세계』, 동아일보사, 1993.
5. 민족통일연구원, 『통일문화와 민족공동체 건설』, 1994.
6.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95-04, 1995.
7. —————, 『민족통일방안의 이론체계와 실천방안』, 1994.
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통일한국의 삶의 양식과 가치체계 탐색』, 1994.
9. 유석렬, 『남북한 통일론』, 법문사, 1994.
10. 이상우, 『함께 사는 통일』, 나남, 1993.
11. 이한빈, 『통일한국을 위한 경국책』, 박영사, 1991.
12. 조영달, “통일시대 민주시민교육”, 한국사회과학교육학회
주최 ‘민주시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국제토론회
주제논문, 1995. 10. 8.
13. 황성모 외, 『민족의 정통성과 통일』, 자유평론사, 1991.

통일문제 이해

인쇄일 1997년 12월 29일

발행일 1997년 12월 31일

발행처 통일원 통일교육원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TEL. 901-7021 / FAX. 901-7024

인쇄처 상록문화사

〈비매품〉

